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변수정
엄다원·안문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엄다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3-35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89-8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35>

발|간|사

한국 사회는 결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면서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결혼하는 인구는 감소하고 동거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한국은 동거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혼 동거 방식으로 살아가는 커플이 많아지고,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 층의 동거 수용도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혼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비혼 동거 방식을 선택해 살아가는 시민들은 분명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공백 상태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에서 비혼 동거 커플은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응급 시에는 법적으로 서로에게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비혼 동거 비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각 커플의 비혼 동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상황은 점차 더 많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다양한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결혼이나 비혼 동거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이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거나 비혼 동거 집단을 특수한 집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혼 동거 경험자의 욕구나 국외 발전된 제도의 변천 단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비혼 동거 현상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연구의 누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비혼 동거 경험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비혼 동거 연구의 부족

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였다.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생각이나 태도가 매우 유연해지고 그만큼 개인의 삶의 방식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 가야만 관계를 보호받는 한국의 상황은 변화한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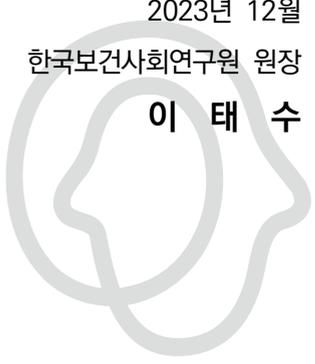
이 연구는 변수정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수행되었고, 본원의 엄다원 연구원과 한국법학원의 안문희 연구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연구 진행의 전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김유휘 부연구위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란 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발전된 연구를 위해 법과 관련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법제연구원의 장민선 선임연구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 연구를 꼼꼼히 검토하고 조언해주신 익명의 평가위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심층 인터뷰를 통해 비혼 동거 경험을 공유해 주신 연구 참가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개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비혼 동거의 확산과 유형 및 정의	21
제2절 국제 사회의 비혼 동거 현황	30
제3절 한국 사회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37
제3장 한국 비혼 동거 규모와 성격	57
제1절 비혼 동거의 규모	59
제2절 비혼 동거 선택 이유 및 성격	77
제3절 소결	81
제4장 한국 비혼 동거 특성	85
제1절 비혼 동거 생활 경험	87
제2절 비혼 동거와 출산	99
제3절 결혼·가족 및 성역할 관련 태도	102
제4절 소결	111

제5장 비혼 동거 집단별 경험	113
제1절 비혼 동거 경험 FGI 개요	115
제2절 현재 비혼 동거 경험	121
제3절 비혼 동거 경험 후 혼인 이행 경험	137
제4절 비혼 동거 경험 후 이별 경험	153
제5절 이혼 후 비혼 동거 경험	170
제6절 소결	187
제6장 비혼 동거 관련 제도 현황과 국외 사례	193
제1절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에 대한 제도적 보호	195
제2절 주요 국가의 비혼 동거 관련 제도와 이용 경험	218
제3절 소결	272
제7장 결론	27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9
제2절 정책적 함의	306
참고 문헌	32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OECD 국가의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	30
〈표 2-2〉 OECD 국가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2011) ……	35
〈표 3-1〉 혼인신고 부부 중 동거 경험 비중 추이 ……	64
〈표 3-2〉 동거 경험 후 혼인신고 한 부부의 동거 기간 추이 ……	66
〈표 3-3〉 통계청 사회조사의 혼인 상태 질문 및 선택지 변화 ……	67
〈표 3-4〉 사회조사 응답 가구주의 혼인 상태 비율 ……	69
〈표 3-5〉 가족과 출산조사 응답 가구의 혼인 상태 분포 ……	70
〈표 3-6〉 가족실태조사 응답 가구 대표의 혼인 상태 분포 ……	71
〈표 3-7〉 향후 결혼할 의향 있는 경우의 결혼 전 동거 의향 ……	73
〈표 3-8〉 향후 결혼할 의향 없는 경우의 동거 의향 ……	74
〈표 3-9〉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에 대한 견해 ……	75
〈표 3-10〉 비친족 가구와 가구원 수 추이 ……	76
〈표 3-11〉 2인 비친족 가구 추이 ……	76
〈표 3-12〉 현재 동거하는 이유 1순위 ……	78
〈표 3-13〉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	80
〈표 4-1〉 비혼 동거 상대와 혼인신고 계획 ……	89
〈표 4-2〉 비혼 동거 상대와 결혼식 여부 ……	90
〈표 4-3〉 혼인신고 필요성 ……	92
〈표 4-4〉 비혼 동거 상대와 관계에 대한 생각 ……	93
〈표 4-5〉 비혼 동거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시점(혼인 관계라 생각하는 경우만 응답) ……	94
〈표 4-6〉 비혼 동거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당시의 기대 ……	95
〈표 4-7〉 비혼 동거로 경험한 차별 및 불편 1: 공적 지원과 관한 부에서의 차별 ……	96
〈표 4-8〉 비혼 동거로 경험한 차별 및 불편 2: 민간 서비스와 인식에서의 차별 ……	98
〈표 4-9〉 자녀 계획 ……	99
〈표 4-10〉 자녀에 대한 태도 ……	101

〈표 4-11〉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	103
〈표 4-12〉 결혼 필요성에 대한 생각	104
〈표 4-13〉 자녀 필요성에 대한 생각	105
〈표 4-14〉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태도	105
〈표 4-15〉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	107
〈표 4-16〉 양육자의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	108
〈표 4-17〉 배우자/애인·파트너와 가사 분담 비율	109
〈표 4-18〉 배우자/애인·파트너와 가사 분담 만족 정도	110
〈표 4-19〉 성별에 따른 배우자/애인·파트너와 가사 분담 만족 정도	110
〈표 5-1〉 비혼 동거 경험 FGI 집단 구분	116
〈표 5-2〉 비혼 동거 경험 FGI 참여자	117
〈표 5-3〉 비혼 동거 경험 FGI 질문 영역 및 내용	120
〈표 5-4〉 현재 비혼 동거 경험에 대한 FGI 대상 특성	121
〈표 5-5〉 비혼 동거 후 혼인 이행에 대한 FGI 대상 특성	137
〈표 5-6〉 비혼 동거 후 이별 경험에 대한 FGI 대상 특성	153
〈표 5-7〉 이혼 후 비혼 동거 경험에 대한 FGI 대상 특성	170
〈표 6-1〉 사실혼을 규정한 입법례	200
〈표 6-2〉 동거인을 규정한 입법례	203
〈표 6-3〉 「의료법」에서 수술 등 동의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209
〈표 6-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	214
〈표 6-5〉 프랑스 혼인 및 PACS 건수: 1999~2022	222
〈표 6-6〉 PACS 및 동거 경험형 인터뷰 대상	233
〈표 6-7〉 네덜란드 등록동반자관계와 혼인 건수 추이: 1990~2022	256
〈표 6-8〉 벨기에 혼인 및 법정 동거 건수: 2000~2022	263
〈표 6-9〉 파트너십 증명 제도를 이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수도권 기초지자체	270
〈표 7-1〉 사회조사 응답 가구주 중 유배우자의 혼인신고 여부 비율	286



〈표 7-2〉 전국 단위 조사에서 나타난 가구 및 혼인 상태 분포	287
〈표 7-3〉 향후 결혼할 의향 있는 경우의 결혼 전 동거 의향	289
〈표 7-4〉 혼인신고 계획에 따른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	292
〈표 7-5〉 동거 유형과 성격	293
〈표 7-6〉 한 사회의 동거 확대 과정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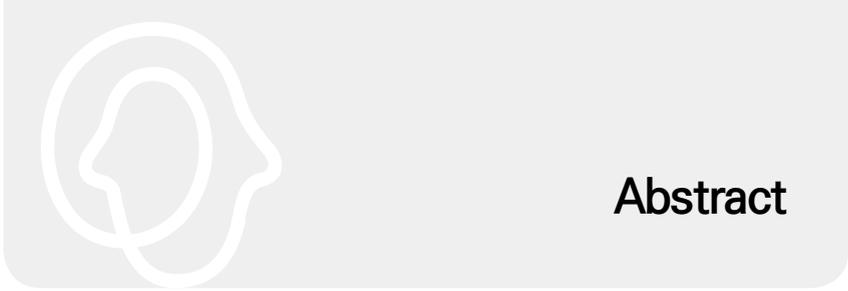
그림 목차

[그림 2-1] OECD 국가의 혼인 외 출생아 수 및 비율	34
[그림 2-2]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추이	38
[그림 2-3]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39
[그림 2-4] 결혼에 대한 태도: 성별	40
[그림 2-5] 결혼에 대한 태도: 연령별	41
[그림 2-6]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전체 및 성별 추이 ..	42
[그림 2-7]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연령별 추이 ..	44
[그림 2-8]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45
[그림 2-9]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연령별	46
[그림 2-10]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47
[그림 2-11]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연령별	48
[그림 2-1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전체 및 성별 추이 ..	49
[그림 2-1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연령별 추이	50
[그림 2-14]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가족이다'에 대한 동의: 전체 및 성별 ..	51
[그림 2-15]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가족이다'에 대한 동의: 연령별	52
[그림 2-16] 결혼하지 않은 이성 간 동거에 대해 동반자 등록제를 통해 보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53
[그림 2-17] 결혼하지 않은 이성 간 동거에 대해 동반자 등록제를 통해 보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 연령별	54
[그림 2-18]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55
[그림 2-19]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생각: 연령별	56
[그림 3-1] 혼인신고서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항목	61
[그림 3-2] 현재 동거하는 이유 1순위	77
[그림 3-3]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79
[그림 6-1] 프랑스 1969년~2019년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	231



[그림 6-2] 프랑스 출산율 추이	232
[그림 7-1]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와 혼인 건수 추이	282
[그림 7-2] 혼인신고 건 중 동거 경험이 있는 부부의 동거 기간	283
[그림 7-3] 비친족 가구와 가구원 수 증가 추이	290
[그림 7-4] 2인 비친족 가구 증가 추이	291
[그림 7-5]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292
[그림 7-6] 혼인 외 출생아 비율 추이	298
[그림 7-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추이	299
[그림 7-8] 혼인신고 계획에 따른 자녀 계획	300
[그림 7-9]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비혼 동거와 혼인 집단의 차이	301
[그림 7-10]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가족 인정과 제도적 보호 관련 태도	304
[그림 7-11] 2020년 US Census의 가구 대표자와의 관계 선택지	308
[그림 7-12] 난임치료시술 지원의 사실혼 확인 보증서	318





Abstract

Nonmarital Cohabitation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n Society

Project Head: Byoun, Soo-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nonmarital cohabitation in Korea, which has not been extensively researched yet. There are various combinations in cohabitation relationships, and each combination has different reasons 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challenging to address all of them in a single study. Consequently,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nonmarital cohabitation resulting from changes in marriage, narrowing down the research content to heterosexual u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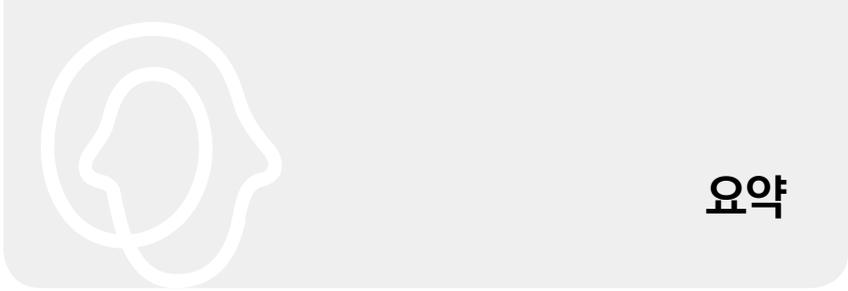
In order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nonmarital cohabitation in Korea, this research seeks to understand the societal atmosphere and changes related to marriage or nonmarital cohabitation by examining people's attitudes towards them.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characteristics of nonmarital cohabitation by utilizing data obtained directly from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it.

It starts by exploring the reasons and nature of nonmarital cohabitation. In contrast to global trends, childbirth is not

2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common in nonmarital cohabitation relationships in Korean society. The study takes this into consideration and explores the childbirth, attitudes towards children, and family-related perspectives of individuals who choose nonmarital cohabitation.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sires of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nonmarital cohabitation in Korea. Additionally, the study reviews releva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investigates the experiences and opinions of institutional users. Finally,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nonmarital cohabitation in Korea and seeks implications for the policy development related to nonmarital cohabitation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nonmarital cohabitation, family formation, divers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와 다양성에서 중요한 한 축은 결혼에 대한 태도와 이행 변화이다. 결혼의 감소가 저출산 현상과 연결되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비혼 동거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관련 정보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혼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연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한국 비혼 동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특성을 찾아보고 관련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현 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비혼 동거의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축적하는 것에 학술적 의의를 두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비혼 동거 규모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인가와 같이 근본적인 질문, 비혼 동거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찾아보는 특성, 비혼 동거와 출산과의 관계, 그리고 비혼 동거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때, 비혼 동거는 사실혼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친밀성을 기반으로 함께 생활하는 이성 관계를 비혼 동거로 모두 포함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의 비혼 동거 규모는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혼인신고 부부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보다 빠른 경우를 동거를 경험한 부부로 정의하고 결혼 전 동거 경험을 살펴본 결과, 혼인신고 한 부부 중 동거 기간을 경험한 비율은 1995년과 2020년 사이에 감소하였다.

4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그러나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이 있는 부부 중에서만 보면, 동거 평균 기간이 상승하였고, 1년 이내의 동거는 감소한 반면 1년 이상의 동거 기간을 가진 비율은 증가하였다. 혼인 전 동거를 하는 경우는 과거보다 긴 기간의 동거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2.5% 내외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사 대상 연령의 한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동거 가구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미혼 집단에서는 앞으로 결혼할 경우 동거 의향이 있는 경우가 절반 정도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동거에 대한 수용도, 그리고 1인 가구나 비친족 가구(2인 비친족 가구)의 현재까지의 꾸준한 증가와 장래 추계에서의 전망 등을 통해 비혼 동거의 증가를 예견해 볼 수 있다.

한국 비혼 동거의 선택 이유 또한 조사 대상이나 조사 응답지의 구성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조사 자료에서 비혼 동거 집단을 추출한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또는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서 동거를 선택했다는 응답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택지가 없는 경우는 조사 특성상 주어진 선택지에서 응답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부각되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인 이유만 매우 크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확인이나 자율성 등의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도 많아 자발성을 가진 동거를 선택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는 여전히 출산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 자료 분석 및 FGI 결과를 통해 동거를 선택하는 것은 자녀 계획이 없다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출산은 법률혼을 결심하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여전히 혼인과 출산은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리하면,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수준은 아니지만 동거 경험이 흔해지고는 있다. 또한 동거를 일시적인 생활 방식으로 택하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결혼으로 이행하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동거 선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출산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동거가 대부분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꾸려나 가야 할 사회적 분위기를 강조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의 통계 및 자료 생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가구 대표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방식으로 통계 구축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출산 장려를 위한 비혼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동거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수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을 지원한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혼외 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비혼 출산을 논하는 것은 각 사회가 가진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는 단계를 건너뛰는 일이다. 비혼 동거든 결혼이든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먼저이다.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제도 방향 검토에서는 생명권, 건강권, 돌봄 및 보호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고, 동거 관계 등

6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록 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동거 기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기존의 사실혼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외 제도 검토 결과에 따라 동거 관계 등록 제도는 가법지도 무겁지도 않은 수준의 제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거 경험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섬세한 검토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시작이 어렵다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연구는 이성 간의 동거 커플이 주요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 논의에서도 그 틀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로를 돌보는 친밀한 관계’를 제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대한민국정부, 2021)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줄일 수 있다. 국가가 해야 할 돌봄을 자발적으로 하는 관계에 대해 서로 필요한 권한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개인 삶의 안정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한국 사회는 가족이나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방향성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설정한 방향에서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세계 시민으로 평등성과 다양성을 갖춘 개개인이 이 변화한 생각과 태도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비혼 동거, 가족 구성, 다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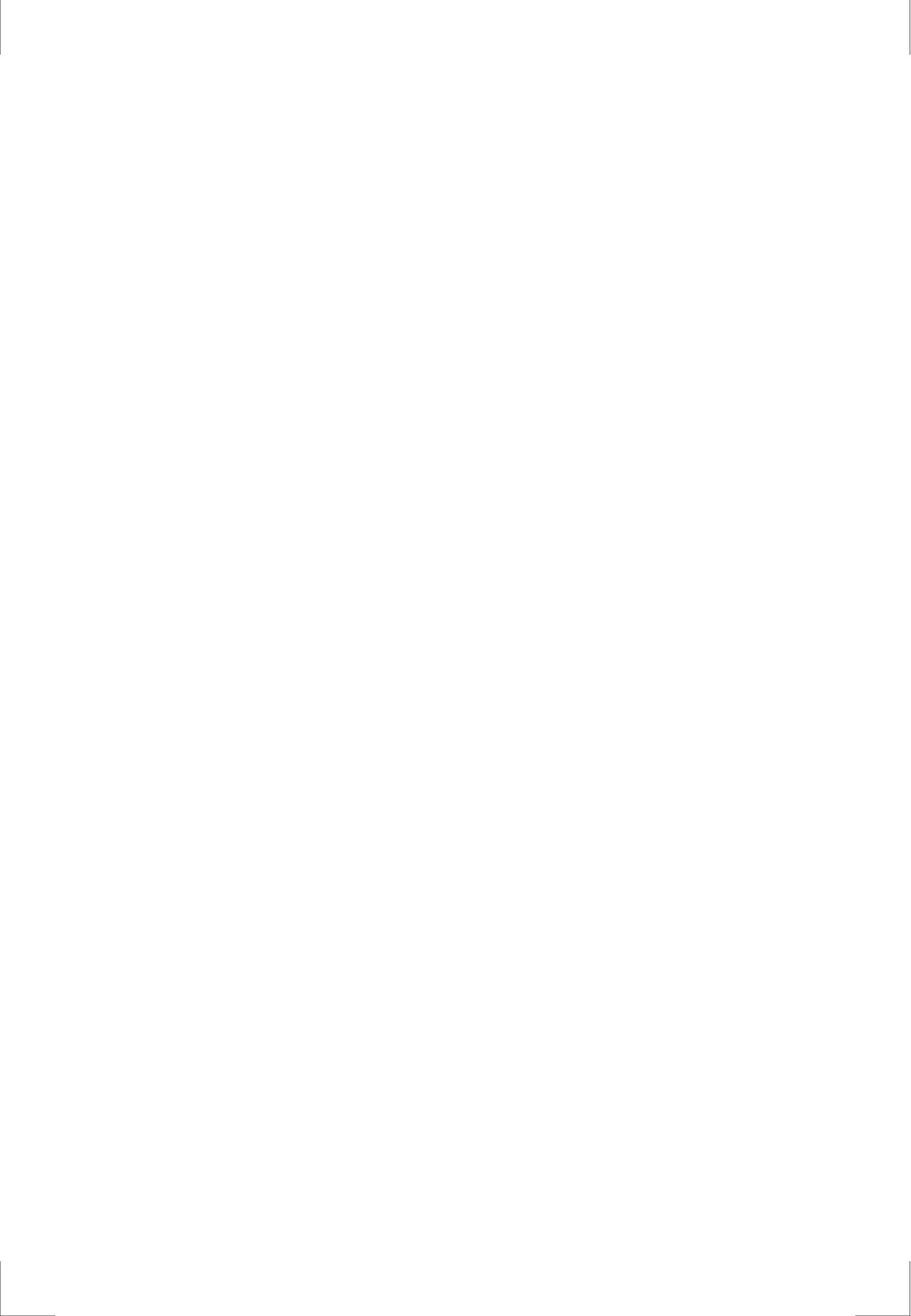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필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졌다. 2022년 기준 한국 사회의 43.2%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통계청, 2022).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98년 33.6%에서 2002년에는 25.6%, 2012년에는 20.3%, 그리고 2022년에는 15.3%로 감소하여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각연도a).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실천의 변화에서도 발견되는데, 2010년 약 21만 6천 건이던 결혼 건수는 2020년에는 약 21만 4천 건으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약 19만 2천 건까지 감소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결혼 건수의 감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결혼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였다(KOSIS, 각연도b). 그런데 이러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결혼 건수 통계에서 의미하는 ‘결혼’의 변화는 상대와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에 대한 생각과 이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결혼이 감소하는 것이 친밀한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이 현실에서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전통적인 혈연 및 법적 중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계 및 주거 등에 대한 공유나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가 가족의 의미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는 것(여성가족부, 2021a)을 보면, 우리 사회의 가족 개념이 법적인 구속력에 의한 관계보다 서로 의지하고 유대를 가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구 구성에서 비친족 가구가 증가하고

그 안의 가구원 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KOSIS, 각연도c)을 생각해 보면, 법적인 가족으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삶을 공유하는 관계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통계상의 혼인율 감소가 반드시 친밀한 상대와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의 감소까지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비친족 관계 통계의 증가는 오히려 법적 혼인은 하지 않지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정서적 친밀성을 가진 상대와의 동거는 현실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동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다 동거가 널리 퍼져 있는 프랑스도 결혼이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프랑스 동거 관계 등록 제도인 연대의무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이용과 결혼하지 않고 PACS 제도에도 등록하지 않은 단순 동거 비율로 대부분 대체되었다(Ferrari & Toulemon, 2018. 4.). 또 다수의 유럽 국가와 달리 혼인율은 감소하지만 동거가 사회에 만연하지는 않는 현상을 경험한 일본에서도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이 반드시 연애와 애인 관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Iwasawa, 2004). 여성의 파트너십 변화를 분석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파트너가 있어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파트너십 유형의 변화를 확인한 것이다(Iwasawa, 2004).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결혼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율의 감소 이면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한국의 비혼 동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최근 가족 가치관의 변화나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비혼 동거가 실제 생활에서도 과거보다는 수용적임을 알 수 있다.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2010년에는 40.5%였으나 2022년에는 65.2%까지 상승하였다(통계청, 각연도a). 물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그만큼의 비혼 동거 가능성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실천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 비혼 동거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포함하는 연구 및 조사(e.g.,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여성가족부, 2021a; 여성가족부, 2021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혼 동거가 더이상 주변에서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가족 실천의 측면에서는 누구를 가족 또는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또는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누구와 살아갈 것인지 등 가족 구성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성인 두 명이 국가가 인정하고 제도 내에서 보호받는 관계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결혼의 당위성은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처럼 점점 계급화되기도 한다(준 카르본, 나오미 칸, 2019).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며 가족 생활을 누리고 싶을 수도 있고, 상대와 결혼하고 싶지만 사회가 정한 조건에 갇혀 결혼을 못 하거나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결혼이 어려워진 사회이고, 결혼 제도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 '결혼'이 아니고는 어떠한 결합도 보호받기 어렵다. 다양한 결합과 라이프 스타일이 출현한 시대에 고전적인 제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계상으로는 1인 가구 또는 비친족 가구에 포함되어 있을 한국의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결혼 방식을 반영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아가 비혼 동거를 경험하는 인구가 증가할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는 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생활했던 이성 간의 헤어짐(이별, 사별)에 대해 사실혼 인정의 방식으로 권한 부여 및 재산 분배 등을 처리한다. 결혼의 의사를 가진 사실혼을 포함해 동거 커플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적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실혼 관계 인정의 사례도 연동되어 증가할 수 있음을 내포한다. 실제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동거의 증가로 이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했고, 주요 이슈는 관계의 해소 후 취약한 동거자에 대한 보호였다(Kim, Oliver, & Ryznar, 2017). 따라서 동거 관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관계 증명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시대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고민 필요성 또한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비혼 동거 관계를 법제도 안에서 보호하지 않고, 사실혼의 조건 안에서 사후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식으로만 다루는 것은 국가가 개인이 택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혼하지 않고 삶을 공유하는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가족/관계임에도 이 형태의 가족/관계는 주변부에 남아있게 만들며, 그 안에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까지 비혼 동거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비혼 동거에 대해 정책적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추진되었다. 2016년에 시작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처음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대한민국정부, 2016), 비혼이나 동거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이라는 추진계획이 포함되면서 구체적으로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대한민국정부, 2021)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저출산 대응 정책 안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어떠한 가족 배경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출생한 아동은 모두 평등하게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나 미혼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정책적 내용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택한 개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생활·돌봄공동체 관련된 추진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비혼 동거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관심은 개인이 택한 삶의 방식 보호 측면보다는 비혼 동거 관계의 출산 이행 가능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김병규, 2023.6.20.). 이 관점에서는 국외의 동거 관련 제도 도입과 출산율 변동의 관계를 근거로 한국의 비혼 출산에 대한 기대를 논의하는 구조인데, 이것이 현재의 한국 상황에 적절한 논의 구조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결혼이나 비혼 동거와 관련된 태도 변화는 꾸준히 관찰하고 있으나 실제 비혼 동거 규모에 대한 자료나 관련 조사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 이행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나 결혼의 방식이 변하는 것을 정책적 측면에서 적극 반영하거나 포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가족 형성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조사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현황이나 특징을 근거로 정책적 접근 및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적 측면에서 동거 현상을 외면하고 논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실존하는 관계/가족을 주변부로 남겨두어 자신이 택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아직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지 않은 한국

의 비혼 동거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때 동거 관계에는 다양한 결합이 있지만, 각 결합마다 다른 이유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연구에서 모두를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의 변화로 인한 비혼 동거에 집중해 이성 간의 결합으로 연구 내용을 한정한다.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 파악을 위해, 이 연구는 결혼이나 비혼 동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 및 변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직접 비혼 동거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자료를 활용해 비혼 동거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비혼 동거의 이유와 성격을 알아본다.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한국은 비혼 동거 관계에서 출산이 흔하지 않은 점에 집중해, 비혼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출산 및 자녀, 가족 관련 태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사회에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개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혼 동거 경험자의 정책적 욕구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국외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제도 이용자의 경험과 생각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정책적 발전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내용과 방법을 소개한다. 이어서 제2장은 이론적 검토 부분이다. 먼저 비혼 동거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동거의 유형에 따라 그 유형이나 확산 단계를 설명하는 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실혼이라는 개념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비혼 동거의 의미를 정의한다. 또한 한국과 달리 동거가 널리 퍼져있는 국제 사회의 비혼 동거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한국에 대해서는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은 혼인신고 자료와 조사 자료를 활용해 한국 비혼 동거 규모 수준을 유추해 보고, 앞으로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 증감에 대한 경향성을 논의한다. 그리고 최근 비혼 동거 경험에 대한 2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와 이를 근거로 한국 사회 비혼 동거의 성격을 정리한다.

제4장은 기존 자료를 활용해 비혼 동거 생활의 경험을 파악한다.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출산과 자녀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와 출산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다. 비혼 동거 경험을 특성별로 구분해 비혼 동거 집단 내의 차이를 봄으로써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가족이나 결혼 또는 성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확인하며 가사 분담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으로 구분해 비혼 동거 집단의 특성을 이해해 본다.

제5장은 비혼 동거 경험자에 대한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활용해 비혼 동거 집단별로 경험을 알아본다. 결혼을 약속하고 생활하는 동거는 주로 주거 문제 해결 등에 그 이유가 집중되기 때문에 FGI에서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비혼 동거를 하거나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6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 생활을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안에서 한국 비혼 동거에 대한 제도적 보호 수준을 파악한다. 그다음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에서 운영 중인 동거/파트너 관계에 대한 보호 제도를 검토하고, 프랑스의 경우는 제도 이용 경험자의 사례도 함께 다룬다.

마지막 제7장은 연구를 통해 밝힌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현재 한국 사회가 비혼 동거와 관련하여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과 연구의 함의 등을 논의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2차 자료 분석, FGI 및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 문헌 연구

서론과 이론적 배경 논의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한국의 비혼 동거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수지만 이를 검토하고, 주로 유럽 국가 또는 미국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 문헌을 통해 주요 국가의 비혼 동거 관련 제도와 한국의 제도에서 비혼 동거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 2차 자료 분석

혼인 및 가구 변화 등 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는 통계청 KOSIS에서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인 결혼이나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 파악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한다.

비혼 동거의 현황이나 전망 등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혼인신고 자료’와 ‘사회조사’의 혼인 상태를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국 단위 조사 자료인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조사’,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와 이 조사의 부가조사 결과인 ‘비혼 동거 실태 분석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데,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조사’이다. ‘가족과 출산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비혼 동거 상태나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분석한다.

다. 표적집단면접법(FGI) 및 심층면접

비혼 동거 경험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FGI와 심층면접을 진행한다. FGI를 통해 한국 비혼 동거 경험 특성을 살펴보고, 국외 관련 제도 사용 경험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도 특성과 활용 경험에 대해서 알아본다. 질적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제2023-023)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라. 전문가 자문

한국의 법제도에서 비혼 동거 관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해석, 국외의 비혼 동거 관련 제도와 시사점, 한국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비혼 동거의 확산과 유형 및 정의

제2절 국제 사회의 비혼 동거 현황

제3절 한국 사회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비혼 동거의 확산과 유형 및 정의

1. 제2차 인구변천과 동거의 확산

동거의 확산은 두 파트너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한 관계에서 평등한 권력과 더욱 평등한 위치에 기반한 관계로 전환하는 ‘파트너십 전환(partnership transition)’이라는 세계적인 사회 변화의 주요 지표로 여겨진다(Prinz, 1995). 이러한 동거의 확산은 제2차 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sthaeghe, 1995). 특히 인구변천의 두 번째 단계(약 1970~1985년 사이)에서 결혼 전 동거가 북유럽 국가에서 다른 여러 국가로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유럽의 결혼 감소 비율이 동거 비율로 대체된다. 단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25세 이전에 결합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흔히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서 출산이 동거 관계에서도 나타나며, 연애 단계에서 ‘문서 없는 결혼(paperless marriage)’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동거로 흘러간다. 즉 1970년대 이후 가족 형성 행동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비혼 동거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불가리아, 미국 5개 국가의 1970년대~2000년대 사이 동거 확산 경향과 수준을 알아본 연구(Di Giulio, Impicciatore, & Sironi, 2019)는 국가는 다르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동거가 일어나는 경향과 동시에 각 국가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먼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향은 결혼 전 경험으로서의 동거는 감소하고, 결혼이나 자녀와 같은 약속은 하지 않지만 결혼을 대신하거나 안정적인 결합으로의 동거는 증가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동거 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큰 경향성 안에서 각국의 특성도 발견하였다. 불가리아에서는 동거하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빨리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동거의 증가세는 빠르지만 동거 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같은 유럽 국가이지만 이탈리아와 달리 노르웨이와 프랑스에서는 동거가 실제로 결혼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이벤트를 연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동거가 작동할 가능성이 많은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또한 미국의 동거 경향은 프랑스나 노르웨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동거라는 생활 방식의 불안정성이 높아 일시적인 결합일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Di Giulio, Impicciatore, & Sironi, 2019). 동거 현상이나 특징에 있어서 유럽과 북미 사이의 차이는 물론이고 유럽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동거 현상의 보편성이나 관련 태도의 수용성이 높은 곳은 유럽이다. 그래서 동거 관련 연구의 다양성과 충분성 또한 유럽에서 높다. 유럽에서 누적된 연구를 통해 한 사회에서 동거 현상이 확대되는 과정을 요약하면, 처음에는 결혼하는 것이 더 흔한 사회에서 소수의 일탈적인(deviant)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두 번째 단계의 사회에서는 관계의 강도를 테스트하는 결혼 전의 서막/전주곡(Prelude)이나 수습 기간(probationary period)과 같은 것으로 동거가 기능한다. 이 단계에서의 동거는 대부분 아이가 없는 동거 유형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동거가 결혼의 대안(alternative to marriage)으로 사회에 용인되는 수준에 이르며, 이 단

계의 사회에서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결코 결혼한 부부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동거와 결혼의 구분이 어려워지며, 자녀에 관해서도 동거 관계와 결혼한 부부 사이 모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가 된다(Kiernan, 2001). 동거와 결혼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사회는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를 구비한 국가들이 다수 있다. 그중 프랑스의 경우,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라는 시민연대계약 제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는 계약 없는 동거, 계약 제도, 결혼의 세 가지 유형으로 결합 방식이 존재하는 셈이다.

여러 국가에서 동거가 확산하면서 결혼의 서막으로서의 동거는 감소하고 안정적인 동거나 결혼의 대안으로서 동거는 증가하는 경향이 보편적이지만 그 단계나 속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어떤 국가는 동거가 매우 보편적인 곳도 있고, 다른 국가는 완전히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젊은 집단 사이에서 관계를 테스트하는 단계로 흔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동거가 흔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의 국가도 최근에는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Gassen, 2023). 이렇게 동거에 대한 변화가 어떤 사회에서는 늦게 일어나는 것, 또는 다른 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느 사회가 뒤처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의 확산되는 공통된 규범이나 가치가 동거 패턴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문화적 요인이나 다른 제도적 환경이 동거 패턴을 결정하는 데 더욱 관련이 있기 때문에(Di Giulio, Impicciatore, & Sironi, 2019) 각 사회의 가족 규범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한 변화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동거와 관련된 인구학적인 변화를 한 사회의 정책에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해 정책적 반영을 하려는 노력이 있는 사회는(Syltevik, 2018) 같은 시대라 해도 제도적으로 논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상을 받아들이는 정책적 입장에 따라 그 사회의 제도 발전 속도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 제도의 벤치마킹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한국 사회를 본다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동거가 사회에 퍼지는 네 단계(Kiernan, 2001)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세 번째 단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동거 방식을 택한 경우도 있겠으나 출산 측면에서 보면 동거 관계의 출산이 흔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에 더 가까운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비혼 동거는 한 사회의 문화 및 역사 또는 현재의 환경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특징을 보이면서 변화할 수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나 보편성이 현재는 낮은 편이지만, 개방성과 수용성이 높은 세대의 성장으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동거 현상 확대 단계에서 어느 단계를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나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다.

2. 비혼 동거 유형

동거가 여러 각국에서 유행하기는 하지만, 그 양상이나 의미는 국가마다 다양하고(Perelli-Harris, 2014), 심지어는 한 국가 안의 사람들도 동거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Perelli-Harris & Bernardi, 2015). Donati(2006)는 그의 연구에서 동거의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결혼(incomplete marriage)으로서의 동거이다. 이 불완전한 결혼으로서의 동거는 한쪽이 제도적 수준에서 관계를 완성하길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두 번

재는 시험(test)으로서의 동거이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의 습관에 대해 상호 간에 살펴보는 일종의 충돌 테스트이다. 세 번째는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상태의 동거이다. 이 상태에서는 서로의 행동을 편안하게 생각한다(Martignani, 2011, p.566 재인용).

동거는 유럽 국가에서 유행이 빨라진 만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동거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연구들이 앞서 진행된 경향이 있다. 유럽 환경에서 동거 유형을 구분하기 시작한 Villeneuve-Gokalp(1991)는 동거 첫 3년 동안 결혼으로의 이행, 자녀 출산, 헤어짐이 일어나는 것에 집중한다. Villeneuve-Gokalp(1991)에 따르면, 동거는 ① 결혼에 앞서 일정 기간 이루어지는 동거(결혼의 서막: prelude to marriage) 또는 시험적 결혼(trial marriage), ② 짧은 기간 동거 후 헤어져 일시적인 결합(temporary union)이 되는 강한 약속/책무가 없는 동거, ③ 자녀가 없거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약속/책무 없이 오랫동안 함께 사는 안정적인 결합(stable union without commitment)으로의 동거, ④ 자녀도 있고 마치 결혼한 커플처럼 행동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자유로운 결합(free union)으로의 동거로 구분된다.

한국의 동거 관련 연구 중 이연주(2008)의 연구에서는 예비동거, 대안동거, 대체동거, 편의동거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예비동거(precursor to marriage)는 혼인의 의사가 상대와 잘 맞는지 확인을 위한 동거이다. 대안동거(alternative to marriage)는 결혼 조건 불충족 등으로 인해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고, 대체동거(substitute for marriage)는 결혼 제도 및 가족 제도에 속하지 않으려고 선택하는 동거로 분류된다. 편의동거(cohabitation for convenience)는 경제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동거를 의미한다(이연주, 2008).

한국의 동거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에서는 동거 선택의 이유를 7가지로 제시해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동거 이유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그 이유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했는데, 사례 수의 한계 등으로 두 집단으로 동거 이유를 나누었다. 국외 선행연구(e.g., Hiekel, Liebroer, & Poortman, 2014; Rindfuss & VandenHeuvel, 1990) 검토를 바탕으로, 조사에서 제시한 7가지 동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임신해서, 혼인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 의사가 있지만 집단의 반대 등으로, 혼인 전에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는 4가지 이유는 결혼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로 구분하고, 우리나라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혼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의지하며 같이 지내고 싶어서, 이성 교제 중 데이트 비용이나 방값 및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변수정 외(2016)의 동거 이유에 대한 구분은 이연주(2008)가 논의한 ‘예비동거’, ‘대안동거’를 ‘결혼의 한 단계로 동거’로 구분하고, ‘대체동거’와 ‘편의동거’를 ‘결혼의 대안 등으로의 동거’라고 구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집단으로 구분하면서 세부적인 구분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변수정 외(2016) 연구에서 동거 선택 이유 구분은 동거 유형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동거 경험자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동거 집단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다양한 이유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시도 과정에서 편의상 이루어진 구분으로 볼 수 있다.

김원정과 김순남(2018)은 한국의 동거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 동거 유

형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와 이연주(2008)의 동거 유형 구분에서 ‘대안동거’는 환경적 제약이나 조건적 제약으로 인한 동거를 의미하는데 이 용어가 의미하는 동거 특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잔여동거’로 대체하여 구분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잔여동거’를 ‘규범적 제약’과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세분화하여 규범적 제약의 잔여동거는 “부부 특성의 조합이 통념상 전통적 결혼 규범에서 벗어난 동거”이고, 사회·경제적 잔여동거는 “결혼에서 기대되는 경제적 안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동거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김원정, 김순남, 2018. p.66).

이 외에 동거에 대한 정의를 담은 또 다른 연구(조은희, 2009)는 법률적 논의의 중심에서 동거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혼인신고 의사 없는 ‘자발적 선택적 동거’, 증혼 관계 등으로 혼인이 불가한 ‘혼인장애적 동거’, 단기간의 혼인 의사 없는 ‘일시적 동거’로 구분하였다(조은희, 2009).

3. 비혼 동거 정의

이상 살펴본 동거 유형에서 동거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동거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정의가 아닌 동거 자체에 대한 정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사실혼’ 개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진 남녀의 결혼 생활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강승묵, 2015). 사실혼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가지며 이혼 시 재산분할 등 법률혼과 동일한 부분을 가진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과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실혼 상대의 사망 시 상속권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강승묵, 2015).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인해 해소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 등에 관련한 내용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가진 것(강승묵, 2015)을 사실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의 해소 시에는 법률혼과의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생전의 해소 시에는 사실혼이 판례 등에 따라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 공동체를 유지하며 지낸다는 측면에서 비혼 동거는 사실혼과 유사성을 가진다. 반면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 근거를 결혼 의사와 부부생활 실체로 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비혼 동거는 이 근거를 충족하는 커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커플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모두 고려하면 비혼 동거가 사실혼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다만 사실혼이 위의 판단 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사실혼은 앞서 말한 전통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현재까지 통상적이다. 그렇지만 사실혼을 법률혼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법률혼과 구분되는 결혼 형태나 생활 방식까지를 포함해 현대적 사실혼으로 이해한다면(박경재, 2013) 비혼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전통적인 사실혼 개념을 적용했을 때보다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 동거는 더 많은 관계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사실혼 개념보다는 복잡할 수 있어 보인다(임영수, 2010).

동거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동거의 유형이나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다. 최근의 동거 연구 중 Mogi와 동료들(2023)의 연구는 일본 전국 출산력 조사(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s, JNFS) 자료를 활용해 결혼한 사람 중 어느 정도 비율이 결혼 전에 동거를 경험하였는지 분석하였다(Mogi, Raymo, Iwasawa, & Yoda, 2023). 이 연구는 결혼 전, 정확히

말하면 혼인신고 전에 함께 산 기간을 동거에 포함해 분석함으로써 확장된 동거 개념을 적용했다. 단순히 공식적인 등록 절차 전 함께 산 기간은 결혼 직전의 동거(pre-marital cohabitation)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이 기간은 비공식/미등록 결혼 기간(a period of unofficial or unregistered marriage)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Raymo, 202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거라는 것이 결혼 전 서막/전주곡의 기능을 한다면, 공식적인 결혼 등록 절차 전에 함께 생활한 기간이라면 이 또한 동거로 여길 수 있다(Raymo, 2022).

한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동거에 대한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몇 가지 방법으로 비혼 동거 규모의 증감 정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비혼 동거를 정의함에 있어서 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비혼 동거 경험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할 때에는 공유할 경험의 충분성을 고려해 너무 짧은 동거 경험자는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결혼 형태와 삶의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비혼 동거를 탐색하기 때문에 결혼 의사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동성 관계의 동거 특성과 이슈는 개별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성 관계의 동거 특성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비혼 동거는 한국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결혼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도 애정을 바탕으로 남녀가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까지 포괄한다.

제2절 국제 사회의 비혼 동거 현황

1. OECD 국가의 비혼 동거

OECD 국가의 파트너십 상태를 보면, 파트너가 있는 경우 10% 내외 수준에서 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동거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 유일한 결합 제도인 국가도 있지만, 다수의 국가가 동거 관계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등록된 관계까지 포괄한다면 그 비율은 매우 높아진다. 연령 기준을 20~34세로 한정하면 동거 비율이 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다수는 혼인뿐 아니라 등록 파트너 제도가 있어서 OECD 데이터에는 ‘혼인/등록 파트너 관계’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센서스에서 비혼 동거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동거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몇 개 국가 중 하나이다.

〈표 2-1〉 OECD 국가의 파트너십과 동거(Partnerships and cohabitation, 2011)

(단위: %)

국가	20세 이상				20~34세			
	파트너 있음			파트너 없음 ²⁾	파트너 있음			파트너 없음 ²⁾
	전체	혼인/등록 파트너 관계	동거		전체	혼인/등록 파트너 관계	동거	
호주	63.79	53.59	10.20	36.21	47.06	29.41	17.65	52.94
오스트리아	58.80	49.10	9.70	41.20	39.11	22.15	16.97	60.89
벨기에	62.15	53.51	8.64	37.85	45.28	29.33	15.94	54.72
캐나다	66.89	54.46	12.43	33.11	55.34	33.55	21.79	44.66
체코	51.17	45.58	5.81	48.61	30.78	21.32	9.46	69.22
덴마크	64.15	50.02	14.12	35.85	50.54	21.86	28.68	49.46
프랑스	64.14	49.41	14.72	35.86	50.42	21.89	28.53	49.58

국가	20세 이상				20~34세			
	파트너 있음			파트너 없음 ²⁾	파트너 있음			파트너 없음 ²⁾
	전체	혼인/ 등록 파트너 관계	동거		전체	혼인/ 등록 파트너 관계	동거	
독일	62.61	53.91	8.69	37.39	39.53	22.15	17.39	59.74
그리스	60.23	58.52	1.71	39.77	33.13	29.24	3.90	66.87
헝가리	56.15	45.83	10.32	43.85	39.34	21.97	17.37	60.66
아이슬란드	59.15	46.78	12.36	40.85	36.52	17.21	19.31	63.48
아일랜드	58.99	50.23	8.75	41.01	37.80	21.40	16.40	57.25
이탈리아	58.39	53.22	5.17	41.61	28.90	22.02	6.88	71.10
한국								
라트비아	47.87	38.55	9.32	52.13	33.13	20.71	12.41	66.87
룩셈부르크	60.07	54.60	5.48	39.93	38.56	29.10	9.46	61.44
네덜란드	66.82	53.10	13.72	33.18	46.76	21.40	25.35	53.23
뉴질랜드	65.88	49.87	16.01	34.12	50.31	24.80	25.51	49.69
노르웨이	60.96	46.07	14.89	39.04	41.99	18.94	23.05	58.01
폴란드	57.72	55.60	2.12	42.28	37.60	34.20	3.40	62.40
포르투갈	65.98	57.31	8.66	34.02	44.69	28.58	16.11	55.31
스페인	61.43	52.55	8.88	38.57	38.43	22.51	15.92	61.57
스웨덴	62.84	43.63	19.21	37.16	46.98	17.57	29.41	53.02
스위스	64.15	53.46	10.69	35.85	42.43	25.40	17.03	55.00
영국	60.68	48.42	12.26	39.32	43.70	21.84	21.86	56.30
미국	59.50	52.40	7.10	40.50	41.90	29.75	12.15	58.11
OECD 평균	59.81	49.84	9.97	40.19	40.34	23.45	16.89	59.34

주: 1) 호주 2011 인구 주택 센서스 데이터, 캐나다 2011 센서스 데이터, 뉴질랜드 2013 인구 주택 센서스 데이터, 미국 센서스 데이터, 그 외 국가는 EU 201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데이터 반영.

2) '파트너 없음'은 결별, 이혼, 사별 등 현재 시점에서 파트너와 함께 살지 않거나 파트너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즉 자녀가 있는 한부모, 결혼 또는 동반자 관계를 등록했지만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 과거 결혼 또는 동반자 관계를 등록했지만 이혼하거나 동반자 관계를 해소한 상태, 사별 혹은 동반자 관계의 파트너가 사망한 상태, 그리고 미혼 상태를 포함함.

3) 호주의 '혼인/동반자 관계'에는 법적 혼인만 포함됨.

4) 미국의 연령 구분은 18세 이상과 18~34세 그룹을 의미.

자료: OECD Family Database. (n.d.).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https://www.oecd.org/els/family/SF_3-3-Cohabitation-forms-partnership.pdf 2023.10.6. 인출.

2. 동아시아와 한국의 제한적인 비혼 동거 및 출산

동아시아 국가의 동거 비율은 천천히 상승은 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Cheng, 2014; Raymo, Iwasawa, & Bumpass, 2009). 태국이나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동거 비율이 최근 많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Lesthaeghe, 2020).

반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아직 동거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어 비혼 동거의 확산이 제한적이다(Sassler & Lichter, 2020).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거 자체에 대한 편견에 더해, 주거 비용이 높아 주거 마련이 쉽지 않고 결혼 전까지는 혼자 살거나 부모님과 살아야 한다는 규범적 압박이 있다 보니 최근에는 동거 관계보다는 분리된 주거를 유지하면서 지내는 커플 관계를 의미하는 ‘living-apart-together(LAT)’ 관계가 더 흔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거와 LAT 관계를 혼용해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입장도 있다(Jones, 2018).

동아시아 국가의 동거 현상은 상대적으로 그 유행이 더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한국의 경우 OECD에 제공할 공거 비율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여 국제사회 내에서의 정확한 비교는 불가하다. Mogi와 동료들(2023)은 일본 전국 출산력 조사(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s, JNFS) 자료를 활용해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결혼(초혼)한 여성 중 39%가 결혼 전에 동거를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비혼 동거의 정의에서 검토하였듯이 이 비율은 비혼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아니라 혼인신고 전 함께 산 기간이 있었는지에 대한 비율이다. 실제 결혼 후 결혼 등록 연기로 인한 차이를 활용해 동거의 유행을 이해하는 이러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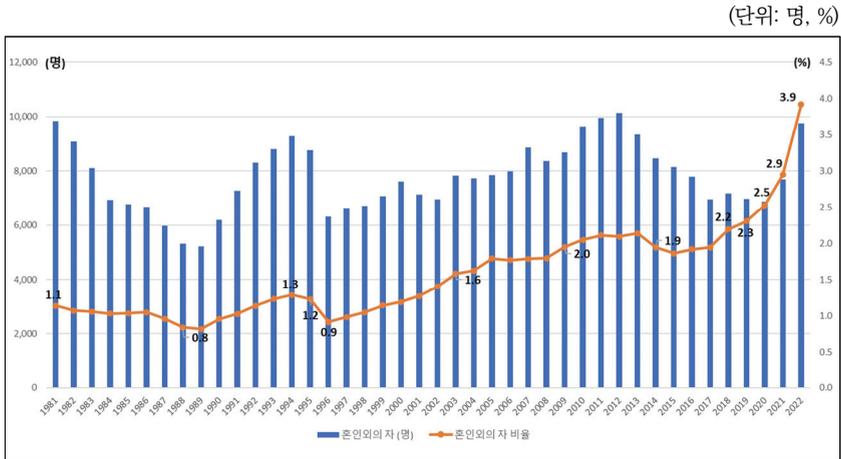
도 관련된 공식 통계가 없는 사회에서 동거 경향을 파악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동거 비율 파악 결과 일본은 최근 결혼 코호트일수록 동거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Raymo, 2022).

동거의 확산 속에서 동거 관계의 출산 증가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동거 관계의 출산은 당연히 전체 출산 중 혼외 관계 출산 비율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Lesthaeghe, 1991). 비혼 동거 관계에서의 출산 증가로 나타나는 결혼과 출산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 또한 제2차 인구변천의 결정적인 행동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형성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유럽이나 영어권 국가에서는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을 포함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러한 비혼 동거 사이의 출산이 아직 흔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결혼과 출산의 디커플링이 제2차 인구변천하에서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남아 있는 특징을 보이는 사회들에 대해서는 제2차 인구변천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Raymo, 2022).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 또한 동거나 비혼 출산이 서구 국가와 비교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혼외 출생아 수 비율을 확인해 보면, 2002년까지는 1.5% 이하에 머물다가 전체 출생아 수 중 처음 2.0%를 넘어선 2009년 이후 계속 2%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속에서 그 비율이 증가해 2022년 3.9%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KOSIS, 각연도a).

34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그림 2-1] OECD 국가의 혼인 외 출생아 수 및 비율



자료: KOSIS. (각연도a). 인구동향조사,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 10. 12 인출.

Hertog와 Iwasawa(2011)는 가족 형성의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일본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비혼 출산이라는 뚜렷한 특징에 대한 여러 설명 중 ‘혼외 출생(illegitimate) 아이’에 대한 법적 차별의 역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제한적인 공공 지원, 아동 양육과 전일제 직업 유지의 어려움 등을 주요 이유로 설명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낮은 비혼 출산 비율에 대한 설명에서도 적용되는 이유로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OECD 국가의 통계를 보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 국가에서 동거 커플이나 혼인한/파트너 관계를 등록한 커플 사이에 자녀를 가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국가 사이에서 그동안 축적돼 온 동거 관련된 이론적 부분이나 직접 관찰된 경향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혼 출산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수렴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 국가 사이에서는 유럽 통합 과정 등을 통해 결혼 밖 출생아들에 대한 가족 관련 법제도는 발전하고 법제도에 남아 있는 차별은 제거되면서 유럽 전반의 비혼 출산이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Klüsener, 2018).

〈표 2-2〉 OECD 국가의 파트너십 상태와 자녀(Partnership status and children, 2011)

(단위: %)

국가	기혼 가구/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동거 가구			유자녀 가구 형태별 비율	
	전체	무자녀	유자녀	전체	무자녀	유자녀	기혼 가구/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동거 가구
오스트리아	83.17	44.18	38.98	16.83	9.65	7.18	46.87	42.68
벨기에	86.42	46.20	40.22	13.58	7.18	6.41	46.54	47.16
캐나다	80.06	41.90	38.16	19.94	11.23	8.71	47.66	43.68
체코	88.64	47.59	41.06	11.36	6.11	5.24	46.32	46.18
덴마크	77.39	42.53	34.87	22.61	13.15	9.46	45.05	41.83
핀란드	75.49	43.06	32.43	24.51	15.46	9.05	42.96	36.91
프랑스	75.63	41.23	34.40	24.37	11.41	12.96	45.49	53.17
독일	86.13	50.80	35.33	13.87	9.43	4.44	41.02	31.99
그리스	97.17	49.91	47.27	2.83	2.42	0.41	48.64	14.35
헝가리	81.93	43.13	38.80	18.07	8.57	9.49	47.36	52.55
아이슬란드	79.41	34.90	44.51	20.59	3.87	16.72	56.05	81.22
아일랜드	85.05	34.03	51.02	14.95	8.77	6.18	59.99	41.33
이탈리아	91.08	46.18	44.90	8.92	4.50	4.43	49.30	49.60
룩셈부르크	90.75	41.25	49.49	9.25	4.50	4.76	54.54	51.40
네덜란드	79.35	41.91	37.44	20.65	12.43	8.22	47.19	39.79
노르웨이	75.26	37.89	37.37	24.74	9.84	14.90	49.65	60.24
폴란드	95.96	43.02	52.94	4.04	2.02	2.01	55.17	49.88
포르투갈	86.91	44.81	42.10	13.09	5.97	7.13	48.44	54.44
스페인	85.83	41.51	44.32	14.17	8.08	6.09	51.63	42.96
스웨덴	69.33	38.25	31.08	30.67	15.21	15.46	44.83	50.41
스위스	84.51	43.15	41.36	15.49	11.92	3.57	48.94	23.06

36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가	기혼 가구/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동거 가구			유자녀 가구 형태별 비율	
	전체	무자녀	유자녀	전체	무자녀	유자녀	기혼 가구/ 파트너 관계 등록 가구	동거 가구
영국	80.34	44.75	35.59	19.66	11.15	8.51	44.30	43.28
미국	88.11	46.50	41.61	11.89	7.20	4.69	47.23	39.45
OECD 평균	83.33	42.72	40.61	16.67	8.51	8.16	48.57	47.45

주: 1) 캐나다 2011년 센서스 데이터, 미국 2014년 센서스 데이터, 그 외 국가는 EU 2011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데이터 반영.

2) '자녀'는 친자녀, 의붓자녀, 입양자녀 등 가구 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자녀를 포함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n.d.).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https://www.oecd.org/els/family/SF_3-3-Cohabitation-forms-partnership.pdf에서 2023.10.6. 인출.

파트너 관계 등록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는 이 제도를 택하는 집단과 결혼한 집단의 자녀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거 관련한 대표적인 제도로 거론되는 프랑스의 PACS를 사용한 사람들을 결혼한 커플과 비교한 연구(Bailly & Rault, 2013)에 따르면 PACS 커플이 결혼한 커플보다 무자녀 비율이 높고 교육 수준도 더 높으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초기에 PACS를 이용한 커플과 결혼한 커플 사이에서 두드러졌고, 2008년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Bailly & Rault, 2013).

출산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커플이 파트너십 등록 제도(e.i. PACS)를 이용하는 커플보다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고, 파트너십 등록 제도 이용 커플은 단순 동거 커플과 비교하면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Bailly & Rault, 2013). 그러나 이 차이도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다.

제3절 한국 사회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이번 절에서는 한국 사회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 변화의 정도와 실천에 있어서 양이나 규모의 변화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개인의 행동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의 비혼 동거와 같이 아직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보는 것으로 사람들의 수용성과 선택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것이 이 주제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축일 수 있다.

비혼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이 가능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태도와 연관지어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태도를 먼저 검토하고, 이어서 비혼 동거와 관련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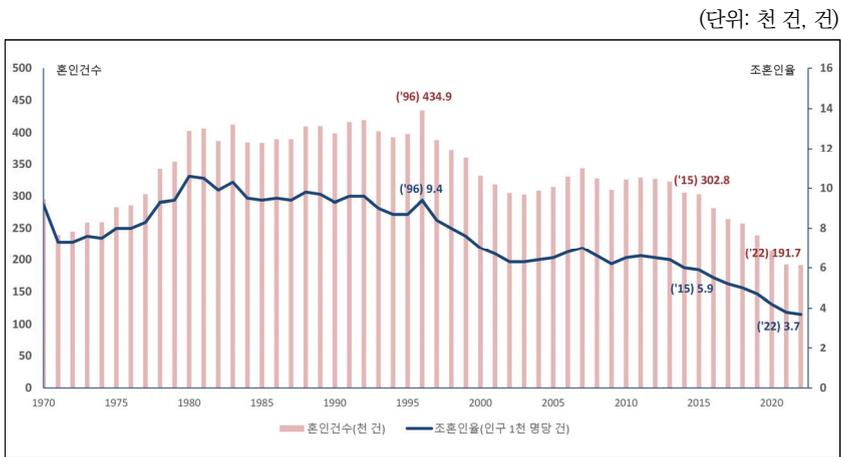
1. 결혼 이행과 결혼에 대한 태도

최근에 결혼이 감소하고 그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성별과 연령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도 결혼과 관련된 태도로 포함해 알아본다.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와 실제 결혼으로의 이행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결혼 이행의 추이부터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가. 결혼 추이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이 감소하고 있다. 1970년에서 1980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던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한 이후에는 또다시 증감을 반복하며 유지하는 기간을 거친다. 그러나 혼인 건수가 305,507건, 조혼인율이 6건에 이른 2014년 이후,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은 한 번도 반등하지 않고 지속해서 우하향 그래프를 보인다. 2022년에는 혼인 건수가 191,690건, 조혼인율은 3.7건으로 1980~1990년대와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KOSIS, 각연도b).

[그림 2-2]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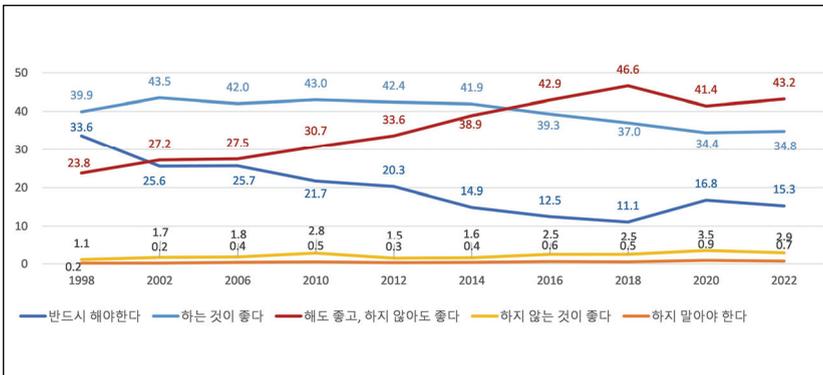
자료: KOSIS. (각연도b). 혼인 건수, 조혼인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13에서 2023.6.16. 인출.

나.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결혼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5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1998년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의 그래프 변화이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비율이 1998년에는 33.6%에서 2022년에는 15.3%로 18.3% 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선택적인 것이라는 견해는 1998년 23.8%에서 2022년 43.2%로 19.4% 포인트 상승하여 이 두 견해의 감소와 상승 폭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른 견해의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결혼의 당위성이 약화된 만큼 결혼은 선택이라는 시각이 강해진 것, 또는 결혼이 선택이 된 만큼 당위성이 약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3]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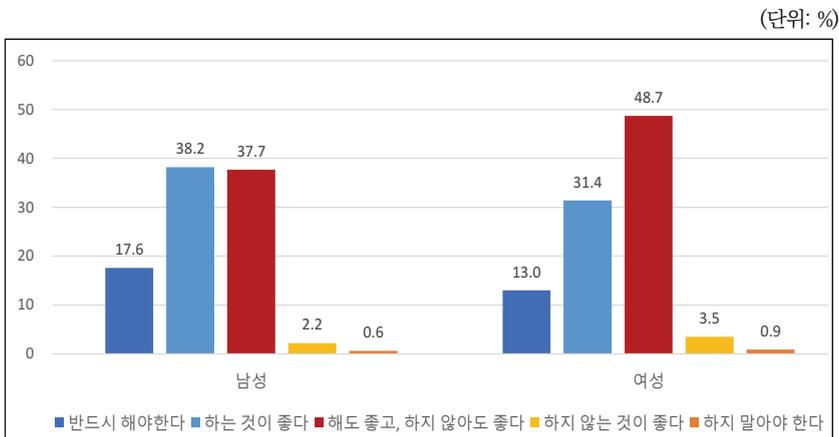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mNm=undefined>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22년의 결혼에 대한 태도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더해 결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은 55.8%, 여성은 44.3%로 11.5%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결혼이 선택이라는 비율은 남성이 37.7%, 여성이 48.7%로 11.0% 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남성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성이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시각만큼 강하고, 반대로 여성은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남성이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만큼 강하다.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응답 비율을 들여다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에 대한 태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여성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 비율 합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보다 낮으며, 선택이라는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결혼에 대한 태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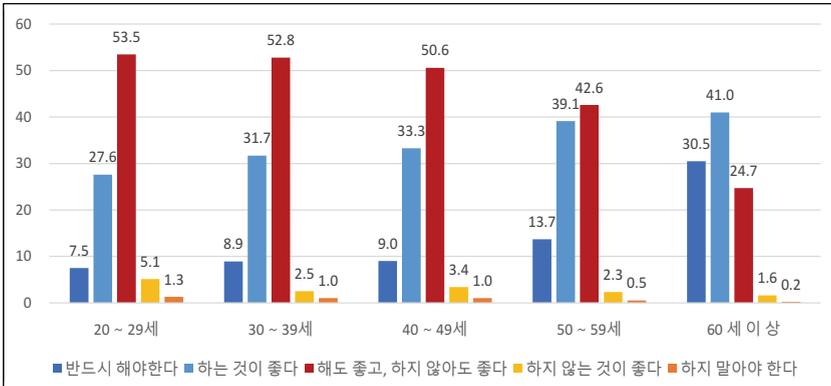


주: '잘 모르겠다'는 견해는 남성 3.8%, 여성 2.6%임.
 자료: 통계청. (2022a). 사회조사 결과.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rgOfrData.do?curMenuNo=UI_POR_P9220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성별에 따른 차이에 이어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와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상승하고,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견해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결혼이 선택이라는 견해가 과반을 차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는 비율의 합보다도 선택에 대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이 선택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높다.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결혼의 당위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5] 결혼에 대한 태도: 연령별

(단위: %)



주: ‘잘 모르겠다’는 견해는 20~29세 5.1%, 30~39세 3.0%, 40~49세 2.6%, 50~59세 1.8%, 60세 이상 2.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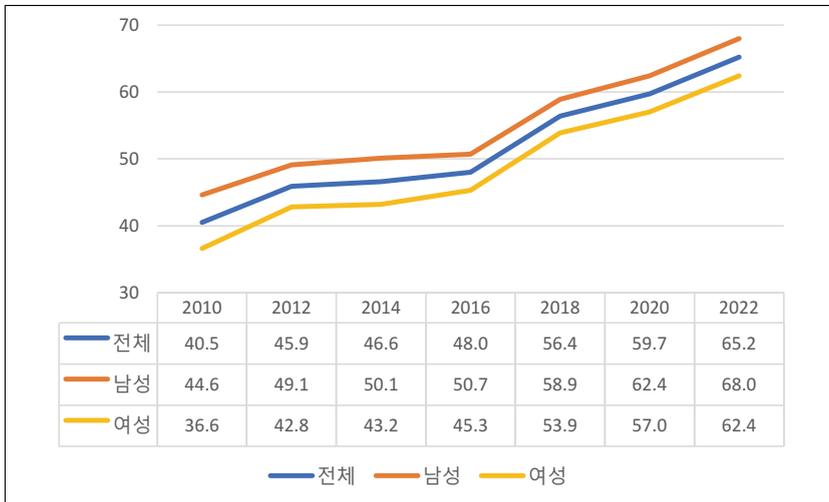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 사회조사 결과.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2.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견해의 추이를 보면, 남녀의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18년에 전체 과반 수준에 이른 후, 계속 증가해 2022년에는 전체 65.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각연도a).

남성과 여성의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는 5~8% 포인트 내외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의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수준은 남성이 68.0%, 여성이 62.4%로 남성의 동의 비율이 여성보다 5.6% 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6]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전체 및 성별 추이
(단위: %)



주: 제시한 수치는 ‘동의’(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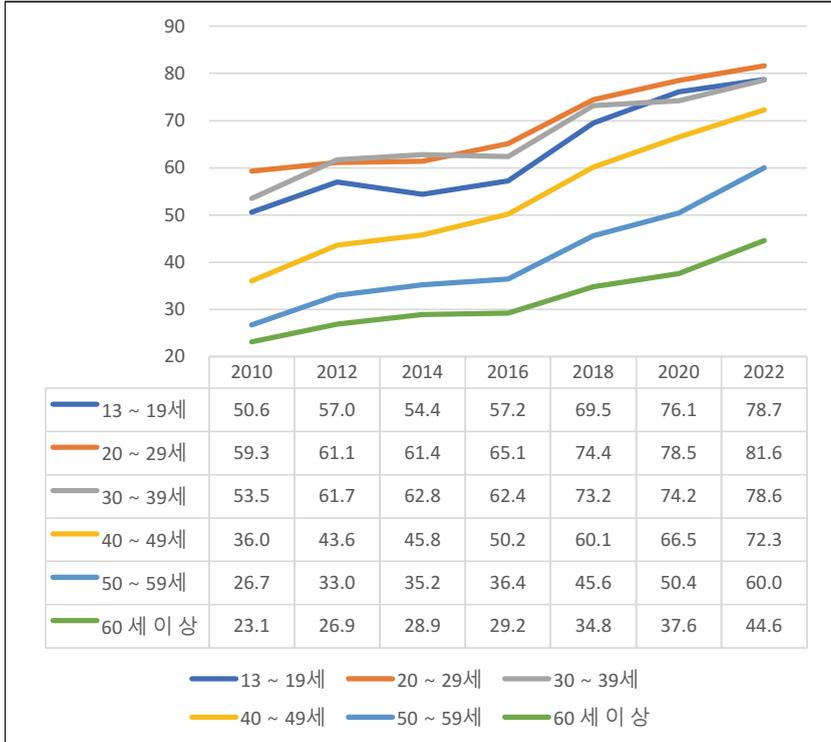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2022년에는 30대 이하의 80% 가까운 비율이 동의의 의견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동의 비율은 2016년에 과반에 이르고 그 후 큰 폭의 증가를 보여 2022년에는 72.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동의 비율은 2020년에 과반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60%가 동의했고, 2010년 26.7%였던 동의 비율에서 최근 큰 폭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0세 이상 집단은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폭이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해 크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0대 이후부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동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2010년과 2022년 사이의 동의 비율 변화 폭을 보면, 20대는 22.3% 포인트, 30대는 25.1% 포인트, 40대는 36.3% 포인트, 50대는 33.3% 포인트, 60대는 21.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40대와 50대는 20대와 30대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동의의 수준은 낮지만, 성인 자녀의 부모 세대에서 변화 폭이 가장 크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44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그림 2-7]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연령별 추이

(단위: %)



주: 제시한 수치는 '동의'(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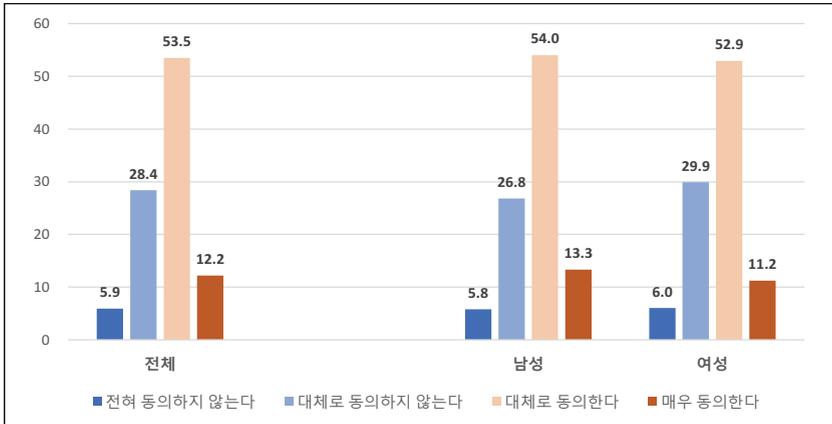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이 비혼 동거의 질문은 보다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와 결혼과 관계없는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가.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결혼을 전제로 성인 남녀가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의 65.7%가 동의하는 쪽의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을 성별에 따라서 보면, 남성의 동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60% 이상이다.

[그림 2-8]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단위: %)



주: 1) 남성 3,965명, 여성 4,035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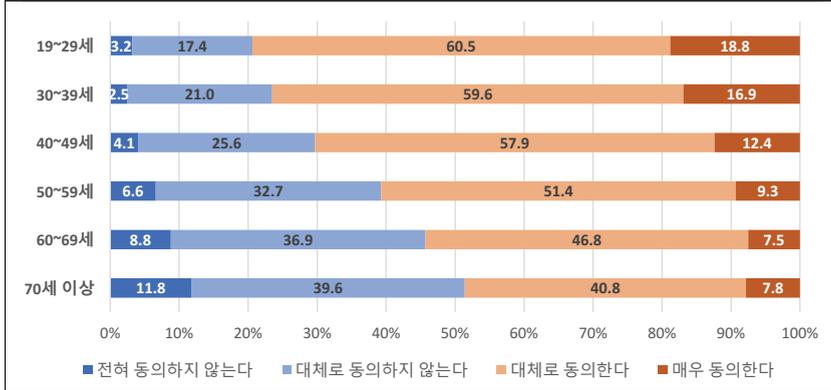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생각을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감소할수록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0세 미만의 집단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 75%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용성을 보인다. 연령이 증가해도 전반적으로 수용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 70세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는 과반이 동의하는 수준이다.

[그림 2-9]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연령별

(단위: %)



주: 1) 19~29세 1,360명, 30대 1,279명, 40대 1,533명, 50대 1,590명, 60대 1,204명, 70세 이상 1,034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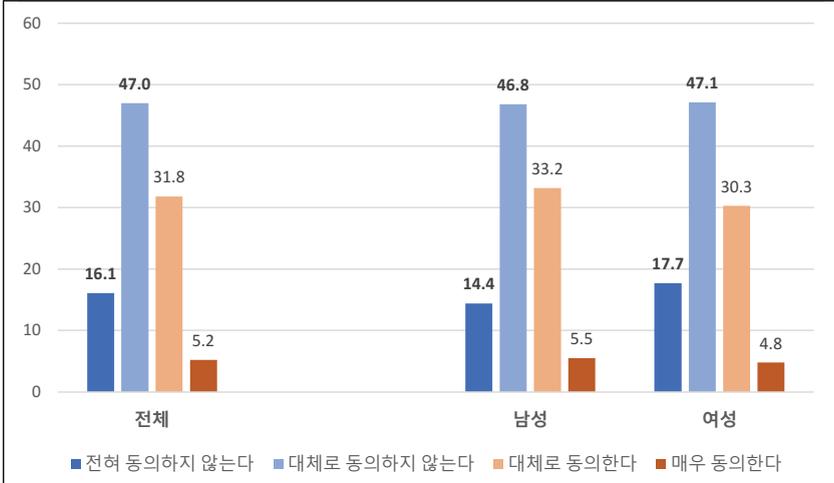
나.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

‘결혼과 무관하게 성인 남녀가 함께 살아도 된다’에 대한 태도에서는 전체 3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와는 달리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를 성별에 따라서 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동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 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한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와 달리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의의 비율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고 그 정도도 과반 수준이다.

[그림 2-10]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단위: %)



주: 1) 남성 3,965명, 여성 4,035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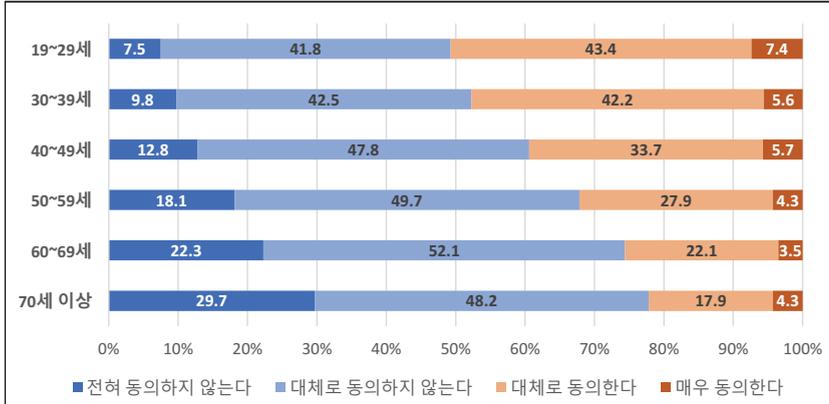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에 대한 생각을 연령별로 보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생각과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감소할수록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동의 비율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동의 비율보다 높지 않다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30대 미만의 집단만 동의 비율이 절반 수준이고, 그 외의 연령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해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한 태도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48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그림 2-11]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비혼 동거에 대한 생각: 연령별

(단위: %)



주: 1) 19~29세 1,360명, 30대 1,279명, 40대 1,533명, 50대 1,590명, 60대 1,204명, 70세 이상 1,034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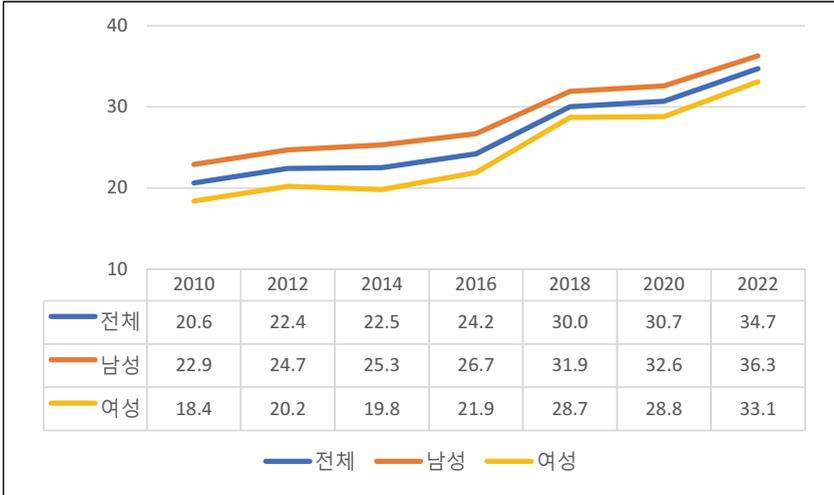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3. 비혼 출산에 대한 태도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혼 출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혼 동거 관계 사이의 출산을 생각하고 응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식보조술을 이용해 여성 혼자 선택적 출산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응답한 경우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은 2016년 이후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은 2010년 20.6%에서 2016년에는 24.2%까지 증가하였고, 그 이후 증가 폭이 커지면서 2022년에는 34.7%에 이르게 된다. 이 견해에 대한 성별 추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4~5% 포인트 내외로 높은 차이를 유지하면서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1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전체 및 성별 추이
(단위: %)



주: 제시한 수치는 '동의'(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비혼 출산에 대한 견해를 연령별로 보면, 15~19세의 경우는 44.1%까지 동의 수준이 상승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약 40%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50대에는 31.8%, 60대 이상의 집단에서는 26.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상승에 따라 비혼 출산을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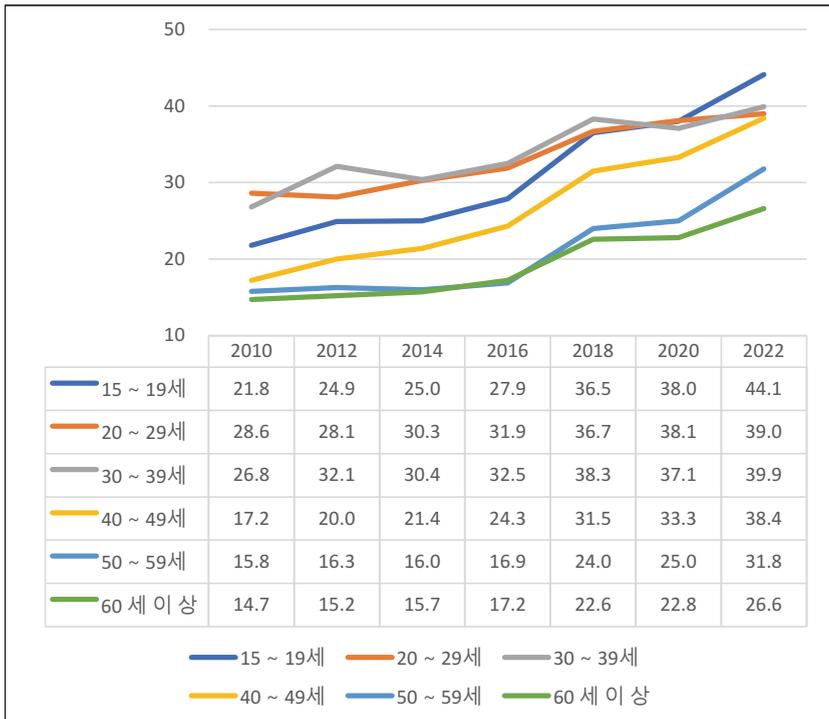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 정도가 어떠한지 2010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긍정 비율을 보인 연령 집단은 20대였고, 그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 15~19세 집단은 2010년에 21.8%에서 2022년 44.1%로 22.3% 포인트 상승하여 가장 큰 폭으로 긍정 비율이 상승한 집단이다. 반면 60세 이상의 집단은 2010년에 14.7%가 동의해 연령 집단 중 가장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고, 2022년에는 26.6%로

50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11.9% 포인트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동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남아 있다.

[그림 2-1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연령별 추이

(단위: %)



주: 제시한 수치는 '동의'(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4. 비혼 동거에 대한 가족 인정 및 관련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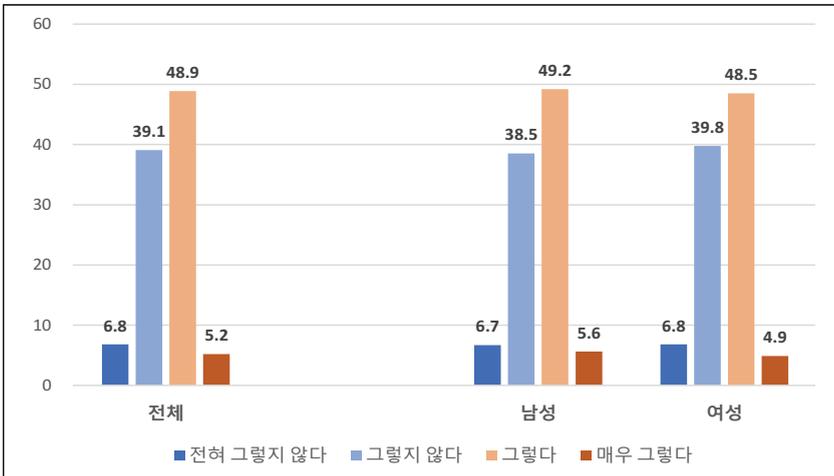
앞서 비혼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많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비혼 동거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지와 비혼 동거

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 또는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비혼 동거에 대한 가족 인정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가족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에서는 전체의 54.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의하는 쪽의 비율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14]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가족이다’에 대한 동의: 전체 및 성별 (단위: %)



주: 1) 남성 3,965명, 여성 4,035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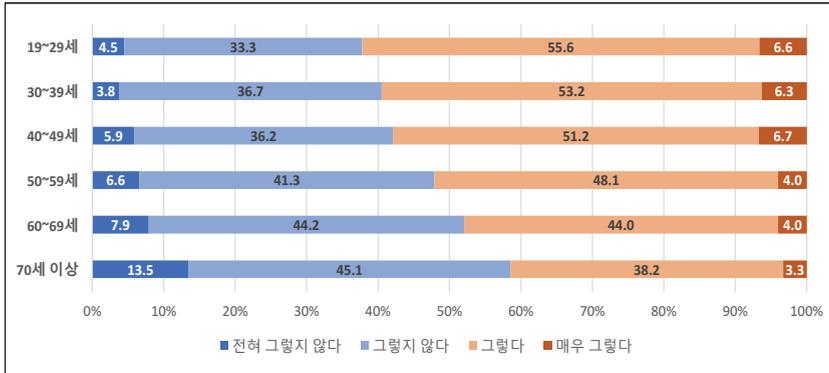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52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동일한 견해에 대해 연령 집단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20대와 30대 집단은 동의의 비율이 약 60%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50대 연령 집단까지는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이지만, 60대 이상의 연령 집단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나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그림 2-15]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가족이다'에 대한 동의: 연령별

(단위: %)



주: 1) 19~29세 1,360명, 30대 1,279명, 40대 1,533명, 50대 1,590명, 60대 1,204명, 70세 이상 1,034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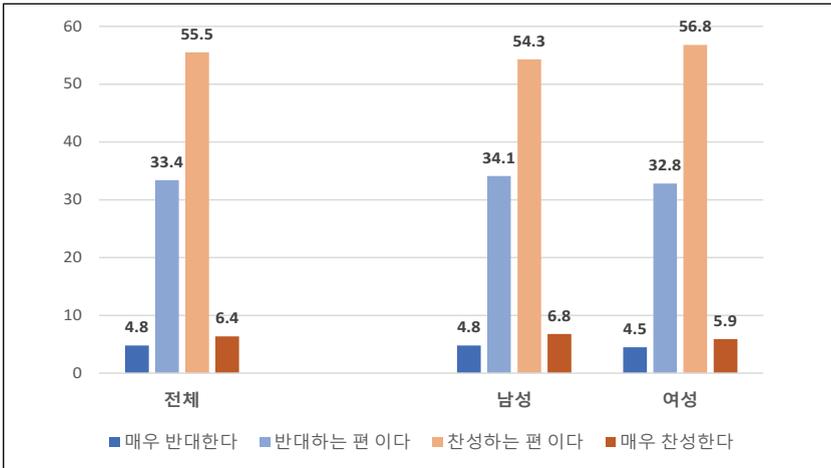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나. 비혼 동거에 대한 제도적 보호

‘동반자 등록제’ 형식의 제도를 마련해 성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 대해 보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는 전체의 6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을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61.1%이고, 여성은 62.7%로 남성과 여성의 견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2-16] 결혼하지 않은 이성 간 동거에 대해 동반자 등록제를 통해 보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단위: %)



주: 1) 남성 3,965명, 여성 4,035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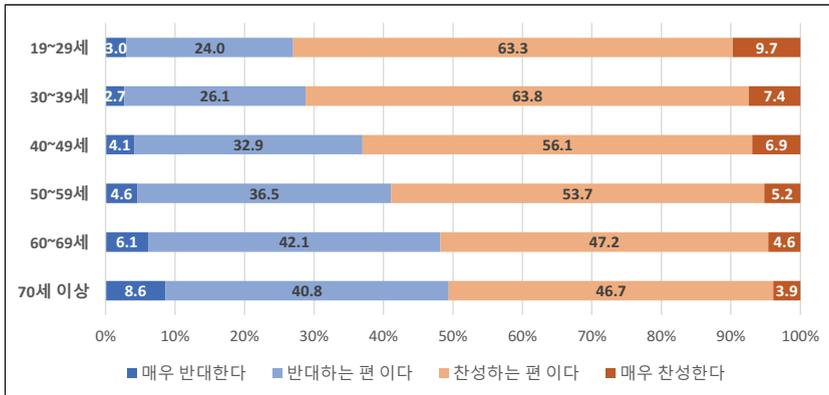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제도적 보호도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비혼 동거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동의 비율을 보이는데, 40대 연령 집단까지 70% 이상의 동의 비율을 보인다. 60대와 70세 이상의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는 동의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비율이 과반이다. 즉 모든 연령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그림 2-17] 결혼하지 않은 이성 간 동거에 대해 동반자 등록제를 통해 보호하는 것에 대한 생각: 연령별

(단위: %)



주: 1) 19~29세 1,360명, 30대 1,279명, 40대 1,533명, 50대 1,590명, 60대 1,204명, 70세 이상 1,034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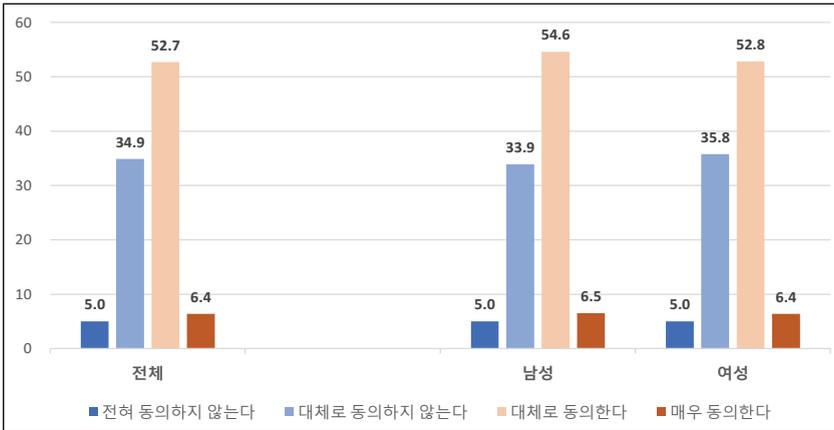
다.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

결혼이 선택이라는 견해가 매우 강해지고 비혼 동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혼 동거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현재는 성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혼 제도가 유일하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태도 중 하나로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도 알아보았다.

‘이성 간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라는 견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전체 59.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보면, 비혼 동거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과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남성이 61.1%, 여성이 59.2%로 약 6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생각: 전체 및 성별

(단위: %)



주: 1) 남성 3,965명, 여성 4,035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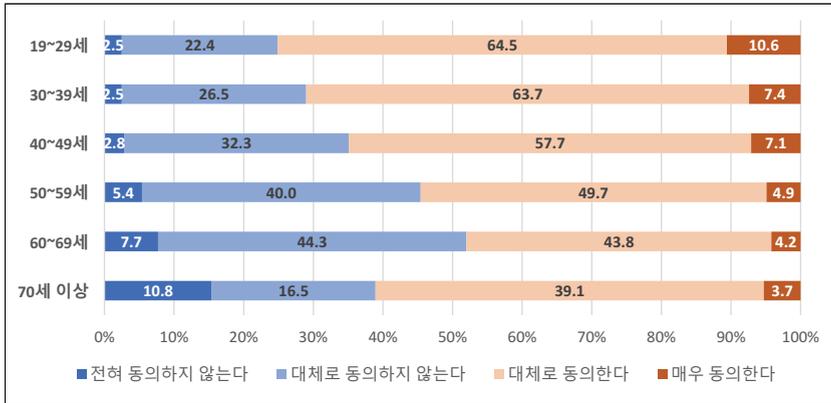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동일한 견해에 대해 연령별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 집단은 동의 수준이 70%를 상회하며, 50대 집단까지는 동의 수준이 과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0대와 70세 이상의 집단은 동의 비율이 절반 이하이기는 하지만, 40% 이상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56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그림 2-19] '이성 간의 결합 방식을 법적 혼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제도이다'에 대한 생각: 연령별

(단위: %)



주: 1) 19~29세 1,360명, 30대 1,279명, 40대 1,533명, 50대 1,590명, 60대 1,204명, 70세 이상 1,034명,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제3장

한국 비혼 동거 규모와 성격

제1절 비혼 동거의 규모

제2절 비혼 동거 선택 이유 및 성격

제3절 소결



제 3장 한국 비혼 동거 규모와 성격

제3장과 제4장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을 살펴본다. 현재 비혼 동거에 관한 양적 분석이 가능한 2차 자료가 풍부하지는 않다. 최근 이루어진 전국 조사에서 배우자나 애인과 사는 경우, 혼인신고 여부를 파악하는 자료가 있어 비혼 동거에 해당하는 자료를 구분해 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자료로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대표적인 조사인 「가족과 출산 조사」와 「가족실태조사」가 있어 두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한다. 2020년에 「가족실태조사」의 부가 조사로 실시된 「동거 가족 실태 조사」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만 접근 가능한 상태여서 이 조사는 원자료 분석 대신 보고서(여성가족부, 2021a)에 제시된 결과를 활용한다. 또한 제3장에서는 「인구동향조사」 혼인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 전 동거의 기간 등을 분석한다. 2차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이용되는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설명한다.

이전 제3장은 비혼 동거 규모와 동거 선택 이유 및 성격 파악을 위해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요 자료를 활용해 비혼 동거 특성을 분석하는 제4장과 구분하여 구성한다.

제1절 비혼 동거의 규모

한국은 비혼 동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구총조사에서 비혼 동거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의 비혼 동거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혼인신고

시 기록하는 실제 결혼 시작 일을 활용해 한국 사회의 결혼 전 동거 비율 등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경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결혼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거에 대해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앞으로의 동거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향성을 생각해 보는 정도가 현재 자료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는 한국의 비혼 동거 통계이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 동거의 비율과 의향을 파악해 본다.

제3장에서 이용하는 자료는 비혼 동거 규모 예측과 향후 동거 의향 및 경향 등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인구동향조사」 혼인신고 자료, 통계청의 「사회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1. 동거 현황

동거 현황 파악을 위해 네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 첫 번째는 혼인신고 자료를 활용해 혼인신고 전에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 두 번째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로 배우자 있는 경우 중 혼인신고 안 한 비율 추이를 본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가족과 출산 조사」와 「가족실태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해 단년도의 동거 가구 비율 및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비율을 살펴본다.

가. 혼인신고 자료

혼인신고 시 작성하는 혼인신고서의 인구동향조사 ㉗ 항목에서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아래 그림 참조)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해 법적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결혼 전 동거 비율이나 기간 등 결혼 전 동거의

경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동거 기간에 대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혼인신고일이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보다 늦은 경우를 동거 경험 부부로 정의하고 찾아내 그 규모를 파악하고, 그 집단 안에서 기간을 구분해 보는 방식으로 살펴본다.

[그림 3-1] 혼인신고서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항목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영실출판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년 월		입부터 동거	
④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④ 혼인종류	남편	① 초혼	② 사별 후 재혼	③ 이혼 후 재혼	아내
④ 최종 졸업학교	(부)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아내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처)
		⑦ 고등학교	⑧ 대학(교)	⑨ 대학원 이상	
④ 직업	남편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아내
	(부)	④ 사무직	⑤ 서비스직	⑥ 판매직	(처)
		⑦ 판매직	⑧ 농림어업	⑨ 농림어업	
		⑩ 기능직	⑪ 정치·경제 조작 및 조립	⑫ 기능직	
		⑬ 단순노무직	⑭ 군인	⑮ 단순노무직	
		⑯ 학생·가사무직		⑰ 학생·가사무직	

자료: 정부24 홈페이지. (n.d.) 민원안내 및 신청>혼인신고>혼인신고서.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0>에서 2023.5.29. 인출.

앞서 제2장의 선행연구에서 검토했듯이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동거 비율을 확인할 수 없어 일본 전국 출산력 조사를 활용하여 결혼 전 동거 기간이 있는 비율을 활용해 동거 경험 비율을 파악(Mogi et al., 2023)하였다. 일본의 전국 출산력 조사에 해당하는 한국의 전국 출산력 조사(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동거 경험에 대한 문항이 가장 최근 2021년 조사에서 포함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보다 앞선 1990년대부터의 자료가 있는 혼인신고 자료를 활용해 법률혼 전 동거 기간을 거친 비율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혼인신고 자료의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보다 혼인신고일이 늦은 경우

의 비율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이 오랜 기간이 아니라면 단순히 혼인신고 지연(delayed marriage)으로 보아 비공식/미등록 결혼 기간(a period of unofficial or unregistered marriage)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Raymo, 2022; Mogi et al., 2023). 그러나 한국 사회처럼 동거에 대한 공식 통계자료가 부재한 경우에는 기초적인 경향 파악부터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거 규모의 변화 경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조사 자료나 대리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동거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아래 표에 제시한 연도는 혼인신고 시점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동향 혼인 자료에서 혼인신고일은 년/월/일 정보로 제공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에 대해서는 년과 월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일에 대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의 년과 월의 정보만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혼인신고 월과 실제 결혼 월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는 두 이벤트의 선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반면 혼인신고 월과 실제 결혼 월이 다른 경우는 그 차이가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결혼 월이 빠른 경우는 포함하였다. 즉 0개월은 제외하고 비율을 산출하였다.

해당 연도의 혼인신고 부부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보다 빠른 경우를 동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1995년과 2020년 사이 25년 동안의 비율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혼인신고 건수를 보면, 1995년의 혼인신고 건수는 398,484건이었고, 25년 사이 지속 감소해 2020년에는 혼인신고 건수가 213,502건으로 18만 건 이상 줄어들었다. 각 연도의 혼인신고 건수에서 동거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수는 1995년 316,565건에서 2020년 95,850건으로 22만 건 이상 감소하였다(통계청, 각연도b). 혼인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동거 경험 건이 감

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전체 혼인 건수 중 동거 경험이 있는 건수의 비율을 보면, 1995년은 79.4%, 2010년은 70.5%, 2005년은 66.8%, 2010년은 57.8%, 2015년은 60.0%, 그리고 2020년에는 44.9%로 점차 감소했다. 그런데 동거 경험 기간을 13개월 미만과 13개월 이상으로 구분해 살펴보니, 1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감소하였지만, 혼인 중 동거 경험 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경우는 1995년 9.2%에서 2020년 11.2%로 증가했다(통계청, 각연도b).

가장 최근인 2020년의 자료를 자세히 보면, 전체 혼인신고 건수(213,502건) 중 혼인신고일보다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이 더 빠른 달에 이루어진 경우는 95,850건으로 그 비중이 약 45%에 이른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이 13개월 미만 차이 나는 경우는 전체 혼인 건수 중 33.7%, 13개월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23,745건으로 전체 혼인신고 건수 중 약 11%를 차지했다. 즉 2020년의 전체 혼인 중 동거 경험은 이 연구에서 검토한 25년 동안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며, 그 수준도 절반 이하로 하락했으나 13개월 이상인 동거는 반대로 2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10%를 넘어섰다.

〈표 3-1〉 혼인신고 부부 중 동거 경험 비중 추이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단위: 건, %)							
혼인신고							
동거 경험 건 (건수)	전체(0개월 제외)	398,484	332,090	314,304	326,104	302,828	213,502
	13개월 미만	316,565	234,060	210,019	188,327	181,705	95,850
혼인신고 건 중 동거 경험 비율 (%)	13개월 이상	279,821	204,231	178,761	158,311	151,717	71,905
	전체(0개월 제외)	36,744	29,829	31,258	30,016	29,988	23,945
혼인신고 건 중 동거 경험 비율 (%)		79.4	70.5	66.8	57.8	60.0	44.9
		70.2	61.5	56.9	48.6	50.1	33.7
		9.2	9.0	9.9	9.2	9.9	11.2

주: 동거 경험은 해당 연도의 혼인신고 부부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보다 빠른 경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각연도b), 인구동향조사 혼인자료,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8&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앞서 전체 혼인 중 동거 경험 비율을 보았다면, 다음은 동거를 경험한 경우를 동거 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았다. 시점은 위의 동거 경험 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5년 간격으로 2020년까지 5개 연도에 대해 알아보았고 0개월은 제외하였다. 즉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에 대한 ‘일(day)’ 정보 부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의 선후를 구분할 수 없는 사례의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신고 월과 실제 결혼 월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거의 기간 구분에서 ‘1개월’은 실제 결혼 생활 시작 월이 혼인신고 월보다 앞선 달이라는 의미로 시간상으로는 1개월(약 30일)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1개월’은 혼인신고와 실제 같이 생활을 시작한 시점의 ‘월(month)’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과 2020년 사이 동거를 경험하고 혼인신고한 부부의 평균 동거 기간은 8.9개월에서 14.6개월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이내의 동거 기간을 거친 부부의 비율은 87.3%에서 75.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5년 사이 동거 기간이 1~2년 사이인 경우는 6.5%에서 13.1%로, 2~4년 사이의 동거 기간을 거친 경우는 3.0%에서 6.3%로, 동거 기간이 4년을 넘는 경우는 3.3%에서 5.6%로 모든 동거 기간 집단에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혼인신고 자료에서 확인한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을 경험한 비율의 증가는 과거에 있던 결혼 전에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낙인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전히 동거라는 것은 결혼의 연장선상에서 더 허용적이며 이와 별개로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표 3-2〉 동거 경험 후 혼인신고한 부부의 동거 기간 추이

구분	1995(N=316,565)			2000(N=234,060)			2005(N=210,019)			2010(N=188,327)			2015(N=181,705)			2020(N=95,850)		
	%	평균 (개월)	S.D.	%	평균 (개월)	S.D.	%	평균 (개월)	S.D.	%	평균 (개월)	S.D.	%	평균 (개월)	S.D.	%	평균 (개월)	S.D.
전체	100	8.4	28.9	100	8.9	29.3	100	9.3	26.9	100	10.0	27.7	100	11.3	32.6	100	14.6	35.2
1년 이내	88.4	2.9	2.7	87.3	2.9	2.8	85.1	3.3	3.0	84.1	3.4	3.0	83.5	3.6	3.0	75.0	4.3	3.4
1개월	44.6	-	-	47.0	-	-	40.5	-	-	36.5	-	-	33.1	-	-	25.0	-	-
2~6개월	43.3	3.2	1.3	40.4	3.2	1.3	44.0	3.3	1.4	47.4	3.3	1.3	49.3	3.4	1.4	50.3	3.5	1.4
7~12개월	12.0	9.2	1.7	12.6	9.2	1.7	15.5	9.2	1.7	16.1	9.2	1.7	18.6	9.2	1.8	24.7	9.4	1.8
1~2년 (13~24개월)	6.1	16.8	3.4	6.5	17.2	2.8	7.6	17.1	3.5	8.0	17.3	3.5	8.1	17.2	3.5	13.1	17.4	3.5
2~4년 (25~48개월)	2.6	33.6	6.6	3.0	33.6	6.7	3.8	33.7	6.6	4.1	33.9	6.8	3.9	34.0	6.8	6.3	33.7	6.7
4년 초과 (49개월 이상)	2.9	136.1	104.2	3.3	130.4	97.5	3.5	112.3	91.4	3.9	111.9	86.7	4.5	124.0	94.8	5.6	124.2	90.1

주: 1) N은 해당 연도의 혼인신고 부부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 '월(month)'이 혼인신고 '월'보다 빠른 사례의 수를 의미함.
 2) 혼인신고일 자료에는 년/월/일 정보가 제공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의 자료에는 년과 월만 제공되고 일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월과 실제 결혼 월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는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의 선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연도b), 인구동향조사 혼인자료,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8&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단위: 건수, 개월, %)

나. 사회조사 자료

사회조사는 가족, 복지, 건강, 여가, 노동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한 해에 5개 분야씩 조사를 진행한다. 즉 각 분야는 2년 주기로 조사된다. 조사는 전국의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2022년 사회조사의 대상은 “전국 약 1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0명”이었고, 총 응답자는 “18,445가구 내 35,792명”이었다(통계청, 2022).

사회조사의 혼인 상태 질문에서 미혼/배우자 있음/사별/이혼으로 선택지를 제공하였고, ‘배우자 있음’을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라는 후속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2006년에 시작되었고, 2008년 질문지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질문은 전체적으로 혼인신고 여부에 대한 후속 질문을 포함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2018년에는 후속 질문 방식이 아니라 혼인 상태 선택지를 미혼/배우자 있음/동거/사별/이혼/별거로 ‘동거’를 선택지에 포함해 구분하는 방식을 활용하였지만, 이 방식은 2018년도에만 적용하고 2020년부터 다시 후속 질문 방식으로 변경하여 최근까지 이용되었다.

〈표 3-3〉 통계청 사회조사의 혼인 상태 질문 및 선택지 변화

연도	혼인 상태	추가 질문
2004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2006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2008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연도	혼인 상태	추가 질문
2010 2012 2014 2016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 ③ 사별 ④ 이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2018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동거 ④ 사별 ⑤ 이혼 ⑥ 별거	
2020 2022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 ③ 사별 ④ 이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n.d.). 통계실명자료 > 연도별 사회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18>에서 2023. 11.27.인출.

사회조사의 혼인 상태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는 있으나 혼인신고하지 않은 비율을 살펴보았다. 총 응답을 활용하면 동일 가구 내 응답자를 포함하게 되므로, 가구의 혼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구주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022년 기준 응답 가구주의 혼인 상태를 분석해 보면, 전체 18,445가구의 가구주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0.5%였다. 이 중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 즉 동거 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의 2.4%이고, 전체 가구 중의 비율로 보면 1.4%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 혼인신고 여부를 처음 조사한 2006년부터 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 중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비율이 2006년에 2.4%였고, 2010년에는 1.9%, 2012년과 2014년에는 2.0%, 2016년에는 2.2%, 그리고 2020년과 2022년에는 2.4%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동거’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조사했던 2018년에는 ‘동거’ 응답이 전체 중 0.3%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조사 응답 가구주의 혼인 상태 비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혼	9.8	10.1	12.4	12.2	12.9	14.7	16.8	19.1
배우자 있음	75.5	71.8	68.2	66.6	65.3	63.7	61.2	60.5
혼인신고 함	97.6	98.1	98.0	98.0	97.8	-	97.6	97.7
혼인신고 안 함	2.4	1.9	2.0	2.0	2.2	-	2.4	2.4
이혼/사별 (별거 포함)	14.7	18.1	19.5	21.2	21.9	21.3	22.0	20.4
동거	-	-	-	-	-	0.3	-	-

주: 1) 가중치 적용하였음.

2) 2018년 '동거' 비율은 조사에 '동거'라는 선택지가 개별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에서의 비율을 구함.

자료: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다.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

2021년의 가족과 출산조사는 전국의 9,999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응답 가구를 기준으로 미혼, 혼인 및 동거 가구를 구분해 보면 약 절반이 미혼 가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률혼 가구가 37.2%이고 비혼 동거 가구는 2.9%를 차지한다.

〈표 3-5〉 가족과 출산조사 응답 가구의 혼인 상태 분포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비혼 동거 가구	2.9
법률혼 가구	37.2
이혼/별거/사별 1인 가구	8.6
미혼 1인 가구	51.2

주: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라. 가족실태조사 자료

2020년의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해 혼인 상태 비율을 알아보았다. 가족 실태조사는 10,997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분석한 원자료는 가구 대표 10,997명과 가구원 중 12세 이상인 가구원 11,179명의 응답 자료이다(여성가족부, 2021c). 혼인 상태의 중복 계산을 방지 위해 가구원 전부가 아닌 가구 대표(10,997명)를 기준으로 하였다. 즉 한 가구에서의 대표자 1인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가구 대표의 혼인 상태를 보면, 미혼

13.9%, 유배우(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31.9%, 이혼 및 별거 10.5%, 사별이 13.6%이다. 사실혼, 법률혼, 비혼 동거 등 현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대표 중 혼인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4%,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혼 동거 중인 비율은 2.6%로 확인되었다.

〈표 3-6〉 가족실태조사 응답 가구 대표의 혼인 상태 분포

(단위: %)

구분	비율
전체	100.0
미혼	13.9
유배우	61.9
혼인신고 함	97.4
혼인신고 안 함	2.6
이혼/별거	10.5
사별	13.6

주: 가구 대표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구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 (2021c).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1003086&itmDiv=2&nPage=3&itemId=2002&itemNm=%EC%82%AC%ED%9A%8C%EC%9D%BC%EB%B0%98>

2. 향후 동거 의향

앞서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제3장)에서 그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과 그 안에서 젊은 세대의 수용 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수용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젊은 세대에서 동거의 실천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보다 직접적으로 현재 결혼하지 않았거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 향후 동거할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방법을 통해서도 향후 동거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없지만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동거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이라는 응답은 51.5%였고, 응답자의 48.5%는 결혼 전에 동거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의향을 보였다.

현재 배우자/애인/파트너가 없지만 현재 교제 중인 상대가 있는 경우는 현재 교제 상대의 유무, 성별, 연령에 따라 향후 결혼 시 동거 의향에 대한 응답에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경우는 동거 후 결혼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53.4%로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 46.6%보다 높았다. 여성보다는 남성 응답자가 동거 후 결혼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20대와 40대는 과반이 동거 후 결혼할 의향이 높지만, 30대의 경우는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의 경우에는 이혼한 경우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동거 후 결혼에 대한 의향이 높을 수 있다. 결혼 평균 연령이 포함된 30대 집단은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이라는 응답이 동거 후 결혼할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아서 결혼을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집단 내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30대 집단의 40%는 결혼 전에 동거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동거의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

〈표 3-7〉 향후 결혼할 의향 있는 경우의 결혼 전 동거 의향

(단위: %, 명)

구분		동거 후 결혼할 생각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	전체 (명)
전체		48.5	51.5	100.0 (3,229)
현재 교제 상대 $\chi^2=20.59^{***}$	있음	53.4	46.6	100.0 (1,309)
	없음	45.2	54.8	100.0 (1,990)
현재 혼인 상태 $\chi^2=2.65$	미혼	48.3	51.7	100.0 (3,234)
	이혼/별거/사별	58.5	41.5	100.0 (66)
성별 $\chi^2=22.99^{***}$	남자	52.0	48.0	100.0 (2,123)
	여자	42.1	57.9	100.0 (1,176)
연령 $\chi^2=30.06^{***}$	19~29세	51.0	49.0	100.0 (2,340)
	30~39세	39.5	60.5	100.0 (718)
	40~49세	50.1	49.6	100.0 (241)

주: 1) *** $p < 0.001$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반면 현재 배우자/애인/파트너가 없으며 결혼에 대한 의향도 없는 집단에 대해 결혼하지 않을 것이면 동거할 의향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동거할 의향은 있다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경우는 8.0%가, 남성인 경우는 7.2%가 동거 의향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상대 집단(현재 교제 상대가 없는 경우 5.7%, 여성 4.7%)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현재 혼인 상태가 미혼인 집단은 6.6%가 동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혼인 상태 집단(1.8%)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동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4%로 가장 높았고, 30대의 경우는 6.3%, 그리고 40대는 2.1%로 낮아져 차이를 보였다.

74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3-8〉 향후 결혼할 의향 없는 경우의 동거 의향

(단위: %, 명)

구분		동거 의향 없음 /모름	동거 의향 있음	전체 (명)
전체		94.0	6.0	100.0 (1,306)
현재 교제 상태 $x^2=1.23$	있음	92.0	8.0	100.0 (150)
	없음	94.3	5.7	100.0 (1,156)
현재 혼인 상태 $x^2=9.53^*$	미혼	94.3	6.6	100.0 (1,131)
	이혼/별거/사별	98.2	1.8	100.0 (175)
성별 $x^2=3.79$	남자	92.8	7.2	100.0 (664)
	여자	95.3	4.7	100.0 (642)
연령 $x^2=17.77^{***}$	19~29세	91.6	8.4	100.0 (618)
	30~39세	93.7	6.3	100.0 (288)
	40~49세	97.9	2.1	100.0 (399)

주: 1) *** $p < 0.001$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 4점 중 평균은 2.55점으로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혼인 상태가 미혼인 경우는 미혼/별거/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이 견해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은 결혼 전 동거가 결혼 생활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한 결과는 비혼 동거에 대한 경향과 유사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표 3-9〉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것은 남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을 높여 준다'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분		평균 (SD)	t/F	전체 (명)
전체		2.55 (0.77)		100.0 (2,820)
현재 혼인 상태	미혼	2.70 (0.74)	t=15.20***	100.0 (1,886)
	이혼/별거/사별	2.24 (0.75)		100.0 (934)
성별	남자	2.64 (0.76)	t=6.63***	100.0 (1,392)
	여자	2.45 (0.77)		100.0 (1,428)
연령	19~29세	2.72 (0.75)	F=98.3***	100.0 (1,257)
	30~49세	2.69 (0.72)		100.0 (632)
	50~69세	2.35 (0.72)		100.0 (441)
	70세 이상	2.11 (0.75)		100.0 (490)

주: 1) ***p<0.001

2) 가중치 적용하였음.

3)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대체로 동의한다 3점, 매우 동의한다 4점에 대한 산술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3. 비친족 가구의 증가

동거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도가 높아진 것, 혼인 의사가 있는 미혼은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의향이 절반 수준인 것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동거라는 삶의 형태가 지속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동거의 증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비친족 가구의 증가이다(KOSIS, 각연도c).

비친족 가구 수는 2015년 214,421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513,889가구로 증가하였다. 이 가구에 속한 비친족 가구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15년에 471,85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백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1,098,224명이 비친족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6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3-10〉 비친족 가구와 가구원 수 추이

(단위: 가구,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친족 가구(가구)	214,421	269,444	308,659	340,367	386,968	423,459	472,660	513,889
비친족 가구원(명)	471,859	583,438	673,784	746,930	840,936	912,878	1,015,100	1,098,224

자료: KOSIS. (각연도c). 인구총조사,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vw_cd=MT_ZTITL E&list_id=A12_2015_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 E

비친족 가구 중에서도 2인 비친족 가구에 비혼 동거 커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2인 비친족 가구 수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앞서 살펴본 비친족 전체 가구 수 증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집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46만 가구 이상이 비친족 2인 가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KOSIS, 각연도c).

〈표 3-11〉 2인 비친족 가구 추이

(단위: 가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인 비친족 가구	183,318	235,980	267,376	292,106	337,811	374,243	420,738	461,039

자료: KOSIS. (각연도c). 인구총조사,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vw_cd=MT_ZTITL E&list_id=A12_2015_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

비혼 동거 커플은 현재의 통계상 미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가구 구성에서는 비친족 가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증가에 더해 장래 가구 추계에서도 이 형태의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OSIS, 각연도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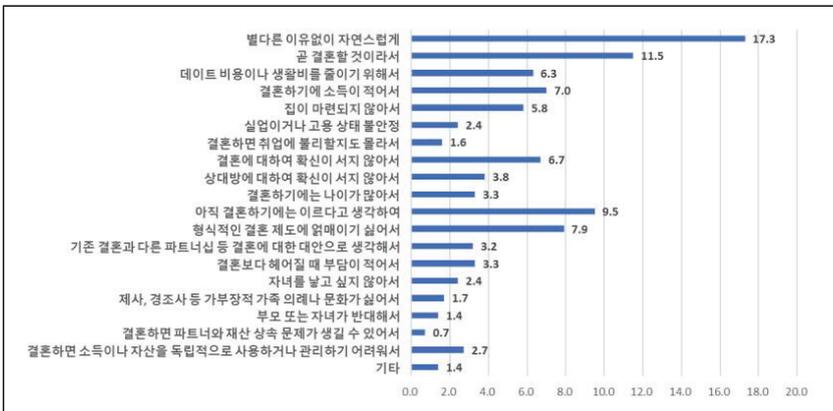
제2절 비혼 동거 선택 이유 및 성격

한국 비혼 동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동거 사유’에 대한 질문 항목이 있는 세 가지 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조사 대상을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한정된 가족실태조사의 부가 연구인 「비혼 동거 실태 분석 연구」 결과, 그리고 2020년 「가족실태조사」와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일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가장 많은 동거 사례를 조사한 「비혼 동거 실태 분석 연구」 결과에서는 ‘기타’를 포함해 총 20개의 동거 사유를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21b). 여러 이유 중 ‘별다른 이유없이 자연스럽게’라는 응답이 17.3%로 가장 높고, ‘곧 결혼할 것이라서’가 11.5%로 10% 이상의 응답을 보인 항목이다. 이어서 ‘결혼하기 이르다고 생각해서(9.5%)’와 ‘형식적인 결혼 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현재 동거하는 이유 1순위

(단위: %)



주: 전체 비혼 동거 중인 1,022명에 대한 응답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 (2021b). 비혼 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2년 가족실태조사 부가 연구. p.10 <표 I-5> 수정.

비혼 동거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인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가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와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가 21.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경우는 결혼을 위한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어가며 결혼을 연기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비혼 동거가 가장 많고,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경우는 제도나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비혼 동거 생활 방식을 택한 경우가 가장 많아 보인다.

〈표 3-12〉 현재 동거하는 이유 1순위

(단위: %, 명)

구분	아직 결혼 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해서	기혼이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경제적인 이유로	재산 상속 등의 이유로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가족이 반대해서	기타	전체 (명)	
전체	12.1	1.5	29.7	2.8	21.4	21.4	0.9	10.2	100.0 (323)	
혼인신고 계획 $\chi^2=48.13$ ***	있음	13.1	2.3	37.4	1.9	21.5	11.7	0.5	11.7	100.0 (214)
	없음	10.1	0.0	14.7	4.6	21.1	40.4	1.8	7.3	100.0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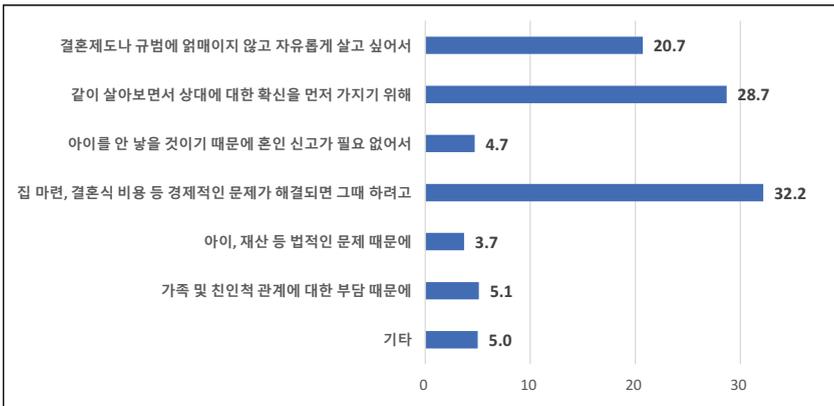
주: **p<0.01, ***p<0.001
 자료: 여성가족부. (2021c).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1003086&itmDiv=2&nPage=3&itemId=2002&itemNm=%EC%82%AC%ED%9A%8C%EC%9D%BC%EB%B0%98>

「가족과 출산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32.2%, 상대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가 28.7%,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20.7%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에는 ‘결혼식을 먼저 하려고’, ‘코로나19로 결혼식이

연기되어서', '부모의 반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결혼식이 연기되어 혼인신고를 결혼식 다음에 하려 한다는 이유에 속했다.

[그림 3-3]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주: 1) 기타: '결혼식 먼저 하려고',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부모의 반대', '나이가 어려서' 등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비혼 동거를 택한 이유를 특성에 따라서 보면,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다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비혼 동거를 택한 이유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살아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경우의 비율도 높았다. 반면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집단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혼 동거를 택했다는 응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집단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혼 동거를 택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여 결혼과 출산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80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3-13〉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자유	② 상대 확신	③ 무 자녀	④ 경제 문제	⑤ 법적 문제	⑥ 가족 부담	⑦ 기타	전체 (명)
전체		20.7	28.7	4.7	32.2	3.7	5.1	5.0	100.0 (336)
혼인신고 계획	있음	20.2	28.7	3.2	34.3	3.7	4.4	5.5	100.0 (306)
	없음/모름	26.4	28.2	19.4	10.6	3.6	11.8	0.0	100.0 (30)
동거 기간	1년 미만	23.7	28.0	1.5	32.4	1.5	4.2	8.8	100.0 (135)
	1~2년 미만	19.4	31.6	5.1	38.5	0.0	4.1	1.3	100.0 (75)
	2~5년 미만	11.4	39.6	1.9	30.7	3.6	10.5	2.4	100.0 (74)
	5년 이상	28.0	10.8	16.1	24.6	14.8	1.4	4.3	100.0 (55)
성별 $x^2=8.69$	남자	22.4	25.1	2.8	35.9	2.2	5.7	5.9	100.0 (159)
	여자	19.2	31.9	6.3	28.8	5.0	4.6	4.1	100.0 (177)
연령	19~29	26.6	28.3	1.0	31.5	0.0	6.3	6.3	100.0 (136)
	30~39	18.5	31.7	3.0	37.3	1.4	2.1	6.0	100.0 (135)
	40~49	12.9	23.3	15.9	22.8	16.3	8.8	0.0	100.0 (64)
결혼식 여부 $x^2=15.99^*$	함	22.3	33.3	4.9	32.7	5.0	0.2	1.5	100.0 (117)
	안 함	19.9	26.2	4.5	31.8	3.0	7.7	6.9	100.0 (219)

주: 1) * $p<0.05$, ** $p<0.01$,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중치 적용하였음.

4) ①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②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 ③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④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⑤ 아이, 재산 등 법적 인 문제 때문에, ⑥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⑦ 기타('결혼식을 먼저 하려고',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어서'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제3절 소결

이 절에서는 동거 인구에 대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비혼 동거의 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여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향후 비혼 동거의 경향성에 대해 예견해 보았다. 그리고 동거를 선택한 이유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법률혼 부부의 수는 1995년 이래 감소하였으며, 그중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가 혼인신고 시기보다 빠른 사례가 1995년 약 80%에서 2020년에는 절반 가량으로 감소하였다. 혼인신고 전에 함께 산 것을 동거 경험이라 정의하면, 법률혼 전에 동거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혼전 동거 경험이 있는 부부 중 1년 이상 동거를 경험한 비율은 증가하였고, 동거 기간 평균도 증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혼전 동거를 한다면 더 장기간 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0년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해 배우자가 있거나 혼인신고 하지 않은 비율을 알아본 결과, 배우자 있는 경우 중의 2.5%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조사 가구의 2.9%가 비혼 동거 가구로 나타나 앞의 조사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해당 조사의 대상 연령이 다른 조사와 비교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향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동거에 대한 의향이 절반 정도 되며, 1인 가구 및 비친족 가구의 증가와 그중에서도 2인 비친족 가구의 증가 전망 등을 통해 앞으로 동거 생활 방식의 증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비혼 동거의 선택 이유와 동거 성격도 살펴보았다. 비혼 동거 경험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비혼 동거 실태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

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와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서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동거를 선택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동거 경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전체 가구 조사(「가족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 동거 가구를 구분해 내 분석한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차이는 전체 가구 조사의 경우에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동거 커플의 비율이 높은 점으로 동거 집단 내부의 다양성이 덜하기 때문일 수 있고, 조사마다의 응답 선택 항목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혼인 전 짧은 동거 기간을 거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혼인 전 동거 기간이 있는 경우 내에서는 1년 이상의 동거를 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동거의 수용성이나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의향, 동거 커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나 2인 비친족 가구의 증가 경향 및 추계로 미루어보아 동거를 경험하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 전 일정 기간의 동거와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결혼 전 단계에서 테스트 성격을 지닌 동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계를 관련 선행연구(e.g., Kiernan, 2001; Villeneuve-Gokalp, 1991)에 비추어보면 동거가 사회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거나 결혼을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동거에 대한 수용도가 사회 전반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 전 동거는 비교적 폭넓게 수용되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거 성격이나 확산 단계 구분에서 출산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데, 동거 사이의 출산에 대한 논의는 제4장에서 다룰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다만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동거 커플, 얼마간은 동거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커플의 경우는 동

거 선택 이유 중 하나가 자녀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 사회의 동거 확산 단계는 동거를 매우 일탈적인 현상으로 보는 매우 초기 단계는 넘어섰지만, 동거가 결혼의 대안이 되거나 출산까지도 이어지는 수준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단계이다.





제4장

한국 비혼 동거 특성

제1절 비혼 동거 생활 경험

제2절 비혼 동거와 출산

제3절 결혼·가족 및 성역할 관련 태도

제4절 소결



제4장 한국 비혼 동거 특성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 비혼 동거 생활을 하는 것에서의 경험과 출산에 대한 생각 및 가족 가치관에 대해 알아본다. 비혼 동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조사 자료 중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이 장의 주자료로 활용하였다.

비혼 동거 생활 경험은 혼인신고 계획 및 결혼식 여부, 혼인신고의 필요성, 생활에서의 불편이나 편견에 대한 경험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혼 동거와 출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비혼 동거 관계에서의 출산 경험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비혼 동거 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다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혼인을 한 경우와 비혼 동거 집단 사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 그리고 성역할 태도 등의 측면에서 한국 비혼 동거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1절 비혼 동거 생활 경험

1. 혼인신고 계획과 결혼식 여부

비혼 동거 관계에서 혼인신고 계획은 동거의 성격이나 단계를 규정지를 뿐 아니라 향후 법률혼으로의 편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에서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 혼

인신고를 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 혼인신고 계획 여부를 알아본 결과, 91.1%가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국 단위 대규모 가구 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 중 하나는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커플이 동거 생활을 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사 대상, 방법 등에 따라 이 비율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를 활용해 배우자가 있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은 집단 혼인신고 계획 여부를 분석하면 그 비율이 앞서 본 「가족과 출산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를 활용한 분석보다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즉 각 조사가 비혼 동거 커플을 중심으로 한 조사가 아니며 그 안에서 추출한 비혼 동거 커플의 사례 수가 많지 않은 자료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 커플에 대한 양적 분석을 할 수 있는 최근 자료 중 결혼 및 출산, 가족 분야에 대한 질문이나 동거 생활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으며, 결혼 및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인 「가족과 출산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를 활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별, 연령, 결혼식 여부에 따라 혼인신고 계획 유무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은 13.0%, 남성은 4.5%로 여성이 남성보다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는 여성과 남성 양방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신고이다. 이 조사에 응답한 남성과 여성이 커플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혼인신고 계획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비혼 동거 관계의 실제 혼인신고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40대의 경우는 혼인신고 계획이 없다/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22.7%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았다. 결혼식 여부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었는데, 결혼식을 한 경우보다 하지 않은 경우에 혼인신고 계획이 없다/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12.9%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식을 한 경우는 혼인신고의 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알아본 것은 현재 동거 생활 이전의 법률혼 경험에 따른 차이이다. 조사의 특성상 조사 대상이 연령 49세까지이므로 과거에 법률혼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사례 수가 많지 않다. 빈도를 확인해 보면, 법률혼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4-1〉 비혼 동거 상대와 혼인신고 계획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 계획 있음	혼인신고 계획 없음/모름	전체 (명)
전체		91.1	8.9	100.0 (336)
동거 기간 $\chi^2=6.40$	1년 미만	94.7	5.3	100.0 (135)
	1~2년 미만	87.9	12.1	100.0 (75)
	2~5년 미만	92.7	7.3	100.0 (74)
	5년 이상	84.1	15.9	100.0 (55)
성별 $\chi^2=7.60^{**}$	남자	95.5	4.5	100.0 (159)
	여자	87.0	13.0	100.0 (177)
연령 $\chi^2=23.97^{***}$	19~29	91.1	8.9	100.0 (136)
	30~39	97.5	2.5	100.0 (135)
	40~49	77.3	22.7	100.0 (64)
결혼식 여부 $\chi^2=11.58^{**}$	함	98.4	1.6	100.0 (117)
	안 함	87.1	12.9	100.0 (219)
법률혼 경험	있음	65.6	34.4	100.0 (26)
	없음	93.2	6.8	100.0 (310)

주: 1) * $p<0.05$, ** $p<0.01$, *** $p<0.001$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결혼식은 상대와 부부 관계라는 것을 서약하고 그 사실을 주변에 공개하는 의식으로 결혼 생활 시작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비혼 동거 중인 응답자의 약 35%는 결혼식을 하였고, 약 65%는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았듯이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경우가 결혼식을 한 비율이 높다. 동거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5년 이상일 경우는 결혼식을 안 했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고, 1~5년 미만의 동거 기간에 해당하는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 집단에서도 20대와 40대는 결혼식을 안 한 비율이 65% 이상이고, 중간 연령대인 30대 집단의 경우가 결혼식을 안 한 비율이 58.7%로 다른 두 연령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비혼 동거 상대와 결혼식 여부

(단위: %, 명)

구분		결혼식 함	결혼식 안 함	전체 (명)
전체		34.9	65.1	100.0 (336)
혼인신고 계획 $x^2=11.58^{**}$	있음	37.7	62.3	100.0 (306)
	없음/모름	6.3	93.7	100.0 (30)
동거 기간 $x^2=9.75^*$	1년 미만	27.0	73.0	100.0 (135)
	1~2년 미만	45.1	54.9	100.0 (75)
	2~5년 미만	42.3	57.7	100.0 (74)
	5년 이상	30.0	70.0	100.0 (55)
성별 $x^2=0.46$	남자	36.8	63.2	100.0 (159)
	여자	33.2	66.8	100.0 (177)
연령 $x^2=6.09^*$	19~29	28.0	72.0	100.0 (136)
	30~39	42.3	57.7	100.0 (135)
	40~49	33.9	66.1	100.0 (64)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2. 혼인신고의 필요성

현재 동거 중인 경우에 혼인신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 경우가 43.0%, 없는 경우가 57.0%로 나타났다.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은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동거 집단은 혼인신고 필요성에 대해 46.8%가 응답했으나,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동거 집단은 혼인신고에 대한 필요성에 3.4%만이 응답하여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동거 집단은 법적 지원이나 혼인신고 등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낀 경험이 과반으로 나타나 2년 미만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혼인신고 필요성은 1~2년 미만인 집단에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는데, 처음부터 동거 생활을 계속할 계획이었던 커플을 제외한다면 동거 생활 시작 초기에는 혼인신고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불편이 없거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상대로 살아간다면 어차피 늦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나 기회가 있을 때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혼인신고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

92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4-3〉 혼인신고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혼인신고 필요성 느낀 적 있음	혼인신고 필요성 느낀 적 없음	전체 (명)
전체		43.0	57.0	100.0 (336)
혼인신고 계획 $\chi^2=21.01^{***}$	있음	46.8	53.2	100.0 (306)
	없음/모름	3.4	96.6	100.0 (30)
동거 기간 $\chi^2=9.39^*$	1년 미만	41.8	58.2	100.0 (135)
	1~2년 미만	29.9	70.1	100.0 (75)
	2~5년 미만	53.1	46.9	100.0 (74)
	5년 이상	50.4	49.6	100.0 (55)
성별 $\chi^2=2.86$	남자	47.8	52.2	100.0 (159)
	여자	38.6	61.4	100.0 (177)
연령 $\chi^2=5.60$	19~29	35.5	64.5	100.0 (136)
	30~39	48.8	51.2	100.0 (135)
	40~49	46.6	53.4	100.0 (64)
결혼식 여부 $\chi^2=0.28$	함	41.0	59.0	100.0 (117)
	안 함	44.0	56.0	100.0 (219)

주: 1) * $p<0.05$, ** $p<0.01$, *** $p<0.001$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현재 동거 상대와의 관계를 혼인한 부부라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부부 관계라고 생각한다(96.7%)고 응답하였다. 현재 동거 중인 경우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가 다수 포함된 자료의 특성상 상대를 배우자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상된 결과이다. 다만 동거 집단 중에서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경우는 동거 상대와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 비혼 동거 상대와 관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부부(혼인) 관계라 생각함	부부(혼인) 관계라 생각 안 함	전체 (명)
전체		96.7	3.3	100.0 (336)
혼인신고 계획	있음	98.7	1.3	100.0 (306)
	없음/모름	76.7	23.3	100.0 (30)
동거 기간	1년 미만	97.6	2.4	100.0 (135)
	1~2년 미만	89.7	10.3	100.0 (75)
	2~5년 미만	100.0	0.0	100.0 (74)
	5년 이상	100.0	0.0	100.0 (55)
성별 $\chi^2=0.24$	남자	96.1	3.9	100.0 (159)
	여자	97.3	2.7	100.0 (177)
연령	19~29	93.4	6.6	100.0 (136)
	30~39	98.6	1.4	100.0 (135)
	40~49	100.0	0.0	100.0 (64)
결혼식 여부	함	100.0	0.0	100.0 (117)
	안 함	95.0	5.0	100.0 (219)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동거 상대를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 그 관계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부부 관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는 시각은 76.9%, 결혼식을 한 시점으로 본다는 응답은 22.1%, 기타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이 질문의 선택지는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과 결혼식을 한 시점이 주요 시점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한 집단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결혼식을 한 시점을 부부 관계의 시작으로 보는 비율이 61.3%로 과반으로 나타났다.

94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4-5〉 비혼 동거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시점(혼인 관계라 생각하는 경우만 응답)

(단위: %, 명)

구분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결혼식을 한 시점	기타	전체 (명)
전체		76.9	22.1	1.0	100.0 (325)
혼인신고 계획	있음	75.3	23.8	0.9	100.0 (302)
	없음/모름	96.8	0.0	3.2	100.0 (23)
동거 기간	1년 미만	74.4	24.8	0.8	100.0 (132)
	1~2년 미만	78.7	21.3	0.0	100.0 (67)
	2~5년 미만	79.2	20.8	0.0	100.0 (74)
	5년 이상	77.4	18.1	4.4	100.0 (52)
성별	남자	78.0	21.5	0.4	100.0 (153)
	여자	75.8	22.6	1.6	100.0 (172)
연령	19~29	79.3	19.0	1.7	100.0 (127)
	30~39	73.6	26.4	0.0	100.0 (134)
	40~49	78.8	19.3	2.0	100.0 (64)
결혼식 여부	함	38.7	61.3	0.0	100.0 (117)
	안 함	98.4	0.0	1.6	100.0 (208)

주: 1)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은 셀이 20% 이상인 경우 χ^2 값을 제시하지 않음.
 2) 가중치 적용하였음.
 3) 기타: 부모님께 인사한 날, 결혼날짜 잡은 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함께 살기 시작했을 당시의 기대를 보면, 전반적으로 심리·정서적인 안정감과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동거 시작 당시에 상대적으로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인 안정성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는 3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혼인신고 계획 유무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그 안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는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비혼 동거 집단은 매우 낮은 수준(1.64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표 4-6) 비혼 동거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당시의 기대

(단위: %, 명)

구분	전체(n=306)	혼인신고 계획		
	평균 (S.D.)	있음(n=306)	없음(n=30)	t/F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2.71 (0.70)	2.76 (0.67)	2.21 (0.82)	4.22***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3.20 (0.59)	3.26 (0.52)	2.57 (0.89)	4.21***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2.57 (0.85)	2.67 (0.80)	1.64 (0.77)	6.74***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3.01 (0.60)	3.04 (0.58)	2.64 (0.63)	3.32*

주: 1) *p<0.05, **p<0.01, ***p<0.001

2) 가중치 적용하였음.

3) 평균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 1점, 기대하지 않았음 2점, 기대하였음 3점, 매우 기대하였음 4점에 대한 산술평균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3. 비혼 동거로 인한 차별 및 불편 경험

비혼 동거 생활을 하면서 정부 지원의 제한, 보호자 자격 및 역할의 제약,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제약, 부정적 시선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에서의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이 28.3%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혜택의 제한은 21.2%, 부정적 시선은 13.9%, 그리고 보호자 자격 및 역할 제약에 대한 경험이 12.5%로 나타났다.

공적 지원과 자격 부여 측면에서의 차별이나 불편 경험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다. 주거정책, 건강보험, 세금제도 등 정부 지원 혜택에서 제한을 경험한 것은 동거 기간과 연령, 결혼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거 기간이 2년 이상에서 5년 미만 사이인 경우는 정부 지원 혜택에서의 제한을 경험한 비율이 44.1%로 나타났고, 5년 이상의 집단에서는 과반인

54.7%가 경험한 것으로 그 비율이 상승하였다. 동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에서의 경험도 다양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연령이 상승할수록 경험 비율이 높아져 40대에서는 정부 지원 혜택 제한 경험이 45.0%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거 기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결혼식 여부에 따라서는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정부 지원 혜택에서의 제한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한 것(34.5%)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혜택 이외에 병원 방문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 자격 등 법적 관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해 역할 제약을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이 역시 동거 기간과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동거 기간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보호 자격 및 역할의 제약에 대한 경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한 결과에서와 달리, 결혼식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병원 방문이나 의료적 응급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연령대가 주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혼식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표 4-7〉 비혼 동거로 경험한 차별 및 불편 1: 공적 지원과 권한 부여에서의 차별

(단위: %, 명)

구분	정부 지원 혜택 제한			보호자 자격 및 역할 제약			전체 (명)	
	없음	있음	χ^2	없음	있음	χ^2		
전체	71.7	28.3		87.5	12.5		100.0 (336)	
혼인 신고 계획	있음	70.8	29.2	1.13	87.6	12.4	0.02	100.0 (306)
	없음	81.0	19.0		85.5	14.5		100.0 (30)

구분	정부 지원 혜택 제한			보호자 자격 및 역할 제약			전체 (명)	
	없음	있음	χ^2	없음	있음	χ^2		
동거 기간	1년 미만	84.4	15.6	42.19***	94.3	5.7	18.24***	100.0 (135)
	1~2년 미만	82.8	17.2		91.5	8.5		100.0 (75)
	2~5년 미만	55.9	44.1		79.9	20.1		100.0 (74)
	5년 이상	45.3	54.7		74.6	25.4		100.0 (55)
성별	남자	72.6	27.4	0.09	88.4	11.6	0.38	100.0 (159)
	여자	70.9	29.1		86.6	13.4		100.0 (177)
연령	19~29	75.2	24.8	11.36*	94.6	5.4	21.42***	100.0 (136)
	30~39	76.1	23.9		87.8	12.2		100.0 (135)
	40~49	55.0	45.0		71.5	28.5		100.0 (64)
결혼식 여부	했음	83.2	16.8	11.23**	90.7	9.3	1.61	100.0 (117)
	안했음	65.5	34.5		85.7	14.3		100.0 (219)

주: 1) '없음'은 '전혀 없었음'과 '없었음' 비율의 합이고, '있음'은 '있었음'과 '자주 있었음'에 대한 합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이어서 확인한 차별 및 불편 경험은 민간 서비스와 인식 측면에서의 경험이다. 가족 간 마일리지 통합, 요금제 결합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서비스 혜택에서의 차별 경험은 동거 기간과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앞서 공적 혜택과 자격 부여에서의 차별과 마찬가지로 동거 기간과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험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위의 부정적 시선에 대한 경험에서도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 시선 경험에서는 결혼식 여부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적 시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사실상 결혼식을 하면 주변의 인식은 부부 사이로 인지하기 때문에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는 것에서 결혼식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혼 동거 관계에서 경험한 차별과 불편의 차이가 동거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나타난 것은 결국 동거 생활의 시간이 길수록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된다. 정부 지원 혜택의 제한과 부정적 시선의 경험은 동거 기간과 연령에 더해 결혼식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인 특징이 있다.

〈표 4-8〉 비혼 동거로 경험한 차별 및 불편 2: 민간 서비스와 인식에서의 차별

(단위: %, 명)

구분	서비스 혜택 제한			부정적 시선			전체 (명)
	없음	있음	χ^2	없음	있음	χ^2	
전체	78.8	21.2		86.1	13.9		100.0 (336)
혼인 신고 계획	있음	78.0	1.22	85.9	14.1	0.01	100.0 (306)
	없음	86.8		87.9	12.1		100.0 (30)
동거 기간	1년 미만	86.6	18.89***	88.8	11.2	15.68**	100.0 (135)
	1~2년 미만	85.5		96.2	3.8		100.0 (75)
	2~5년 미만	68.7		77.5	22.5		100.0 (74)
	5년 이상	62.9		76.6	23.4		100.0 (55)
성별	남자	82.6	2.61	87.2	12.8	0.34	100.0 (159)
	여자	75.3		85.1	14.9		100.0 (177)
연령	19~29	85.4	13.53**	92.1	7.9	10.58**	100.0 (136)
	30~39	79.6		85.5	14.5		100.0 (135)
	40~49	62.8		74.5	25.5		100.0 (64)
결혼식 여부	함	82.6	1.76	91.4	8.6	4.42*	100.0 (117)
	안 함	76.7		83.3	16.7		100.0 (219)

주: 1) '없음'은 '전혀 없었음'과 '없었음' 비율의 합이고, '있음'은 '있었음'과 '자주 있었음'에 대한 합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제2절 비혼 동거와 출산

1. 출산 계획

현재 동거 중인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3%이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6.7%이다. 「가족과 출산조사」에서 나타난 동거 응답자는 대부분이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출산 계획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다. 그러나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집단의 응답만을 확인해 보면, 그 사례 수가 작기는 하지만 64.6%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출산 계획은 줄어들어 5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과반이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출산 계획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0대 집단은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가 70% 이상으로 높았다.

〈표 4-9〉 자녀 계획

(단위: %, 명)

구분		자녀 계획 있음	자녀 계획 없음	전체 (명)
전체		73.3	26.7	100.0 (336)
혼인신고 계획 $\chi^2=22.97^{***}$	있음	77.1	22.9	100.0 (306)
	없음/모름	35.4	64.6	100.0 (30)
동거 기간 $\chi^2=48.38^{***}$	1년 미만	86.9	13.1	100.0 (135)
	1~2년 미만	81.5	18.5	100.0 (75)
	2~5년 미만	64.2	35.8	100.0 (74)
	5년 이상	38.8	61.2	100.0 (55)
성별 $\chi^2=10.76^{**}$	남자	81.7	18.3	100.0 (159)
	여자	65.8	34.2	100.0 (177)
연령 $\chi^2=84.83^{***}$	19~29	87.3	12.7	100.0 (136)
	30~39	80.7	19.3	100.0 (135)
	40~49	27.8	72.2	100.0 (64)

구분		자녀 계획 있음	자녀 계획 없음	전체 (명)
결혼식 여부 $\chi^2=0.00$	함	73.3	26.7	100.0 (117)
	안 함	73.4	26.6	100.0 (219)

주: 1) *** $p<0.001$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2. 자녀에 대한 태도

위의 결과에서 동거 기간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계획이 없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계획과 성별을 중심으로 자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집단과 남성이 상대 집단보다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견해 이외에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의 견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혼인신고 계획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은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평균 점수로 보면,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집단은 3.06점으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쪽의 응답으로 나타났으나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집단은 평균 2.74점으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견해는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이다. 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남성은 평균 2.27점, 여성은 1.97점으로 여성의 경우는 2점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10〉 자녀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구분	혼인 신고 계획	평균 (S.D.)		t	성별	평균 (S.D.)		t
		있음	없음			남성	여성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있음	3.13	(0.66)	0.37	남성	3.15	(0.58)	0.52
	없음	3.09	(0.53)		여성	3.11	(0.70)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있음	3.31	(0.63)	1.73	남성	3.34	(0.57)	1.40
	없음	3.10	(0.65)		여성	3.25	(0.68)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있음	3.06	(0.78)	2.19*	남성	3.06	(0.79)	0.60
	없음	2.74	(0.70)		여성	3.01	(0.76)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있음	2.95	(0.75)	-0.25	남성	2.93	(0.70)	-0.56
	없음	2.99	(0.74)		여성	2.98	(0.79)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있음	2.34	(0.87)	-0.03	남성	2.42	(0.90)	1.49
	없음	2.35	(0.80)		여성	2.28	(0.83)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있음	2.10	(0.82)	-0.78	남성	2.27	(0.84)	3.40**
	없음	2.22	(0.74)		여성	1.97	(0.76)	

주: 1) **p<0.01, ***p<0.001

2) 평균은 전혀 동의 안 함 1점~매우 동의함 4점으로 하여 산출. 가중치 적용하였음.

3) 혼인신고 계획 있음 306명, 없음/모름 30명, 남성 159명, 여성 177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제3절 결혼·가족 및 성역할 관련 태도

이 절에서는 비혼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태도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앞의 절과 같이 비혼 동거 집단의 현재 경험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닌,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혼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 비교가 비혼 동거 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은 동일 사항에 대해 비혼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의 응답을 비교하고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분석한다.

1.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

결혼이나 가족과 관계된 생각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혼과 관련된 견해 중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에 대해서는 동거 집단이 혼인 집단보다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할 생각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견해에서는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견해에 대해 동거 집단은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17.9%(혼인 집단 5.9%)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 집단은 이 견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비율이 17.2%(동거 집단 8.3%)로 높게 나타나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견해에서도 동거 집단이 더 동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관련된 견해에서도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하는 것, 가족 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

는 것, 가족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혼인 집단이 동거 집단보다 강하게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와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혼인 집단이 동거 집단보다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족 중심이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1〉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t
결혼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동거 9.7 혼인 9.0	39.5 36.5	39.4 42.6	11.5 11.9	2.53 2.57	-1.06
	결혼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이다	동거 20.9 혼인 20.7	49.5 53.3	25.7 22.6	3.9 3.4	2.13 2.09	0.93
	결혼할 생각이 없이 동거만 하는 것도 괜찮다	동거 8.3 혼인 17.2	24.3 37.7	49.6 39.2	17.9 5.9	2.77 2.34	9.23***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괜찮다	동거 15.1 혼인 22.8	36.6 38.6	37.5 32.8	10.7 5.8	2.44 2.22	4.62***
가족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동거 8.6 혼인 5.2	34.1 31.5	44.4 48.8	13.0 14.5	2.62 2.73	-2.38*
	가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동거 12.3 혼인 8.3	38.5 33.0	36.1 47.7	13.1 11.0	2.50 2.61	-2.35*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동거 2.2 혼인 0.9	10.8 10.8	35.7 39.2	51.3 52.7	3.36 3.44	-1.79

주: 1) **p<0.01, ***p<0.001

2) 동거 336명, 혼인 7,322명

3) 평균은 전혀 동의 안 함 1점~매우 동의함 4점으로 하여 산출.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2. 결혼·자녀 필요성과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태도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혼인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각 응답에서 3% 포인트 내외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표 4-12〉 결혼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	χ^2
동거	8.2	41.0	45.6	4.5	0.7	5.71
혼인	10.8	44.1	41.4	3.1	0.7	

주: 1) ** $p < 0.01$, *** $p < 0.001$

2) 동거 336명, 혼인 7,322명

3)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혼인 집단과 동거 집단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혼의 필요성보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다.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는 응답은 동거 집단이 39.0%, 혼인 집단이 38.2%로 두 집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혼인 집단은 44.4%가 응답한 것에 반해, 동거 집단의 응답 비율은 22.3%로 두 집단 사이에 22.1% 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예상할 수 있듯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것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발견된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것에 대해 동거 집단은 15.1%가 응답하였고, 혼인 집단은 36.6%가 응답해 21.5%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표 4-13〉 자녀 필요성에 대한 생각

(단위: %, 점)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관 하다	모르겠다	χ^2
동거	22.3	39.0	36.6	2.0	128.27***
혼인	44.4	38.2	15.1	2.3	

주: 1) ** $p < 0.01$, *** $p < 0.001$
 2) 동거 336명, 혼인 7,322명
 3)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는 자녀가 주는 즐거움, 가족 내에서 자녀의 역할, 자녀가 나에게 주는 느낌, 자녀 존재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혼인한 집단은 자녀라는 존재가 주는 즐거움과 자녀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동거 집단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고 보는 입장도 혼인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측면으로 제시된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더 크게 생각하는 집단은 동거 집단이었다.

〈표 4-14〉 자녀의 의미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t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동거	0.6	13.5	58.4	27.4	3.13	-8.37***
	혼인	0.4	2.9	50.2	46.5	3.43	
자녀는 가족 간 유대와 애정을 강화한다	동거	1.1	6.4	54.7	37.8	3.29	-6.51***
	혼인	0.3	1.8	46.2	51.7	3.49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t
자녀는 내가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동거	3.8	16.8	51.6	27.7	3.03	-6.18 ***
	혼인	0.8	8.8	54.3	36.1	3.26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동거	4.8	15.8	58.4	21.0	2.96	5.52* **
	혼인	7.3	25.3	55.0	12.4	2.72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	동거	16.5	41.9	32.1	9.5	2.35	-0.60
	혼인	11.8	45.2	36.8	6.2	2.37	
자녀는 나의 노후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동거	22.0	50.2	22.1	5.7	2.11	1.70
	혼인	22.4	54.0	21.0	2.6	2.04	

주: 1) **p<0.01, ***p<0.001

2) 동거 336명, 혼인 7,322명

3) 평균은 전혀 동의 안 함 1점~매우 동의함 4점으로 하여 산출.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3. 가족 내 성역할 관련 태도 및 가사 분담

가족 내 성역할 태도 중 동거하는 집단과 혼인한 집단 사이의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 내 성역할 관련 태도 여섯 개 문항 모두 동거 집단이 혼인 집단보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역할을 선호하는 경향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동거 집단 1.76점, 혼인 집단 2.03점)와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동거 집단 2.36점, 혼인 집단 2.52점)에 대한 태도이다. 즉 가족 내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남성으로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이 차이가 나타났다.

〈표 4-15〉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별로	약간	매우	평균	t
		동의	동의	동의	동의		
		안 함	안 함	함	함		
돈 버는 일과 집안일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동거	1.5	3.0	25.5	70.0	3.64	1.62
	혼인	0.8	3.4	32.2	63.5	3.59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동거	46.5	35.4	13.5	4.6	1.76	-5.59*
	혼인	31.1	39.5	24.6	4.8	2.03	**
가정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동거	29.2	35.1	28.5	7.3	2.14	-1.08
	혼인	23.0	40.4	30.9	5.7	2.19	
남성이라면 혼자 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동거	24.9	28.9	31.7	14.5	2.36	-2.90*
	혼인	16.0	31.1	37.4	15.4	2.52	*
결혼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여성의 삶에 더 좋다	동거	4.1	8.7	50.0	37.3	3.20	0.12
	혼인	1.2	10.9	54.5	33.3	3.20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밖에서 돈을 버는 일보다 보람있는 일이다	동거	7.4	30.4	45.8	16.4	2.71	-1.93
	혼인	3.9	29.0	50.0	17.0	2.80	

주: 1) **p<0.01, ***p<0.001

2) 동거 336명, 혼인 7,322명

3) 평균은 전혀 동의 안 함 1점~매우 동의함 4점으로 하여 산출.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부모 역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혼인한 집단보다 동거 집단이 양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경향을 보였다. ‘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동거 집단 3.50점, 혼인 집단 3.39점),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동거 집단 2.39점, 혼인 집단 2.64점), ‘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동거 집단 2.96점, 혼인 집단 3.09점)는 견해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견해에서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에 대해서는 동거 집단 2.68점과 혼인 집단 2.70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16〉 양육자의 성별 역할에 대한 태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동의 안 함	별로 동의 안 함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t
엄마와 아빠는 같은 비중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동거	0.8	6.9	34.0	58.3	3.50	2.89**
	혼인	0.5	9.0	41.3	49.1	3.39	
아이는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운다	동거	19.1	33.2	37.3	10.4	2.39	-4.98***
	혼인	10.2	29.6	46.0	14.2	2.64	
어린 자녀를 둔 남성은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동거	3.1	19.7	54.8	22.3	2.96	-3.07**
	혼인	2.0	15.7	54.1	28.2	3.09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는 전업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동거	8.9	30.2	44.8	16.1	2.68	-0.37
	혼인	6.2	32.7	46.4	14.7	2.70	

주: 1) **p<0.01, ***p<0.001
 2) 동거 336명, 혼인 7,322명
 3) 평균은 전혀 동의 안 함 1점~매우 동의함 4점으로 하여 산출.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지금까지는 가족 내의 성 역할이나 양육자의 성별 역할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가족 내의 가사 분담 비율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통해 역할 분담과 관계의 평등한 정도를 살펴보았다. 가사뿐 아니라 육아나 양육에서 실제 역할 분담도 중요한 지표이지만, 동거 커플 중에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 커플 사이의 가사 분담으로만 살펴보았다.

응답자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가사 참여가 0%이고 배우자/애인·파트너가 100%라면 1점, 반대로 응답자가 100%이고 상대가 0%라면 11점이기 때문에 6점이 응답자와 상대방의 가사 분담 비율이 50:50인 것이다. 따

라서 6점에 가까울수록 가사 분담을 커플이 동등하게 나누어 하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동거 집단이 6점에 더 가까워 혼인 집단보다 더 동등한 가사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집단마다 응답한 성별을 기준으로 평균을 확인해 보면, 혼인 집단에서 성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동거 집단의 남성 평균은 5.05 점, 여성 평균은 7.19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6점에서 1점 내외 벗어나 있다. 그러나 혼인 집단에서는 남성 평균이 3.98점, 여성은 8.39점으로 6점을 기준으로 2점 이상씩 벗어나 있다. 두 집단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점수가 높아 남성보다 여성이 가사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표 4-17〉 배우자/애인·파트너와 가사 분담 비율

(단위: %, 점)

구분		평균	t	구분	평균	t
전체	동거(n=317)	6.18(2.18)	-2.04*	남성(n=148)	5.05(1.81)	-9.96***
				여성(n=168)	7.19(1.99)	
	혼인(n=7,179)	6.44(2.86)		남성(n=3,150)	3.98(1.89)	-99.35***
				여성(n=4,029)	8.37(1.83)	

주: 1) **p<0.01, ***p<0.001

2) 평균은 응답자 0%, 배우자/애인·파트너 100%인 경우 1점~응답자 100%, 배우자/애인·파트너 0%인 경우 11점으로 하여 산출. 평균 6점이 응답자와 배우자/애인·파트너의 가사 분담 비율이 50:50임.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이러한 가사 분담의 결과는 만족 정도로 나타났다. 만족에 대한 총 4점 중 동거 집단은 2.98점이었고, 혼인 집단은 2.79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가사 분담에 만족한다는 비율과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의 합이 동거 집단은 90.6%이고 혼인 집단은 75.4%에 머물렀다.

〈표 4-18〉 배우자/애인·파트너와 가사 분담 만족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평균	t
동거(n=317)	2.1	7.3	81.0	9.6	2.98(0.50)	6.62***
혼인(n=7,179)	3.9	20.8	68.2	7.2	2.79(0.62)	

주: 1) **p<0.01, ***p<0.001
 2)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매우 만족함 4점으로 하여 산출.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예상할 수 있듯이, 가사 분담 만족 정도를 각 집단마다 성별에 따라서 확인해 보면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 모두 남성의 만족 점수가 여성보다 높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동거 집단보다 혼인 집단에서 남녀 사이 만족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동거 집단은 총 4점의 만족 점수 중 남성이 3.06점, 여성은 2.91점으로 나타났으나, 혼인 집단은 남성이 2.98점, 여성이 2.63점으로 차이가 더 크고 여성의 점수가 특히 낮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19〉 성별에 따른 배우자/애인·파트너와 가사 분담 만족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만족함	매우 만족함	평균	t
동거	남성(n=148)	0.7	1.6	89.2	8.6	2.23**
	여성(n=168)	3.4	12.4	73.7	10.5	
혼인	남성(n=3,150)	0.8	9.7	79.8	9.7	25.74***
	여성(n=4,029)	6.3	29.4	59.1	5.2	

주: 1) **p<0.01, ***p<0.001
 2) 평균은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매우 만족함 4점으로 하여 산출.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제4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혼 동거 생활의 경험과 출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결혼·가족 및 성역할 태도 등에 대해 비혼 동거 집단의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비혼 동거 집단은 그 내부에서 혼인신고 계획의 유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며, 이 혼인신고 계획을 고민하는 집중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도 그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이나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을 느끼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한 경우는 정부 지원 혜택의 제한을 더 경험하기도 하며, 동거 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에서 여러 불편과 차별을 인식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보호자 자격이 없어서 불편을 경험하는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럽게 동거 기간이 긴 집단에서도 보호자 자격에 대한 불편이 더 높은 것으로 연동되었다. 의료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더 자주 경험하는 연령대에서 이로 인한 불편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 조사의 대상이 49세 이하인 것을 고려한다면, 더 높은 연령층에서는 더 큰 욕구가 있을 것을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함께 살기 시작할 때의 기대에 대한 부분에서는 혼인신고 계획 유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비혼 동거 집단의 자녀 가질 기대는 매우 낮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자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집단은 자녀 계획이 있는 비율이 높고 반대의 집단은 자녀 계획이 없는 비율이 높아 비혼 동거 집단 내에서 혼인신고 계획 유무는 자녀 계획 유무와 방향을 같이하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비혼 동거 집단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혼인신고 계획이나 동거 기간 등 집단 내부의 특성에 따른 특징을 구분해 냈다면,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비혼 동거 집단의 특성은 혼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혼 동거와 혼인 집단 사이에 결혼 필요성은 큰 차이가 없지만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혼 동거 집단에서 조금 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고 실천의 측면에서도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제5장

비혼 동거 집단별 경험

- 제1절 비혼 동거 경험 FGI 개요
- 제2절 현재 비혼 동거 경험
- 제3절 비혼 동거 경험 후 혼인 이행 경험
- 제4절 비혼 동거 경험 후 이별 경험
- 제5절 이혼 후 비혼 동거 경험
- 제6절 소결



제 5 장 비혼 동거 집단별 경험

제1절 비혼 동거 경험 FGI 개요

이 연구에서는 현재 비혼 동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결혼으로 이행할 결혼 전 단계로 비혼 동거를 경험하는 경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그 이외의 비혼 동거에 관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 보완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를 직접 경험한 사례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2차 데이터 분석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의 특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FGI에서는 결혼을 확실히 계획한 경우보다는 상대와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갖지 않고 비혼 동거 중인 사례에 더 집중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비혼 동거 경험 FGI 집단 구분 및 참여자

비혼 동거 경험은 현재의 경험이거나 과거 경험일 수 있다. 따라서 비혼 동거 경험 FGI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나 현재 비혼 동거를 경험한 사례를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동거 기간이 짧은 경우는 충분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험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집단마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으며, 결혼을 고려할 만한 연령대에 결혼 대신 비혼 동거를 하는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0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건으로 FGI 참여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한 부분도 있다.

FGI 집단은 크게 네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비혼 동거 중인 집단 외에 과거에 비혼 동거를 경험한 집단으로는 비혼 동거를 경험한 후 동일 상대와 혼인으로 이행한 집단과 비혼 동거를 경험한 후 이별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더해 혼인 종료 후 현재 비혼 동거 중인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은 비혼 동거 선택의 이유나 욕구가 앞의 세 집단과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해 현재 동거 중인 집단이지만 첫 번째 집단과 구분해서 집단을 구성하였다. 혼인 종료는 이별이나 사별을 통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의 FGI 대상자 모집에서는 이혼 후 동거 중인 사례로 통일하였다. 전체 참여자를 20여 명을 목표로 하였고, 현재 비혼 동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대한 대상자를 10여 명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외의 집단에서 구성하였다.

〈표 5-1〉 비혼 동거 경험 FGI 집단 구분

구분	집단	비혼 동거 시점	현재 파트너십 상태
A	현재 비혼 동거 중	현재	동거
B	비혼 동거 경험 후 혼인 이행	과거	기혼
C	비혼 동거 경험 후 이별	과거	미혼
D	이혼 후 비혼 동거 중	현재	동거

자료: 필자 작성.

2. 비혼 동거 경험 FGI 운영 및 질문 내용

가. 비혼 동거 경험 FGI 운영

계획한 FGI 진행을 위해 앞서 언급한 조건의 대상자를 확보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좌담회 홍보 커뮤니티와 해당 연령대에서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를 통해 표적집단면접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FGI 참여자 확정을 위해 커뮤니티를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과 사전 전화 면담을 통해 대상자가 조사의 섭외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성별, 연령, 직종, 거주지 등의 기본 정보에 대해 파악하였고, 현재 동거 여부, 혼인 상태, 동거 횟수, 동거 기간 등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참여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나 단순히 혼인신고 절차만 미루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상자 21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표 5-2〉 비혼 동거 경험 FGI 참여자

집단	특성	성별	연령
A 11명 (남 4명, 여 7명)	현재 비혼 동거 중	남	38
		남	42
		남	32
		남	31
		여	34
		여	34
		여	34
		여	35
		여	35
		여	31
		여	29

집단	특성	성별	연령
B 4명 (남 2명, 여 2명)	과거 비혼 동거 경험 후 동거 상대와 현재 결혼	남	39
		남	37
		여	35
		여	43
C 4명 (남 2명, 여 2명)	과거 비혼 동거 경험 후 현재 이별	여	39
		여	32
		남	38
		남	40
D 3명 (남 1명, 여 2명)	이혼 후 현재 비혼 동거	여	44
		여	54
		남	48

자료: 필자 작성.

표적집단면접 진행은 A, B, C, D 집단별로 각각 진행하였는데 A집단은 총 11명으로 표적집단면접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3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총 6번의 표적집단면접이 진행되었다.

표적집단면접은 참여자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어서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에 진행되었다. 장소는 최대한 독립적이고 편안하게 면접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였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표적집단면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면접 대상자가 응답을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생성해 면접일 전에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거의 계기, 동거의 장단점,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 방식, 동거 사실 공개 여부 및 범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생각, 동거 관련 제도 활용 의사 등에 대해 참여자로부터 간략한 사전 응답을 확보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그룹마다 약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시작하기 전 먼저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조사 방법과 소요 시간, 조사의 개요 및 내용에 대해 상세히 해설하였으며, 조사 과정에

서 취득한 정보의 보관 및 폐기 기한과 방법, 활용 용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에는 답변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하고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린 후에 조사 참여 동의를 확인하였다. 더불어 추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나. 비혼 동거 경험 FGI 주요 질문 내용

표적집단면접은 기존 통계 및 양적 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비혼 동거 인구에 대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참여자 조건에 따른 비혼 동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맞게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혼 동거 시기 및 기간, 비혼 동거 선택 사유, 비혼 동거 장단점, 주거비 및 생활비 공유 현황, 비혼 동거 공개 여부 및 반응, 평소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생각,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비혼 동거 커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동거 관계 등록 제도 활용 의향 등에 대해 물었다. 비혼 동거 후 동거 대상자와 현재 결혼을 한 집단에게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동거 경험이 결혼 의향에 미친 영향, 동거 관계 등록 제도 존재 시 혼인신고를 했을지 여부 등을 추가로 파악하였다. 비혼 동거 후 그 동거 대상자와 이별을 한 집단에게는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이별 과정에 미친 영향, 앞으로의 동거 및 결혼 의향, 과거 동거 경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혼 또는 사별 후 비혼 동거 중인 집단에게는 앞선 결혼 생활 기간 및 자녀 여부, 결혼과 동거의 차이, 현재 동거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20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5-3〉 비혼 동거 경험 FGI 질문 영역 및 내용

영역	질문 내용
비혼 동거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경험에 대한 기본 정보 - 동거 선택 이유와 과정 - 동거의 장단점 - 동거 시 경험한 정책적 필요성 - 주거비, 생활비 공유 현황 - 동거 시 상호 계약 관련 - 동거 공개 범위 및 주변인 반응
결혼 과정,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생각 - 동거가 연애에 가까운지, 결혼에 가까운지 의견 - 서로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 - 동거 경험이 결혼 생각에 미친 영향 - 출산에 대한 생각
사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회가 가진 비혼 동거 및 출산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이별 혹은 결혼 고민 경험 - 한국 사회 인식 개선 필요 영역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 관계 등록 제도 사용 의향 - 동거 관계 인정 권한 부여에 대한 의견 - 동거 커플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 어느 정도 범위여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 - 제도 사용 시 우려되는 부분
주거 지원 제도 관련 경험과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지원 시도 여부 - 주거 지원으로 인한 혼인 시도 혹은 동거 유지 경험 - 신생아 특공에 대한 의견
비혼 동거 경험 후 혼인 이행 집단 추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결심 이유 - 결혼 생활에 대한 정보 - 확대된 가족 구조로 인한 갈등 여부
비혼 동거 경험 후 이별 집단 추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별 과정에 대한 정보 - 향후 동거 및 결혼 의향 - 향후 동거 경험 공개 의향
이혼 후 비혼 동거 집단 추가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과정에 대한 정보 - 이혼 후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자료: 필자 작성.

제2절 현재 비혼 동거 경험

첫 번째 집단은 현재 비혼 동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총 11명 중 남성 4명, 여성 7명이었다. 20대 1명, 30대 9명, 40대 1명으로 대부분 30대였다. 동거 기간은 짧게는 7개월부터 길게는 11년까지 다양했으며, 3~5년간 동거 중인 남녀가 대부분이었다.

〈표 5-4〉 현재 비혼 동거 경험에 대한 FGI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직종	동거 기간
A1	남	38	사무 종사자	3년
A2	남	42	사무 종사자	3년
A3	남	32	사무 종사자	4년
A4	남	31	서비스 종사자	8개월
A5	여	34	사무 종사자	2년 6개월
A6	여	34	사무 종사자	4년
A7	여	34	사무 종사자	1년
A8	여	35	서비스 종사자	3년
A9	여	35	사무 종사자	3년
A10	여	31	사무 종사자	9년
A11	여	29	프리랜서	1년 6개월

자료: 필자 작성.

가. 비혼 동거 이유 및 계기

현재 비혼 동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동거를 미리 계획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조건이 부합하여 연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직장 과 보다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상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마침 집을 계약할 시점에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의 이유로 함께 주거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원가정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혹은 직장생활로부터 도피하고자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경제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 모두에서 편리하다는 것이 비혼 동거의 큰 이유가 되었다.

“그분도 이제 집도 멀고 저도 좀 집이 살짝 멀긴 했는데 그분보다는 제가 많이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때마침 전세 계약도 끝나가고, 저는 이제 LH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래도 LH 중에서 36평이라고 방 하나 더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당첨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집에서 출퇴근할래?’라고 하면서 그냥 우연치 않게, 계획은 아니었는데 같이 살게 됐어요.”(A4, 남)

“저는 일단은 한번 좀 같이 살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시작을 좀 하게 되었고, 그리고 4년 전 동거 시작할 때 코로나가 그때 시작됐어요.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아무래도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몇 번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덜 피로하고 시간도 좀 단축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A6, 여)

나. 비혼 동거의 장단점

현재 동거 중인 남녀는 모두 법적·도의적 책임감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부담 해소, 정서적 안정감 등을 비혼 동거의 큰 장점이라 이야기하였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과, 상대방의 가족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공평한 관계로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안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일부는 이별 시 이혼에 비해 절차상 복잡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결혼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어떠한 책임감, 도의적인 책임감 그런 게 조금 덜하다 보니까 부담감은 사실상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남자가 이제 좀 가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책임감과 부담감이 조금은 좀 덜하다. ... 원래 결혼하면 출산하고 이제 육아까지 병행을 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식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출산하고 육아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점.” (A1, 남)

“저는 혼자 살았는데 금액적으로 남자친구가 관리비나 뭐 생활비 이런 거를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니까 그런 건 또 좀 괜찮고 또 혼자서는 좀 무서운 적도 있었거든요. 뭐 새벽에 막 불난 적도 있고. 그런 건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고.” (A9, 여)

한편 비혼 동거의 단점으로는 주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동거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점이 있었다. 동거는 당연히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주는 주변인들과, 남녀 개인에게 부족함이 있어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불편을 큰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점을 단점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신혼 부부와 동일한 정도의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단점은 비혼 동거 커플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현재 비혼 동거 중인 남녀는 ‘동거 커플’ 그 자체로서 인정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고 싶어 했다. 나아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제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동일한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상대방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됨으로써 회사와 같은 공적 기관에 동거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하여 동거를 위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집주인이랑) 마주칠 때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 날짜는 잡았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결혼이니까 그냥 오며 가며 마주치는 건데도 도망가게 되고, 똑같은 소리 또 듣기 싫으니까.”
(A5, 여)

“저는 그분이 일을 그만두시고 다시 새로 직장을 구할 때 말씀하실 때 뭐 등본 같은 걸 떼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세대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은 떼면 제가 동거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제 본가로 제가 잠깐 전입신고를 넣었다가 그분을 세대주로 넣고 등본을 떼고, 그리

고 다시 또 제가 세대주로 다시 들어오고 또 그런 번거로움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등본 같은 걸 낼 때 이제 좀 굳이 이렇게 동거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 싶기는 합니다.” (A3, 남)

“같이 사는 건 같은데 신혼부부만 특공 혜택을 주는 게 동거 단점 같아요. 신혼부부 특공 말고 동거부부 특공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청약할 때.” (A6, 여)

다. 동거 공개 범위 및 가족 만남 경험

비혼 동거 중인 사실에 대해 일부는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친한 지인에 제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동거 사실을 숨기고자 이웃 주민들에게 상대방을 소개할 때 ‘배우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녀는 친한 지인들에게는 동거 사실을 알린 상태였으며, 직계 가족에게까지는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동거 중인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직장에는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대주명 변경을 위해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할 정도로 직장에 동거 사실을 숨기는 남녀도 일부 있었다. 직장에 동거 사실이 알려질 경우 받게 될 과한 관심과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나아가 동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저는 좀 특이하게 양가 부모님 다 모르시고. 심지어는 제 친한 친구, 그리고 친한 직장 동료들도 몰라요.” (A1, 남)

“제가 이제 공동주택을 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을 주민, 옆에 이제 이웃들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

뒤 하는 사이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저는 그냥 주민, 옆에 주민들한테는 그냥 아내라고 얘기를 하고요.” (A2, 남)

“저도 (회사에 동거 사실을) 말 안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말끝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 날 잡았냐. 너무 진절머리나고 너무너무 싫어서 동거한다고 말하면 이제 언제 결혼하냐고 맨날 물어볼 것 같아서. 이제 더 난리가 나 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말하기 싫어요.” (A5, 여)

양가 직계 가족에게 동거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방의 부모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라 인식되는 결혼과 달리 동거 관계에서는 상대방 가족을 반드시 만나거나 경조사를 챙겨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점을 결혼과 동거의 큰 차이점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기에 동거 중인 여성의 경우 상대방의 부모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만남 경험 자체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등의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모가 결혼 및 출산을 지속적으로 재촉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며느리인 것처럼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만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 또한 스스로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상대방 부모와의 만남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과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상대방 부모의 만남 경험은 결혼 의향 자체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반대로 동거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 가족과의 만남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상대와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쪽 부모님하고는 아직은 제가 못 만났어요. 여자친구 쪽은 우리 쪽을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만났는데 아직 제가, 그러니까 저 만나자고 계속 하

시는데 제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남자가, 그러니까 약간 남자가 약간 좀 위축이 된다고 해야 되나?” (A2, 남)

“일단은 성향 자체가 되게 오픈 마인드서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뭐 간섭이나 언제 할 거니 이런 재촉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거를 하고 나서 그런 뭐 시대 쪽의 성향이나 그리고 남편의 성향이나 이게 더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좀 하겠다라는 좀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A6, 여)

“(상대방 부모 댁에) 갔는데 뭐 잘 왔다 싶으셨던지 엄청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학을 떼고, 제가 결혼해서 며느리인 것도 아니고 한데 이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엄연히 손님이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냥 같이 사는 애고 뭐 왔으니까 설거지를 시키시는. 뭐 그래서 또 그 이후로 안 가요.” (A10, 여)

라. 가족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현재 비혼 동거 중인 집단은 대부분 상대방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둘의 관계가 연애보다는 결혼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만 가족이라고 느낄 뿐,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가족이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 존재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몇몇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연애도 결혼도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관계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는데, 파트너십 관계 혹은 동반자적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반면 연애 및 동거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았던 남성 중 한 명은 동거가 결혼에 비해 가볍게 느껴져 좋다고 표현하였으며, 결혼이 아닌 연애에 가깝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애인도 아니야. 그리고 또 부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요. 교집합. 그러니까 약간 다 이렇게 해당되는, 섞여 있는 약간 그런.” (A1, 남)

“결혼을 해야 가족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서로가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A3, 남)

“우리끼리는 가족이라고 느끼지만 우리끼리만 가족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A5, 여)

“지금은 그중에 중간도 아닌, 그냥 아예 딱 카테고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파트너십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가족의 바운더리가 지금 현재는 법적인 바운더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못 담그는 파트너십.” (A7, 여)

동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남녀도 있었다. 주로 남성의 경우에는 동거를 통해 결혼 의향이 커진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은 동거를 통해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오히려 못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남녀 모두 결혼 계획을 가진 채로 동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성들은 동거 기간을 거치면서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 준비가 점차 되어가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오히려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상대방 가족과의 부정적인 만남을 통해 결혼을 더욱 더 꺼려하게 되었다. 남성들은 동거 기간을 통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여성들은 동거 기간을 통해 상대방 및 상대방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하고 있었다.

“저는 결혼에 대한, 즉 가정에 대한 이런 무게감, 책임감, 그리고 출산, 육아에 대한 약간 그런 회의감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좀 라이트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 뭐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 이제는 내가 조금 책임을 질 수 있겠구나.” (A1, 남)

“남자 쪽 집안의 분위기, 뭐 그런 경제적인 걸 알게 되고 나서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때 좀 느꼈어요. 저는 남자친구랑 둘이서는 되게 잘 맞고 오히려 정말 둘이서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장도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잘 맞는데,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동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결혼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A5, 여)

“살아봐야 나와요, 찌이. 밖에서 만나고 헤어지면 누가 어떻게 설거지를 안 할 줄 알았어요? 누가 24시간 중에 20시간 누워 있을 줄 알았어요? 밖에서 만나면 모르죠. 몰랐어요. (연애와) 완전 다르죠. … (혼인신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완전) 굳혔죠.” (A8, 여)

“결혼한 것처럼 생활하니까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결혼의 필요성이 딱히 희미해졌어요. 사람들은 결혼해서 신혼집 생활 하고 이런 게 결혼 생활을 만끽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미 결혼한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뚜렷하게 계기가 없어요.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웃기고. 식을 또 올리기는 뭐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피곤한데 갑자기 결혼식 갑자기 하자 해서 준비하는 것도 웃기고. 딱히 그 계기가 없다.” (A10, 여)

“너무 주변에서, 특히 부모님이 계속 뭐라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결혼) 안 해야지. 안 하고 더 잘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약간 이런 것도 있고.” (A11, 여)

한편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혼 출산을 하겠다는 타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자신들은 비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일부 참여자는 나아가 동거 커플 사이에서 출산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서 출산을 하면 그 자녀가 받게 될 사회적인 시선과, 받지 못하게 될 경제적 혜택 등이 비혼 출산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한 여성 사례는 이혼할 경우를 생각하면, 이혼보다는 미혼모가 더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산 자체에 대한 의향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가 높지 않았으며, 동거 경험이 이러한 비출산 생각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거나, 오히려 동거를 통해 현실적으로 출산은 어렵겠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동거 이전에는 출산 의향이 아예 없었으나, 동거 경험을 통해 최근에는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이 사례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인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요? ... 그리고 이제 출산까지 계획을 하면 솔직히 동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이제는 결혼으로 정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A1, 남)

“동거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더 객관적으로 아, 이거 지금 불가능하다. 우리 둘이 지금 사실 더 만족하면서 쓸 거 다 하면서 잘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아직 공동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털어버리면 이전 재앙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A2, 남)

“저는 개인적 선택은 매우 존중하지만 그 아이한테 약간 좀 정서적인 안정감 이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커가면서 질타 아닌 질

타를 받잖아요. 저는 되게 반대해요. ... 동거하면서 애기가 있으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동거 중인 상태에서 출산은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A6, 여)

“한다면 저는 비혼 출산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혜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될지. 애 때문에 많이 싸우고 헤어진 경우도 많아가지고. 차라리 미혼모가 낫지 이혼보다는.” (A11, 여)

마.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인식

현재 비혼 동거 중인 남녀는 한국 사회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최근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비혼 동거보다는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라고 말하였다. 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혼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존재함을 많이 체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부담을 보다 많이 느끼는 것은 남성들이었으며, 동거를 향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식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이진(결혼) 좀 결정을 빨리해야 되겠다.” (A1, 남)

“뭘 쓰레기 버리러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좀 마주치니까 ‘아니, 왜 젊은 애들이 왜 저러고 있어?’ 뭘 이런, 뭘 이런 얘기들 또 들리면 사실 이제 아니, 사정도 모르면서, 남 속사정도 모르면서. 누구는 뭘 결혼 안 하고 싶

나? 이제 그런 마음이.” (A2, 남)

“인식은 딱 하나의 동거만 환영을 받아요. 결혼식 전에 주택 때문에 대출 때문에 미리 들어가는 커플. 혼인신고 딱 하고 딱 들어가서 딱 그 얘기 외에는 (부정적인). … 보통 다들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라고 하면 다들 왜? 라고 안 묻잖아요. 그런데 동거는 항상 왜가 들어가더라고요. ‘왜 갑자기? 뭐 그 나이에 왜 결혼 아니라 왜 갑자기? 중간 단계는 빼도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A7, 여)

“저의 직장 상사가 (제가) 남자친구랑 오래 사귀고 자주 만나는 걸 아니까 동거냐고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하니깐 ‘그래, 하지 마. 여자한테 동거는 되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9, 여)

“여자가 동거하고 하면 뭐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남자가 뭐 동거했다 헤어졌다 하면 그래 생각하는데 여자가 하면 이혼너지 딱 이런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A10, 여)

바.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대한 현재 비혼 동거 중인 남녀의 생각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거 관계 등록 제도의 적정 범위에 대한 의견은 갈렸다. 대부분 동거 관계를 인정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이용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에도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 동거라는 문화가 좀 더 안정이 돼서 결혼이라는 그 무거운 게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도 저는 이용할 것 같아요.” (A5, 여)

“좋은 것 같아요. 뭐 프랑스 이런 데만 보더라도 동거, 자녀가 막 마흔인데 아, 우리는 아직도 동거 중이야.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멋있고.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 제도를 해주면 오히려 더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 세상이 바뀌었는데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동거하는 가구도 많아지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도 같이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A8, 여)

그러나 주거비 지원, 세금 감면 등과 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비혼 동거 커플에게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동일한 정도의 경제적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버금갈 만큼의 큰 혜택을 주기보다는 중간 단계의 혜택만을 제공하거나, 동거 관계 등록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을 주는 등, 혼인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다. 혜택을 주는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는데, 동거 관계를 지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확인 작업을 통해 반드시 혜택과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수술 동의서 뭐 그런 간략하게 행정적인 절차에서만 조금 필요한 거지 혜택까지 준다면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탈세를 목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한 LH 때문에 이제 같이 실제로, 이제 거주를 같이 안 하는데 그냥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를 혜택을 주면 양날의 검이라서 혜택보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A1, 남)

“금융까지는 너무 많은 혜택이라고 생각은 해요. … 책임이, 그러니까 동거라는 게 책임이 가벼운 부분도 있는데, 그게 똑같이 돼버리면…” (A9, 여)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보다는 뭐라도 계속 줌 제도를 만들고 시범을 해보고 해서 뭐가 맞는지 줌 과정을 좀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잘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작은 줌 되게 좀 라이트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A3, 남)

한편 동거 커플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준다면 오히려 결혼율이 증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혼 결정에 있어 주거 문제가 핵심인데, 신혼부부처럼 동거 커플에게도 주거적 혜택을 준다면 결혼으로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을 주지 않게 된다면, 결혼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사회가 또 어떻게 굉장히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에 대한 중간 단계, 제도적으로 그런 약자에 있는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하고 결혼 제도를 좀 더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 결혼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면 아, 이런 정도 단계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 (A2, 남)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결혼까지 확신이 없는데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

을 거 아니에요, 다른 케이스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좀 배제하면 좀 이렇게 동거인에 대한 정책이라는 말이 조금 무색할 것 같아요.” (A4, 남)

“신혼부부가 받는 혜택이랑 차별점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그 제도를 활용할 것 같고, 뭔가 또 거기서 약간 차등점이 분명히 있으면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A6, 여)

참여자 중 일부는 제도적으로 묶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동거 등록과 혜택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혼인신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굳이 동거를 등록하여 사회적 낙인을 받을 바엔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는 경제적 혜택을 주지 않고 관계 등록만 할 수 있는 제도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는 비혼 동거 관계 인정만으로는 그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크게 없으며, 동거 관계를 밝히는 것을 감수할 만큼의 경제적 혜택이 주어져야만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일단 연애 목적으로 동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는 부담이 될까 봐 이런 제도나 이런 어디 기입하고 이런 거는 선뜻 안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혜택이 있다고 하면 또 여자친구랑 얘기를 좀 해보고, 이 혜택이 우리가 했을 때 득이 많으면 한번.” (A4, 남)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게 법적인 좀 제도를 받으려면 사실 이게 혼인신고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A6, 여)

“이 서류를 쓴다는 거 자체가 뭔가 약속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싫거든요. 결혼을 약속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조금 싫은 것 같아요.” (A9, 여)

“혜택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등록하는 거는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A11, 여)

이외에도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대해, 이성 커플보다는 오히려 동성 커플에게 더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성 커플은 관계 등록과 경제적 혜택이 정말 필요한 경우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에게만 한정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성 커플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혼과 비슷한 거라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이혼도 뭐 복잡하긴 해도 뭐 그렇게까지 막 복잡 하지는 않잖아요.” (A9, 여)

“이거 자체가 남녀 커플한테는 크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잘 이용할 것 같지 않고, 남녀 커플이 일단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동성 커플이라든지, 동성 커플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다 개인 사정으로 뭐 가족이 없거나 해서 뭐 다른 마음 잘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이제 가족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진짜 뭐 법적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 단순히 이제 남녀 동거 커플에게 혜택을 주겠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 진짜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A10, 여)

제3절 비혼 동거 경험 후 혼인 이행 경험

두 번째 집단은 과거 비혼 동거를 경험한 집단으로 현재는 과거 동거 상대와 결혼한 집단이다. 총 4명 중 남자 2명, 여자 2명, 연령대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거 기간은 1년 3개월부터 3년, 6년까지로 다양하다.

〈표 5-5〉 비혼 동거 후 혼인 이행에 대한 FGI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직종	동거 기간
B1	남	39	사무 종사자	6년
B2	남	37	사무 종사자	3년
B3	여	35	프리랜서	3년
B4	여	43	전업주부	1년 3개월

자료: 필자 작성.

가. 비혼 동거 이유 및 계기

현재 동거 후 혼인을 한 집단의 경우에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기보다는 연애 과정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고, 동거의 연장선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 이후 헤어짐이 아쉬워 상대방의 집에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거나, 직장과 본가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중간 지점의 상대 집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 데이트 비용의 문제로 동거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동거를 시작한 남녀도 있었지만, 결혼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의 여건상 자연스럽게 시작한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였다.

“10월 달에 연애 시작하고 11월 달에 바로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집에 가기 싫고 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 집에서 살게 됐고.” (B1, 남)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결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오늘부터 시작하자.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좋아서 하게 된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해서 그냥 하게 됐는데 이제 주말에 하다가 동거로 이어지고, 이렇게 쪽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B2, 남)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출퇴근이 왕복 4시간 막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남자친구 집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금요일 날 조금씩 있다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퇴근하고 야근하는 날은 여기서 자고 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물 흐르듯이 제 짐이 점점 많아지고, 어느 순간 본가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동거의 개념으로 살게 됐죠.” (B3, 여)

“결혼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데이트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았고. 사 먹고 숙박비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살아보면 어떨까. 비용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아직 결혼할 능력까지는 아직 그때는 안 돼서 일단 그냥 살아보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B4, 여)

나. 비혼 동거의 장단점

현재 동거 후 혼인을 한 남녀는 정서적 안정감, 비용과 시간 절감 등을 비혼 동거의 장점으로 꼽았다. 동거 후 혼인이라는 이들 그룹의 특성상,

동거를 통해 결혼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은 경우도 있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동거를 통해 서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을 통해 결혼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전등이 나간다가나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공포심이 좀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심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좀 그런 공포심이 적고. 밖에서 누가 쿵쿵쿵쿵거리려도 혼자 있을 때는 무서운데 같이 있으면 덜 무섭고.” (B1, 남)

“저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회사를 옮기고 그 안에서 업무가 변경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는데. … 그렇게 본가에서 지내다가 딱 제 남편을 만나고 그런 얘기도 서슴없이 얘기가 되고. 저 또한 동거를 통해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 거면 부모님도 다 아시고 그다음 스텝, 집을 안정적으로 구하자. 이 버전으로 가 가지고. 결혼을 자연스럽게 꺼냈던 것 같아요.” (B3, 여)

“만날 때 시간 절감이라든가. 비용이나 시간 뭐 그런.” (B4, 여)

한편 비혼 동거의 단점으로는 주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동거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점과 동거가 당연히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인식이 존재했다. 동거를 금기시하는 듯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회사에 동거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동거 생활에 참견을 시작하는 주변 어른들의 태도가 힘들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단점들은 동거가 사회적으로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파생되었다며, 동거든 결혼이든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가족 형태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동거의 단점.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적인 거. 저는 회사에서 그 얘기를 못 했었어요. 뭐라고 하나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어요. 같이 동료인데 저 보다 선배죠. 그러면 야, 너 동거할 거면 너 나중에 결혼할 때 다 얘기해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뭔가 조심스러워야 되고 터부시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얘기하기도 그렇고.” (B2, 남)

“원래 연애만 할 때는 양가에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정도? 그냥 가끔 집에 놀러 가거나 이런 정도였다면 뭔가 참견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시댁 쪽에서도 참견이 들어오고 무슨 행사에 자꾸 참여하길 원하고 이랬던 거.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견 좀 아닌 것 같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거부하기도 좀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결혼해야 하는 조건으로 하는 줄 아시니까 대부분은.” (B4, 여)

다. 동거 공개 범위 및 가족 만남 경험

비혼 동거 중인 사실의 공개에 대해 대부분의 남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비혼 동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려되어 직장에는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동거 중 서로의 가족 및 친한 친구들에게는 동거 사실을 자연스럽게 공개하였다.

“저는 공개를 해야겠다고 공개한 건 아니고 일단 여자친구 부모님 쪽에는 그쪽은 너무 엄하셔서가지고 공개를 못 했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는 공개를 한 게 아니고 자꾸 택배를 여자친구 집에서 받으니까 어머니께서 먼저 눈치를 채셨어요. ... 정말 친한 친구 한 두세 명한테만 말하고. 직장 동료나 딱 사람들한테는 말 안하고.” (B1, 남)

“회사에서는 절대 얘기한 적 없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죠. 양쪽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고. 정말 친한 친구들 외에는 얘기한 적 없어요.” (B2, 남)

“저도 회사에는 공개는 안 했고요. 주변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제가 어디야? 동네에서 부르는데 항상 그 동네에 있으니까. 부모님한테도 한 사귀지 한 2~3개월 됐을 때 얘기를 드렸었고. 굳이 숨길 만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B3, 여)

“저도 직장, 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장 빼고는 주변에 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연애 기간이 7년이었기 때문에 각자 본가 가족들하고 살다가 나오게 되니까 다 알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알리게 됐고요.” (B4, 여)

동거 후 혼인으로 이어진 그룹의 특성상 상대방 가족과의 만남은 대부분 동거 과정에서 결혼의 가능성을 서로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동거 이전 교제의 기간이 길어 교제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응답도 있었다.

“동거하는 과정에서 만났어요. 어머님 되게 쿨하시죠. 되게 좋았어요. 편안했어요. 와이프가 성격이 되게 괄괄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와이프한테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알아서 그냥 다.” (B2, 남)

“만나게 된 저는 결혼 얘기 나오면서 만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같이 사는 걸 아시고 반찬 같은 것도 여동생 통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반찬만 몰래 넣어주고. 저희 없으면 없는 거 확인하시고 막 왔다 가시고 이러셨거든요. 마주치는 게 불편할까 봐. 부모님들이 되게 깨어 있으신 분이어서고 크게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B3, 여)

“시아버지가 좀 아프셨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4년, 돌아가신 지 4년 됐거든요. 그래서 아프시니까 결혼 얘기가 자꾸. 계속 누워 계시는 상태에서 시댁 쪽에서는 저희 집에서까지는 아닌데 시댁은 결혼해라. 아무튼 공개는 다 편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 빼고는 다 하게 됐어요.” (B4, 여)

라. 가족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비혼 동거 이후 혼인한 집단은 대부분 뭘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등 감정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거 당시의 상대방을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거의 형태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법적인 결속이 없어 헤어짐이 쉽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아니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애정의 정도는 동거와 결혼이 비슷하겠지만, 사회적 인정, 법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상호 간의 강력한 결속이 된다는 것이다. 혼인신고라는 법적 제도로 묶이지 않아도 가족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으나, 결혼식이라는 장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책임감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즉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만 진정한 가족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이거 사드려야겠다. 그러면 가족. 아닐까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가족 아닐까요? 혼인신고 딱 하고 법적으로 돼야. 그전에는 저 같은 경우 6년 동거했어도 헤어지면 땡인데. 그런 생각을.” (B1, 남)

“추상적일 것 같긴 한데 뭘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와이프 선물이나 뭐 이렇게 살 때는 그냥 와이프가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지 돈이, 애정이라고 하는 건 비슷하겠지만

왜 결혼하면 가족같이 되냐면 일단은 결혼을 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더해짐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결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동거에서도 그런 걸 해준다고 하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B2, 남)

“저는 항상 제가 행복할 때보다 제 가족이 행복해질 때 가장 더 행복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족들한테 인정을 받고 잘 살아야겠다고 나도 내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책임감이 많이 생겼어요.” (B3, 여)

“좀 비슷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해줄 때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되게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고 이런 거. 뭔가 이렇게 금전적인 거 생각 안 하고, 뭘 더 해주고 싶고, 아깝지 않고.” (B4, 여)

출산에 대한 생각 같은 경우 동거 과정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와 조율이 이루어졌을 뿐, 동거 경험으로 인해 관점에 변화가 생긴 부분은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는 혼인 상태임에도 건강상 이유, 가치관의 이유 등으로 출산에 대해 고민 중인 남녀가 대다수였다.

“저는 아기들을 되게 좋아해서 낳고 싶었는데 당시 여자친구는 아기들을 되게 안 좋아했어요. 키운 환경이 좀 그런 게 안 좋았어서 키우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대할까 봐 무서워서 안 낳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은 나중에 결혼하면 낳을까 말까 말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한 살씩 계속 먹어가더라고요. 지금은 45가 됐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B1, 남)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 동거하기 전에 와이프는 실제로 첫째 둘째 이름도 지어 놨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는 별로, 이게 과연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을 내가 지금 지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와이프랑 둘이 지내는 게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사회가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도 반반입니다.” (B2, 남)

“저는 남편이랑 낳을 생각이 없어요. 살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고. 그냥 둘의 편의 이런 걸 떠나서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는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뒤늦게 결혼했고 남편이 거의 마흔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가 없이 살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는 나눴는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냥 50:50이에요. 계속 바뀌긴 해요. 지금.” (B3, 여)

마. 동거 후 결혼 과정, 동거가 결혼에 미친 영향

동거 후 혼인으로 이어진 남녀는 모두 비혼 동거의 경험이 결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동거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 동거의 시작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결혼보다 가볍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살아보는 것이 결혼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저는 동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6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 사람도 저에 대해 다 알았잖아요.

동거가 길다 보니까 서로 너무 알고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B1, 남)

“저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안 했으면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상황 자체가 결혼을 하기에는 당장 하기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살다 보니까 더 끈끈해지게 됐고. 같이 살아보니까 편하다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동거를 안 했으면 저는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바로 결혼으로 가자고 하면 너무 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저도 오피스텔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동거라고 하는 건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부모님 허락도 없고 약간 가볍게 또 좀 넘어가고 그런 확실히 스텝핑 스톤(steping stone)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B2, 남)

“근데 이게 안 해보진 않았으니까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분명히 미처서 결혼은 했겠죠. 저도 생각해 보면 동거가 결혼에 미친 제 애기 아빠가 어떤 되게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더 잘 알게 됐다.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남자답게 책임감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걸 많이 느껴서” (B4, 여)

바.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미디어에서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동거의 개념이 혼하고 오픈되어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도, 현재 윗세대가 동거 중인 청년층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이 동거 중인 여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데 지금 많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저는 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하면서도 이게 조금 창피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던 거고. 아직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한 70~80대 분들이 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인식이 있지 않을까.” (B1, 남)

“나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아직 미디어 이런 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오픈돼 있고 뭔가 잘 그 인식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참 벽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인식은 좀 다르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알고 보면 그 사실은 아니냐. 그런 인식들을 보면서 아직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2, 남)

“이런 인식은 여자들한테 더 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비혼 출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회사에 대한 그 상사의 발언은 왠지 제가 느낀 건 모르겠지만 그 뉘앙스가 여직원한테 하는 뉘앙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직 웃어른들이 동거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여자가 손해다, 손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B3, 여)

“동거는 요즘 좀 흔하게, 편하게 보지 않나요?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B4, 여)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결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주로 나타났다. 남성 같은 경우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결혼했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함께 살다 보니 생기는 상대에 대한 책임감이 결혼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많이 들어왔으며, 이를 사회적 인식 때문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저는 사회적 인식이라기보다는 6년 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44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질까 이런 말도 했는데, 친구들이 너 저렇게 6년 해놓고 지금 너 헤어지면 그 누나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때문에 빨리 그냥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B1, 남)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는 그냥 사회적 인식 그런 거에 맞출 것 같았으면 애초에 동거를 안 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책임감도 좀 생기고 그냥 어디 가서 와이프라고 부르고 싶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사회적 인식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더 애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B2, 남)

“저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엄마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를 하셨었고. 그래서 잘 저희가 잘 살아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혼을 좀 되게 빨리 재촉하셨거든요. 그런 거.” (B3, 여)

“주변에서 계속 연애도 있었고 연애 기간도 있었고 동거 기간도 있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언제 하나고 똑같은 질문 계속 나오잖아요. 주변에서 가족들도 지인들도 언제 해, 언제 해, 이런 것들이. 잘 알고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자꾸 재촉하는. 이럴 거면 결혼해.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거죠.” (B4, 여)

비혼 출산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는 현재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정책 수립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비혼 동거 및 출산이 자연스러운 가족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정책의 수립이 선결되면 사회적인 인식이나 복지 수준 등도 따라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그렇게 탄생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 수립에 관해서 오히려 비혼 동거나 출산에 대한 지원이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근데 인식이 바뀔까요? 이게 막 비혼 출산이나 동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인식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반대로 그런 데 많이 지원을 해줘버리면 왠지 비혼 출산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되게 임신의 그런 것도 되게 쉽게 그냥 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B1, 남)

“동거는 특히나 서구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없던 걸 갖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는 사회가 그렇게 흐를 텐데 톱 다운에서 정책적으로도 좀 만들어줘서 같이 호응을 해줘야 좀 그렇게 고민하시는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비혼 출산이) 뭐가 안 좋은 건지라는 생각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둘이 안 만나서, 결혼을 안 해서 결국엔 사회가 무너지는 게 더 큰 문제지 과연 비혼 출산이 나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B2, 남)

“저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외국 같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더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데도 아이 낳으면서 계속 동거하

는 커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사회적인 복지나 이렇게 아이에 대한 지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가족 형태로 지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헤어졌을 때 그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저희 사회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인식도 변화된다면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B3, 여)

“비혼 출산 쪽 그 보는 시선을 좀 좋게, 지원도 더 아끼지 않고 좋게 보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른이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꼭 결혼을 해서 낳아야 하느냐 이것까지는 아닌, 비혼 출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선을 나쁘게 막 보지 말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B4, 여)

사.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관해서는 만약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용은 하겠지만, 악용의 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제도가 국세로 운영이 되고, 결혼처럼 법적 결속이 없는 상태인 동거 커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빙 절차 및 구체적인 혜택이 찬반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진짜 있다고 하면 이용할 것 같은데 악용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사실 증빙할 때 법적으로 묶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악용해서 나라에 혜택을 받을 사람도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체적인 세금으로 돌아

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혜택인지 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증명해서 그걸 어떤 혜택을 줄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찬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3, 여)

“바우처나 이용을 하겠지만, 이게 필요성은 글썄요. 결혼이랑 또 뭐가 다를까요? 그렇게 따지면, 동거의 이 제도와 결혼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B4, 여)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 악용과 부작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과 같이 가족과 관련해 강한 고정관념이 있는 사회는 강한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인식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인식의 개선을 위해 제도는 무조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제도화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동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의 자율성을 높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사회 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부작용이 있고 악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일단은 제도화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산율이 심각하다고 말만 하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동거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범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B2, 남)

제도의 적정 범위에 관련해서는 동거인을 보호자로 인정해 주는 부분 까지에 대해서만 모두가 동의했다. 급하게 진행하는 수술같이 생명에 지

장이 생길 경우 현재 법적으로 가족만을 보호자로 인정해 주는 상황이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더 나아가 자녀에 대한 권리, 상호 간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도 그런 수술 동의서 딱 그 정도만. 저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제가 땀장이 터져가지고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동의서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광주에 쳐서서 바로 수술을 못 했어요. 다음날 가까운 동생이 와서 대신했거든요. 딱 그 정도만 해도 목숨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B1, 남)

“일단은 자녀에 대한 권리라든가 서로에 대한 권리, 기본적인 권리는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권이 한 쪽만 생기고 한쪽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장 기본 가족 관계 증명서 어떻게 땀 건데요? 그러면은 애기 통장 하나도 못 만들걸요? 은행 가서? 그런 기본적인 권리는 인정해 주자는 거죠.” (B2, 남)

“보호자까지 인정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거 지원이나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 혜택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저는 그 선까지는 반대예요. 제가 아는 분도 크게 뇌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보호자가 없었던 거예요. 주변에 가족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보호자가 돼서 수술을 했던 지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개념이 제가 말씀하는 이 정도까지 개념인 거예요.” (B3, 여)

하지만 세금이나 상속, 주거 등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한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피부양자라든지 그러니까 상속의 권리 내지는 세금 관련된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 맞아요. 그거는 좀 얘기가 많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B2, 남)

“우리나라의 인식상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니까 이 집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잘 증빙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외국도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B3, 여)

“법적인 뭔가를 자격을 준다는 게 위험하잖아요. 보험이나, 예를 들면 사기든 뭐든 분명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 혜택을 다 받고 싶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B4, 여)

한편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러한 혜택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관계 등록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도입이 어렵다고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저는 그게 기록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사회가 동거해서 괜찮다고 오케이 하면 그런 것도 기록도 별 문제 없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기록을 지금 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B2, 남)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듯이 회사에는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주변에는 알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증명서 이런 뭔가가 있다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B4, 여)

제4절 비혼 동거 경험 후 이별 경험

세 번째 집단은 과거 비혼 동거를 경험하고 현재는 이별한 집단이다. 총 4명 중 남자 2명, 여자 2명, 연령대는 30대 초반과 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거 기간은 1년 6개월부터 2년, 3년으로 비슷하다.

〈표 5-6〉 비혼 동거 후 이별 경험에 대한 FGI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직종	동거 기간
C1	여	39	사무 종사자	3년
C2	여	32	사무 종사자	1년 6개월
C3	남	38	사무 종사자	2년
C4	남	40	자영업	1년 6개월(2회)

자료: 필자 작성.

가. 비혼 동거 이유 및 계기

과거 비혼 동거를 경험하고 이별한 집단의 경우에도 비혼 동거의 계기는 유사했다. 연애 중 금전적 이유, 직장과의 거리, 재택 근무 등으로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들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동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또는 필요에 의해 동거를 선택한 경우였다. 그리고 동거라는 개념이 한집에 꼭 산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집이 있어도 같이 생활을 한다면 그 방식 또한 동거로 생각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는 뭔가 딱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교제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치게 된 것 같거든요. 뭔가

딱 특별히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1인 가구였는데 이제 그쪽이 마련한 집에서 이제 거주를 했었고.” (C2, 여)

“직장이 그때가 좀 멀었어요. 출퇴근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기도 했고,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그쪽에 살고 있고 해서 동거하게 됐었습니다.” (C3, 남)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두 번 동거해 봤지만 우리 동거할래 하고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데이트하고 지내다가 이 집 가까우면 이 집에서 놓고 그런 반복. 그다음에 집을 같이 연계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동거하는 집이 딱 하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 안해요. 서로의 집 왔다 갔다 할 때도 며칠씩 지내고 해서 그런 것도 동거라고 생각했어요.” (C4, 남)

나. 비혼 동거의 장단점

비혼 동거의 장점으로는 정서적인 안정을 주로 꼽았다. 혼자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함께 살아가는 데에서 파생되는 즐거움 등이 그 예시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연애 초반에 동거를 시작한 커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굳이 뭐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어쨌든 계속 보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좀 심리적인 안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동거로 인해서 같이 생활하고 또 어떤 뭐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C1, 여)

“저는 당시에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인데요. 좀 더 그 사람을 빨리 파악하고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C2, 여)

“정서적인 건 확실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소꿉놀이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뭔가 퇴근하고 와서 뭐 어디서 밖에서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서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에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돌아오면 뭔가 되게 재미있었고….” (C3, 남)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혼 동거 사실을 회사에 당당하게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사회적 시선이 의식되어 가족이나 친구 이외에는 공개가 두렵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거 사실만으로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점을 단점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급한 수술의 상황에서 가족만을 보호자로 인정하는 체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국 사회의 발전이 필요함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친구들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회사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오픈하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는 동성과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곳은 보수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C1, 여)

“저는 실제로 한 번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혈복강이라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수술인데 전신 마취는 혈연에게만 동의를 구하고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동거인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거기서 어떠한 책임도 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보호자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동생이 무조건 와야 되는데 당시에 당연히 못 오는 상황이니까.” (C2, 여)

이러한 단점은 비혼 동거 커플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비혼 동거 커플의 동거 기간 중 파생되는 문제 및 절차적 과정을 보호해 줄 보험 개념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든 동거 커플에게 주어지는 정부 차원의 복지나 혜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동거 커플이 선택적으로 법적 장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부분은 수술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동거자가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법적 보호 장치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도적인 거. 제가 약간 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보호자 같은 거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C1, 여)

“(수술 상황에서 혈연만 법적 보호자로 인정)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 아직은 뭔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이 되지 않는구나. 뭐 이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이 예상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 조금 난감했던 경험이 있어요.” (C2, 여)

“둘이 어차피 합의하에 동거를 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뭐 임시적인 보험 같은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부부랑은 좀 다른, 분명히 이제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거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뭔가 서로가 서로의 심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면서 보험처럼 내가 돈을 내면 무언가의 혜택을 받거나 혹은 보장을 받는 그런 것들.” (C3, 남)

다. 동거 공개 범위 및 가족 만남 경험

비혼 동거 중인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남녀는 친한 친구들에게는 스스로 없이 공개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직장에는 동거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부정적 시선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저는 친한 친구들하고 상대방도 친한 친구들까지는 공개를 해서. 제 친한 친구들은 제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인 걸 아니까 좀 많이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좀 어쨌든 그래도 응원해 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상대방 친구들 별로 껄껄치 않아, 그 친구들의 친구들도 동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C1, 여)

“친한 지인들한테 이야기는 했고. 그렇다고 딱 갑자기 우리 같이 살아,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택시 같이 타고 우리 같이 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2~3년 지나니까 다 이제 뭐 공공연하게. 부모님한테도 동거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안 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가지고. 웬지 그런데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한 건 이제 공동 지인이 있는 그런 지인 모임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C2, 여)

“이게 뭐라고 공개, 비공개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를 물어본 사람이 일단 없었고요. 공개를 안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누가 물어봤다면 얘기했을 것 같은데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C3, 남)

결혼 의사가 있었던 커플의 경우 양가 직계 가족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 직계 가족을 서로에게 소개해주는 개념일 뿐 동거에 대해 얘기한 경험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족 모두에게 동거 사실을 공개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동거한 경험도 있었다.

“저는 딱히 만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C1, 여)

“저는 만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당연히 밖에서 만났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서 그냥 별로 거부감 없이 만났는데 눈치채셨을 것 같다. 이 생각은 한 적 있는데 딱 공공연하게 같이 살아요는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시지도 않았고.” (C2, 여)

“결혼을 할까 생각해서 인사를 한 거지 저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급습하신 건 아니었어요. 같이 사니? 뭐 이렇게 물어봤으면 거짓말 못 했을 텐데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으셔가지고 굳이 같이 산다고 할 이유가 없었죠.” (C3, 남)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애인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가고, 같이 가족 여행도 가고 그랬어요.” (C4, 남)

라. 가족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이 집단에서는 결혼을 해야만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동거와 결혼을 비교하며, 결혼이 동거보다 훨씬 큰 책임감이 요구되고, 헤어짐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동거가 단순히 남녀 커플 사이의 관계에서 그친다면,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기에 훨씬 큰 책임감이 요구되고, 결혼이 해체의 여지가 동거보다 적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을 해야 진짜 가족, 결혼이라는 건 우리 둘만의,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다 얽혀 있잖아요. 저희 가족, 정말 피를 섞인 가족들과도 다 연 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거는 가족 같은 마음 들고 정서적으로 안정은 되지만 정말 가족이라는 그 완성은 아닌 것 같은. 그거는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완성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C1, 여)

“결혼은 뭔가 해체될 수 있는 여지가 동거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고려할 것도 많고. 사실 동거할 때도 헤어지기가 진짜 힘들 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 더 힘들니까 그게. 사실 뭐 이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그렇고 그 과정, 이혼을 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잖아요.” (C2, 여)

“진짜 가족이면 결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이 된다는 건 진짜 무겁고 책임감이 엄청 따라야 되는데 동거는 사실 그런 마음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거든요.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결혼으로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C3, 남)

한편 비혼 출산에 관해서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는 다른 태도가 나타났다. 상대방을 결혼을 해야만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던 것과 별개로, 아이에 대해서는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혈연을 확실한 가족으로 인정하되, 혈연관계가 아닌 상대방에 대해서는 결혼과 같은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높은 책임감이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가족이죠. 내가 낳은 것만큼 확실한 혈연은 없잖아요. 이 혈연보다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제 남편보다. 혈연은 어떻게 떼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야 뭐 이혼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C2, 여)

“(동거를 하는 상황에서 둘이 합의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그 형태가) 완전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C3, 남)

주변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경우는 결혼보다 동거가 더 자연스럽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거나 결혼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고, 출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적었다.

“제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5년쯤 전부터는 결혼하는 케이스보다 그냥 동거해서 같이 사는 케이스가 제 주변에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청첩장을 아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20~30대 초반까지는 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람이 훨씬 많고 결혼할 애들은 그때 다 해버려요. 나머지 싱글들은 계속 싱글이고,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 동거해요. 그리고 그렇게 동거하다가 결혼한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애하고 저희 결혼합시다라고 해서 결혼하는 비율이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식장 자체를 아예 정말 안 가니까요. ... 저는 애초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입장이어서 출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C4, 남)

마. 동거 후 이별 과정 및 향후 동거 의향

동거 후 이별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동거가 이별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동거를 통해 이별이 앞당겨졌다고 응답했다.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나머지 서로가 지쳤다든지, 동거 과정에서 안 맞는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든지, 서로의 편한 모습을 계속 접하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든지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좀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나 뭐 이렇게 의지를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좀 힘들어했어요. 그 기간이 좀 장기

화됐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건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도 이제 너가 나를 만나서 너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걸로 두고 또 서로 힘들어하면서 각자 이렇게 지내 보자 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됐거든요.” (C1, 여)

“저는 동거를 하다가 잘 만나다가 이제 프리포즈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뭐 하나 결정하면 막 무조건 하는 스타일인데 결혼을 막 미루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친구의 가족분들이 혈육의 결혼식에 참석해야지 않겠나라고 또 마침 시의적절하게 푸시를 해주셔서 나는 애랑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애랑 아닌 것 같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동거 과정에서 발견이 많이 됐거든요. 성격적인 이유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저랑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헤어졌어요.” (C2, 여)

“헤어지는 과정은 전혀 트러블이 없었고요, 저희는. 아예 싸운 적도 없어요. 저희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애정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헤어진 이유가 이제 동거에서 저는 조금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해지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했으니까. 막 되게 궁금하고 항상 되게 신비롭고 재미있고 약간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가치였나 봐요.” (C3, 남)

또 이후의 동거 의향에 관해서는 동거를 연애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거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동거 이후의 이별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향후 동거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저는 별로. 헤어지고 나서 되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동거했을 때의 감정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기까지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혼자. 연애했던 거랑은 다르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나한테 깊숙하게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C1, 여)

“저는 동거까지 해 보가지고 이 친구랑 싹 끊어낼 수 있었어요. 뭐 싸우고 막 개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진짜 그 사람의 생활습관까지 다 본 거니까 저는 오히려 힘들지 않았고. 만약에 다음 사람이랑 뭐 연애할 거냐, 아니면 동거할 거냐, 결혼할 거냐라는 선택지가 있으면 저는 1순위는 연애겠지만 동거랑 결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동거는 안 할 것 같아요.” (C2, 여)

“동거, 그러면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동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연애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을 뵙고 뭐 인사를 하고 이런 건 있었다고 해도 저한테는 그냥 연애여서 연애를 안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랑 별 차이 없는 질문이어서 동거할게요.” (C3, 남)

동거로 인해 결혼관이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과 남성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했다. 남성 같은 경우 동거 경험과 상관없이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여성은 동거 경험을 통해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저는 출산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해해 줄 수 있는 시댁과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 혼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까지 있어야 저는 가족의 완성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있다면 하겠지만 뭐 굳이 결혼을 꼭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C1, 여)

“저는 사실 동거하기 전에는 되게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거하고 난 후로는 뭐 그냥 혼자 살아도 또 되겠다, 그런 제도적인 걸 다 떠나서 그냥 그래, 혼자 일귀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런데 이런 걸 또 다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상 동거를 했는데. 그럼 결혼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혼재한 상황인 것 같아요.” (C2, 여)

“결혼이요? 결혼은 하고 싶죠. 결혼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은 언제나 하고 싶은 거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C3, 남)

바.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향후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현재 온라인 매체로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동거에 관한 인식이 안 좋은 세대가 현재 부모님 세대 이상의 연령대라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인식은 좋아질 것이고, 관련 제도도 마련될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현재 청년층 중 비혼을 결심한 사람이 많은 것이 이러한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으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인정이 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하였다.

“저도 지금 한 50~60대의 분들한테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 나이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더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양한 가족이라는 프로였나? 그런 데에서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C1, 여)

“비혼 출산은 뭐 그건 아예 쫓겨나지게 될 것 같고. 비혼 동거는 그래도 부모한테 조금 기세등등한 자식이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출산까지는 웬만하면 질 것 같아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C3, 남)

이러한 의식에 대해서는 현세대부터는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미디어를 통해 현세대의 생각을 윗세대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 주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다만 미디어에서 연인 사이의 동거를 무조건적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 주입시켜 줄 수도 없고. 저희 세대부터는 좀 그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윗세대들은 그제 바뀌지 않으니까 약간 미디어 노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많이 인식을 바꿀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어떨까. 자꾸 노출이 되면 아, 요새 젊은 애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C1, 여)

“뭐 아무래도 다양한 가족, 가정의 형태를 1인 가구 포함해서 인정해 주는 인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 회사에서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결혼 안 했다 하면 좀 왜? 막 루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 다양한 형태를 다들 인정을 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이 나이대는 기혼에 유자녀 이 가족만이 제일 많이 혜택도 누려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인식 개선이 제일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제일 어렵죠, 그런데. 제도가 마련이 돼도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C2, 여)

“일단 뭐 인식 바뀌는 거는 확실히 미디어 노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동거를 권장한다기보다는 그냥 결혼에 대한 준비 과정 중의 하나처럼 인식시키는 건 미디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만 돼도 인식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연애한 지가 몇 달 됐는데, 그냥 우리 집에 헤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자, 이런 거를 권장하거나 미디어에서 노출을 시키는 거는 좀.” (C3, 남)

이미 변하기 시작한 부모 세대의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생각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 워낙 중요한 일로 여겨지다 보니 부모의 기대나 압박이 부담스럽고 큰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최근에는 부모 세대가 변하기도 하고 자녀 세대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기대가 한풀 꺾이게 되어 자녀 세대가 느끼는 부담도 줄어 오히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만큼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 세대는 겉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인데 점점 생각이 바뀌는 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혼자 살고 비혼을 외치는 여성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혼자 살 바에는 그래, 뭐 네가 마음 맞는 남자 친구나 결혼 예정인 사람하고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실제 사례들도 저는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사실 주위에 제 친구들도 암암리에 반동거 혹은 동거하는 커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뭔가 아, 점점 더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이제 가족의 형태를 구성해 가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제 주위에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 뭔가 제너럴하게 다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인식과 세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씩 저는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C2, 여)

“인식의 전환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아들딸들이 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누구 집에 데려간 거 이런 거를 되

게 좋아하세요. 근데 만약에 10년 전이었으면 그분들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제가 아는 형 같은 경우에도 혼자 나와 살다가 여자친구 생겨서 결혼한 케이스인데, 그때 왜 동거 안 하고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는 누구를 데려와도 부모님이 아무런 컨트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결혼했어요. 결혼에 부모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아주 소박하게 하거나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예식을 안 하거나 그래요. 저는 결혼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애인이 생겨서 같이 살겠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고 부모님이 무조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에게 맞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C4, 남)

사.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

동거 관계 등록 제도의 이용 의향에 관해서는 동거 관계 기록이 남는 것과, 제도로 묶이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용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있었다. 제도로써 인증받는 순간 누군가가 알게 된다는 것이 불편하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기록을 통해 동거 사실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계약제도를 통해 상대방과 본인이 제도적으로 묶이는 부분이 헤어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혜택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말 제가 병원을 자주 가서 막 그분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그 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해서 오픈을 할까? 그리고 정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너무 단단해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져. 나는 죽을 때까지 못 헤어져.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 한 굳이 그거를 제가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C1, 여)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게 사실 남들이 아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묶이는 부분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안 맞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묶여 있으면 못 헤어지고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애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엮이는 건 조금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끝나고서도 되게 막 약간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재산 같은 부분은 또 엮이면 그런 게.” (C2, 여)

“이걸 입증하는 순간 누군가가 알게 돼,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먼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걸 굳이 인증받으려고 막, 나라에 인증받으려고 애쓰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뭐 어딘가에 등록해서 너랑 나랑 동거하는 사람이라는 걸 등록한다는 건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안 하지 않을까.” (C3, 남)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도의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도 사용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은 관계 등록 기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혜택이 제공된다면 동거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증명할 것인지, 동거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동거 인증 방법 및 이별 후의 기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거인의 범위를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하여 도입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방식을 차용한 동거 인증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등이 그 예시였다.

“저는 1인 가구한테는 혈연이 아닌 보호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등록은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범위로까지 확대돼서 보장이 되는 제도라면 저는 완전 찬성인데, 꼭

동거인만 되고 그게 이성이어야 된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또 어떻게 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 제도가 또 악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유효기간이 끝난 뒤 증명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원치 않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그래서 조금 범위를 제한하는 거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C2, 여)

“등록은 그냥 내가 나만 알 수 있는 사인을 보내서 이 사람도 오케이 해서 받으면 동거로 인정받는 거는 뭐 어려운 인 증은 아닌 것 같아요. 등기 세대주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나랑 너랑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 금융 인증만 해서 들어가서 맞으면 되니까 그거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야 그리고 일방적으로 누가 끊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끝내는 것도 역시 간편할 것 같아서.” (C3, 남)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수였다. 일단 주거는 동 거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주거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연애나 결혼에서 주거 결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주거 정책에 대한 우려점은 동거 관계 등록 제도를 사용해서 주거의 혜택을 받았다가 이별하게 될 경우에 이에 대한 재산 및 소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동거 커플에게 집이 혜택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집 이외에 다른 거주지가 없는 커플의 경우 주거, 경제적 문제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연장해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동거 관계를 밝히지 않고 싶어하기에, 주거의 일시적 대여가 아닌 영구적 제공이 되는 정도의 혜택이 주어져야 동거 관계 등록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대출 받으려고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한 김에 약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동거든 결혼이든 좀 더 수월하긴 하겠죠. 예를 들면 아파트에 혼자 사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애인 생기면 동거를 하든 진짜 결혼을 하든 선택이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그제 아닌 대부분의 케이스는 각자 서울 나와서 사는데 서로의 집이나 집에 부을 돈을 합치는 수준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애도 여기 살고 애도 월세로 사는데 합쳐서 좀 나은 집 구하자 하는 주거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인신고 한 친구들은 대출받았거나 부모님이 도와줘서 청약 넣거나 하고, 그래서 혼인신고한 친구랑 그냥 동거하는 친구들이랑 주거 형태가 좀 다르죠.” (C4, 남)

“주거 같은 게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집을 샀다, 헤어졌는데 이 집 누가 살 거야. 이런 문제면 차라리 얘기를 하고 뭐 소유권 분쟁하든 어쩌고 할 텐데 이제 동거가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동거 기간을 역지로 연장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제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걱정이 더 될 것 같아요.” (C2, 여)

“일단 기한이 있는 거는 좀 꺼릴 것 같긴 한데요. 보장성이, 진짜 니네 거라고 해서 주고 받고 끝나. 이런 거면 뭐 받을 것 같아요.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서 진짜 동거 커플한테 그냥 주는 거야. 나중에 니 거 내 거 가르는데 둘만 가르면 되잖아요. 나라에서 막 제도적으로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C3, 남)

제5절 이혼 후 비혼 동거 경험

마지막 번째 집단은 이전 결혼이 이혼으로 종료되고 현재 비혼 동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총 3명 중 남성 1명, 여성 2명이었다. 40대 2명, 50대 1명으로 대부분 중년기에 속한 연령대였다. 동거 기간은 짧게는 10개월부터 길게는 8년까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5-7〉 이혼 후 비혼 동거 경험에 대한 FGI 대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직종	동거 기간
D1	여	44	사무 종사자	2년
D2	여	54	사무 종사자	8년
D3	남	48	자영업	10개월

자료: 필자 작성.

가. 비혼 동거 이유 및 계기

이전 결혼을 이혼으로 종료하고, 현재 비혼 동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 서로의 상황과 나이,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들로 동거를 시작하고 있었다. 상대의 사업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 없이 파트너로서 함께 살고 싶어 동거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연애 과정에서 20대에 비해 서로에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데이트를 하거나, 상대방의 거주지로 이동하기에는 힘들다는 현실적인 판단하에 동거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주로 상호 합의하에 동거를 시작하고 있었으며, 직장생활, 사업, 서로 간 물리적 거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거가 적절하다는 판단이 동거의 큰 이유가 되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한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게 없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서 서로 그냥 파트너 같은 사이로 그냥 파트너로, 그러니까 동거인에 플러스 이제 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조율하다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D1, 여)

“연애를 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왕복으로 잘못하면 4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다음날 처음이야 뭐 좋아서 막 그런다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현실에 좀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20대도 아니고, 그래서 만나는 횟수가 좀 더 줄어들기도 하다가 이럴 바에야 그냥 어차피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친구도 어린 친구도 아니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이제 오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내게 됐죠.” (D3, 남)

나. 비혼 동거의 장단점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남녀는 모두 이전 결혼과의 비교를 통해 비혼 동거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전 결혼에서 겪었던 관계적인 어려움을 통해, 비혼 동거 관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점을 큰 장점이라 말하였다. 특히 동거 관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서로를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갈등이 잦지 않다는 점을 장점이라 하였다. 또한 이혼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이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전 처음 결혼 생활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실패를 하면서 새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 동거를 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게 두 번째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차적으로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었던 부분

들에 대한 조심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횡수도 많아지고, 싸움도 이렇게 뭐 많이 잦아들고.” (D3, 남)

한편 비혼 동거의 단점으로는 보험이나 주거비와 같은 영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관계의 모호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함,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동거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점과 관계 자체에서 느껴지는 불안정 등을 꼽았다. 동거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전 결혼을 통해 낳은 아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전 배우자가 친모이며 법적으로는 자신이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묶인 부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부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 줄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단점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또한 동거의 장점이지만, 그런만큼 관계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점에서는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불안하죠, 이 관계라는 거 자체가. 상대방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좀 자유스럽다는, 상대방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죠.” (D3, 남)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고다 보니까 가끔 면담을 할 때가 많은데요.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나한테요 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도 되겠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뭐 어때, 엄마인데.’ 이랬는데 우리 둘의 생각이지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 원래 엄마가. 엄마가 온 거죠. ... 저는 잘됐네, 안 가도 돼. 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D2, 여)

“만에 하나 저한테 무슨 일 생겼는데 우리 엄마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책임지실 분이 없잖아요. 이분이 배우자이지만, 물론 믿어요.

제가 없어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친자식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엄마랑 관계에서 그러면(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엄마는 진짜 혼자가 되시니까.” (D2, 여)

이러한 단점은 비혼 동거 커플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는데, 특히 돌봄이나 주거 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나이인 만큼 각종 보험이나 주거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길 원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동거 관계에서의 재산 분할에 대한 제도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의료랑 이렇게 보험 혜택 같은 게 지금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확실히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짧게 아니더라도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은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나 이런 쪽에 혜택을 받아야지 좋을 것 같아요.” (D1, 여)

“우리나라의 정책 자체가 어쨌든 법률혼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책들이 나오는 거니까, LH나 SH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용하려고 해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관련된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은 혼인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면 그러한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동거한다고 지원해 주는 건 없거든요.” (D3, 남)

다. 동거 공개 범위 및 가족 만남 경험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참여자들은 비혼 동거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 친한 지인들에게는 공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이나 가깝지 않은 지인들에게는 자신을 ‘기혼자’로 소개하고 있었으며, 상대방과 혼인 관

제라고 소개하는 등 동거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가족들에게도 동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밝힌 참여자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였다. 이전 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동거 사실을 계속해서 숨길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와 자신의 이혼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친모에게 동거 사실을 10년 넘게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마인드 컨트롤 계속해요. 아, 컨셉을 뭘로 잡아야 되지? 하면서. 이게 기혼인가, 미혼인가. 싱글은 싱글인데. 그런데 이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이렇게 중요한 자리 갈 때 항상 마인드를 어, 나는 결혼했고 남편은 지금 뭐 어디서 있고 이것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가야지 말이 안 꼬이거든요.” (D1, 여)

“저도 헛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아, 나 결혼했다, 결혼했다. 막 머릿속에 넣고 남편이 가끔 데리러오면 혹시 만나게 되면 10년 됐어. 우리는 10년 됐어. 결혼했어. 막 이렇게 말하고.” (D2, 여)

“남들이 이혼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내 딸이 이혼하는 건 애가 문제 있다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잣대가 항상 이런 거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제거 해소하기가 싫어서 엄마랑 부닥치기 싫어서. 부닥치면 상처가 될까 봐 그렇게 하다가 어영부영 동거가 됐는데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D2, 여)

상대방 가족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는 등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했을 때만큼 ‘며느리’, ‘사위’ 등으로서의 의무감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는 것이 긴 시간 동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밝힌 참여자도 있었다. 아직 양가 직계 가족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참여자 또한 상대방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늦출 예정이라고 말하

였다. 한편 남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족과 만날 때 결혼을 재촉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한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 하였다.

“(상대방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늦춰볼 것 같아요. 최대한, 네. 이거는 동거 아니고 결혼이었어도 그런 관계는 최대한 늦추는 게 편하더라고요. 만남은.” (D1, 여)

“만약에 좀 불편하게 했거나 가족들이 관여를 많이 하거나 또 자주 봐야 된다면 그걸도 저한테는 좀 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소지가 됐을 거예요. ... 자주 보면 또 정이 쌓이잖아요. 아이도 자주 안 보려고 하는 게 얼굴 한 번이라도 보면 얼굴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분명히 한 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거리를 최대한 두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10년의 장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D2, 여)

“반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를 이상한 놈으로 보는 거죠. ... 남자라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 아직도 그런 사상이, 생각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웬만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결혼을 해라.” (D3, 남)

라. 가족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남녀는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과 함께 보낸 시간이 길수록 가족이 된다고 인식하거나, ‘언제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참여자 3명 중 2명은 상대방을 가족이라고 인식하며, 결혼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 참여자 한 명은 상대방을 아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결혼

보다는 연애에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방을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2명의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함께한 9년의 세월을 근거로 상대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 명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과 언제든지 혼인신고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관계로, 생활에 있어 배우자나 다름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0년을 같이했어도 만약에 각자 생활이 더 많았다면 그것도 뭐 가족같이 했다고 꼭 가족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하면서 진짜 다 봐야 그게 가족이지 않을까.” (D2, 여)

“혼인신고만 안 한 거뿐이지 배우자인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현재 상태나 방식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배우자죠.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소개할 때도 그냥 뭐 배우자라고 소개를 하지 그냥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지는 않거든요. 와이프라고 소개를 차라리 하니까.” (D3, 남)

“그걸 해야 가족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반 가족? 50% 정도, 그러니까 70%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하면 그냥 50%인 거예요. 언제든지 뉘집을 수가 있으니까.” (D3, 남)

이혼 후 비혼 동거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동거로 인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주로 이전 결혼과 이혼 과정으로 인해 동거와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굳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약 9년간 동거 생활을 지속해 온 여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거를 통해 혼인신고는 서류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되어 결혼은 ‘굳이 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였다. 남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생각이 크게 없지만,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은 결혼을 바라고 있어 동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점차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저도 그냥 이혼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저도. 그런데 동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굳이 결혼해도 안 해도 그만.” (D2, 여)

“아니, 저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실패를 하고 나니까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하고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상대 여자분들이.” (D3, 남)

한편 한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비혼 동거까지 경험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특성상 자녀가 이미 있어 더 이상의 출산 의향은 없다는 경우도 있었으며, 가임기 연령을 지났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전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동거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출산을 하지 못하는 나이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출산 의향은 대부분 없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제도적인 면에서도 비혼 출산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비혼 출산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만약 현재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했을 것이라 응답한 여성 참여자도 있었다.

“저는 한 명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안 낳을 생각이예요.” (D1, 여)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는 그러면 혼인신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인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D2, 여)

“처음에는 낳을까라는, 그러니까 애를 가질까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한계도 있고, 여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걸 막상 내가 어떻게 키우나 걱정되는 거죠.” (D3, 남)

마. 이혼이 동거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세 명의 참여자 모두에게 이전 결혼과 이혼 과정은 현재 비혼 동거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전 결혼 자체에서 상대방 가족과 갈등도 있었으며, 이혼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이혼은 둘만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닌 주변의 관계까지 얽힌 일이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이전 결혼에서 상대방 가족과 갈등을 경험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또다시 결혼을 통해 상대방 가족과 '법적 가족'으로 얽히고 싶지 않아했다. 때문에 재혼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두 번 이상 실패할까 봐 매우 조심스러워 하였다. 특히 자녀가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었더라면 재혼을 조금 더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꼬여진 관계'를 만들어주기 싫다는 이유로 재혼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혼 이전에 결혼 관계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는데, 이혼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1순위에 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현재 동거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다시금 결혼을 통해 희생해야 하는 위치에 서고 싶지 않아 비혼 동거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제가 아이가 없었으면 재혼을 좀 더 쉽게 생각,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한테 더 이상 이제 좀 법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꼬여진 관계를 만들어주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안 할, 그렇게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고.” (D1, 여)

“우리 엄마는 제가 이혼한 그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실망스럽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을 죽이지 이럴 정도의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가 막 며칠 가출도 하시고 뭐 이럴 정도로. 외국은 사실 둘만의 관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의 관계가 끝나도 주변의 관계가 안 끝나서 이제 되게 한동안 힘들더라고요.” (D2, 여)

“저는 한 번의 실패로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법적 혼인에서 벗어나려면 엄청 또 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민과 힘든 부분들이, 또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 많이 또 타격을 많이 받고, 어쨌든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D3, 남)

바. 결혼과 동거의 차이, 향후 결혼 의향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참여자들은 결혼에 비해 동거 중일 때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으며,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동거 커플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혼인 관계에 비해 ‘남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동거가 결혼에 비해 자유롭다고 느껴지는만큼 외도나 헤어짐 또한 쉽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외도나 헤어질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비해 관계가 가벼운 것 같다고 하였다. 반면 법적으로 문제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함께해야 할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며, 결혼에 비해 관계 자체에 대한 책임감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동거 관계가) 동등하다 느끼고, 그냥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D1, 여)

“(혼인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동등하죠. 머느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로서. 그런데 지금은 정말 동등한. 이게 뭐 누가 더 돈을 내고 누가 더 생활비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입장이 동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동거지 않을까 싶어요.” (D2, 여)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더 진짜 고민을 해서 그럼 조금 더 잘 맞춰서 잘 가볼까? 옛날에는, 결혼했는데 어떻게 이래? 이런 감정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서로 좋아서 좋은 조건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관계에서. 결혼도 그렇지만 법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책임감을 여기서 느꼈어요. 이거는 한순간 놓으면 그냥 아예 끝이니까. 뭐 과정도 없고 절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D2, 여)

“동거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뭐 생활비 같이 내고 하지만 따로따로 관리하니까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기도 어려우니까 이게 서로 상대방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조금 많이 결여되죠, 법적 혼인보다 훨씬 더.” (D3, 남)

“동거 커플들은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외도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요. 만약에 (혼인 관계에서) 내가 외도를 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하고 뭐 이혼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 그쪽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부분들이나 동거에 대한 부분들은 없

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가 뭐 좋아서, 뭐 다른 남자가 좋아서 그냥 외도하고 해도 그냥 잘 가, 살지 마, 나 갈게, 그게 땡,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진짜 가벼운 게 없는 거거든요. 서로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D3, 남)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해서도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방 여성에 대한 배려와 예의의 차원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기 자신도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언젠가는 결혼을 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혼인신고 자체를 최대한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자 하였다. 동거가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혼인은 선택지에 없었다.

“(결혼) 해야죠. 왜냐하면 뭐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진 뭐라고 해야 되나? 배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 그런 것 같고. 내 등본을 봐도 내 배우자라고 나오면 ‘아, 내가 잘해야지’, ‘내가 더 뿔 더 책임감 있게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면 난 또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또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D3, 남)

“혼인신고는 당연히 이제 최대한, 할 마음이 애초에는 없다 그랬고, 지금은 최대한 미루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라고는 하지만 그냥 애초에는 혼인신고는 안 하고.” (D2, 여)

사.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출산에 대한 인식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남녀는 이혼을 했다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거에 대해 더 부정적인 한국 사회의 인식을 체감하고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사람 자체가 가볍고, 인성이나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 후에도 결혼을 다시 못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자 없이 혼자 못 살아서 또 동거를 선택한 것처럼 여기는 시선을 받고 있었다. 주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었는데, 주변인들의 경우 완전한 타인의 비혼 동거나 출산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표현하여도 막상 가까운 지인이 비혼 동거를 선택할 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혼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이혼을 바라보는 인식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것 같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저는 (이혼보다) 동거가 더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D1, 여)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움, 남자 돈이 많아? 막 이렇게. 두 번째니까 이러거나 아니면 또 뭐 좋아서, 막 되게 좋았나 보다? 이러거나. 아니, 좋아하고 이런 거 당연히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들이 앞에 한 번 전과가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하나 때문에.” (D1, 여)

“(사회적 시선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까 봐 더 조심해야죠, 스스로.” (D2, 여)

“주변에서 바라보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제 사회생활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마이너스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사람이 되게 싫어 보여요, 가벼워 보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주변에서. 아니면 문제 있다. (웃음) 인성에 문제 있다,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문제 있다, 뭐가 문제 있다 그렇게 봐요.” (D3, 남)

아. 동거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경우에는 동거 등록 제도에 대해 생각이 매우 구체적이고 제도가 남용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도 삶의 경험을 통해 논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녀 중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보호자로서 인정받지 못한 경험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주변에서 동거 커플 사이에서 재산 상속이나 분할 문제를 본 경험도 있었다. 참여자들의 연령이 40~50대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망이나 질병 문제, 향후 부모 돌봄 문제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나이였다. 이런 부분에서 비혼 동거 커플이 서로의 법적 보호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아가 여성 참여자들은 건강보험, 세금 공제 혜택 등과 같은 경제적 혜택 또한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는 이제 (동거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병원 갔을 때 그런 게 좀 되게 속상했거든요. 잠시 (혼인을 할까) 고민도 했었고. ... 또 좀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병간호만 하다 끝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좀 웃기지만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저는 되게 필

요한 입장인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잘 활용할 것 같아요.” (D2)

“필요할 것 같아요. 아는 분도 동거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좀 그런 재산 관련해서 조금 싸우는 것도 있고,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남자가 좀 만났지 얼마 안 돼서 막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느 일정 기간 사신 분들은 법적으로 뭐 몇 프로 이상은 상속할 수 있는 걸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만 있어도 좀 안정될 것 같아요. (D1, 여)

“세금적인 부분도 당연히 공제받는 부분이랑 그리고 뭐 할 때 부부 합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꼭 왜 (그 기준이) 부부인지.” (D2, 여)

“만약에 이제 뭐 동거 커플이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보호자가 아니어서 못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상황이 있지만, 그냥 관계만,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관계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급할 경우가 있으니까.” (D3, 남)

그러나 동거 등록 제도의 적정 범위와 도입 방식에 대한 의견은 참여자 간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혜택까지 주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혼인을 선택한 사람들이 받게 될 역차별을 우려하였으며, 오히려 지금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신혼부부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해당 참여자의 경우에도 동거 커플이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차등적으로나마 비혼 커플에게도 난임시술을 지원한다든지 육아휴직을 보장해 준다든지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혜택을 준다거나 그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도 불만이 생길 것 같고. 그럴 거면 결혼을 해.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자꾸만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결국은 법적으로, 혼인 쪽으로 끌고 가야지 사실혼을 해도 법률혼처럼 인정해 주겠습니까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폐인 것 같은데요? (D3, 남)

“임신하게 되면 그때는 똑같은, 여성분한테, 임신부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현재 지금 법적으로 똑같이 제공해 줘야죠. 지금 혼인된 사람들은 그 지금 뭐지 난임시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동거 커플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D3, 남)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혜택을 아예 주지 않는 방식보다, 단계 혹은 등급별로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거 관계를 등록할 때 함께 동거한 기간 등 일정 조건을 두고 동거의 단계별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 관계를 등록하고 법적 보호자로서의 인정은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경제적 혜택의 정도는 단계별로 차등을 주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무분별한 악용을 막고, 동거 커플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필요한데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뭐 의료보험이랑 보호자 뭐 이런, 그다음에 뭐 2단계, 3단계 됐을 때는 법적으로 재산까지 할 수 있는 단계. 인증 기간이 있으면 좋고.” (D1, 여)

“첫 번째 조건은 기간이라든가 여러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보안 등급처럼 이 사람은 만약에 A만 했으면 나는 1등

급 정도밖에 못 하지만 이 사람이 C까지 다 달성을 했지만 1에서 3등급까지 중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서로 약속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켜질 것 같아요. 책임도 따르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기간 오래됐다고 무조건 하거나 아니면 또 기간 상관없이 막 선택하게 하면 제 생각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D2, 여)

동거 관계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는 사용할 때만 인증을 위한 수단이 되고, 이별 시 바로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법적·제도적으로 타인과 묶이는 것이 이후 이별 과정에서 얼마나 제약이 많이 되는지 한 번의 결혼과 이혼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따라서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많이 꺼려하고 있었으며, 등록 후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혼만큼이나 동거인과 이별 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기록에 남는 게 제일 꺼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필요한 서류 내에서 딱 인증만 되고 이제 사라지면 괜찮은데.” (D1, 여)

“사용할 때만. 그래서 이런 제도를 원하는 거죠. 법률혼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법률혼으로 하죠.” (D2, 여)

한편 동거 관계 등록 제도가 있다면 실제로 사용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을 때에는 주로 의향이 있다고 하였지만, 한 남성 참여자는 사회적 반응을 살핀 후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 여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자녀가 있어, 동거인과 법률적으로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녀. 혼인신고가 아니고 이렇게 오픈하고 싶은 거는 애가 좀 성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 뒤에 오픈하고 싶고. 법률적

으로 엮이는 것보다 좀 시간이 좀 안정적으로 관계를 오래 해서 동반자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11년은 돼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D1, 여)

제6절 소결

한국 사회에서 결혼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공유하는 방식의 동거는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동거를 하는 경우는 FGI 대상에 되도록 포함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FGI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살아보는 것을 택한 남녀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어 해당 집단 내의 세부 다양성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동거 집단을 4개의 하위 집단-현재 동거하는 집단, 과거 동거 후 현재는 혼인한 집단, 과거 동거 후 현재는 이별한 집단, 이혼 후 현재 동거 중인 집단-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현재 동거하거나 동거 경험이 있는 FGI 참가자 21명의 남녀 모두 상대방과 비혼 동거에 대해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주로 연애 과정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였다. 결혼을 염두에 두고 동거를 시작한 남녀가 간혹 있긴 하였으나, 결혼을 위한 동거가 아닌 동거를 위한 동거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참여자들이 보다 많았다. 특히 이혼 후 동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비혼 동거의 장점으로는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가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동거 후 상대방과 혼인을 하게 된 집단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동거를 통해 서로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여

결혼까지 갈 수 있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하였다.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남녀는 주로 이전 결혼과 비교하여 현재 동거의 장점을 이야기하였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관계를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게 된다는 점과 이혼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이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말하였다.

한편 비혼 동거의 단점으로는 비혼 동거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불편과 주변인들의 참견이 있다고 모두 언급하였다. 동거 후 혼인을 하게 된 집단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였기에 크게 느끼지 못한 영역이지만, 그 외 집단의 경우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점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큼의 경제적 지원 제도가 없다는 점을 큰 단점으로 꼽았다. 이혼 후 동거 중인 집단의 경우에는 나아가 재산 상속이나 부모 부양과 같은 문제에서 동거 관계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모호함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혼 동거의 단점은 정책적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는데, 공통적으로 동거인이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기를 원하였다. 이혼 후 동거 중인 참여자들은 돌봄, 주거, 보험, 재산 분할 등 다양한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현재 비혼 동거 중인 집단에서는 동거 사실을 아예 숨길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주로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에게는 동거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4개 집단의 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비혼 동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려되어 직장에는 동거 사실을 대부분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혼 후 동거 중인 참여자를 포함해 몇몇의 비혼 동거 중인 참여자들은 동거 사실을 숨기고자 직장이나 가깝지 않은 이웃에게는 동거인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자신을 ‘기혼자’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동거 중인 상대방의 가족과의 만남을 많이 가지는 편은 아니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이 아닌 동거 관계이기에 ‘며느리’와 같은 의무감을 갖지 않아도 되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하다고 언급하였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동거 상대방의 가족과 만나게 되는 경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느낄 것이 우려되어 만남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아직 동거 상태이기에 상대방의 가족과 자주 교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혼 동거 중인 참여자 대부분은 상대 동거인을 가족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서로의 관계가 연애보다는 결혼 생활에 더 가깝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느낌만 가족일 뿐, 사회적·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애도 결혼도 아닌,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관계라고 여기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주로 동거의 유형과 상관없이 동거 기간이 길수록 가족으로 더욱 인식하고 있었다.

동거를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느끼게 된 참여자도 많았으며, 이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동거를 통해 주로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성들은 반대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어 결혼 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동거 후 이별을 경험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동거가 이별의 원인이 되거나 동거를 통해 이별이 앞당겨졌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생각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별 차이를 보였다. 반면 동거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비혼 동거 경험을 통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통해 부부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졌다고 하였다. 한편 이혼

후 동거 중인 참여자들은 동거로 인해 결혼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보다는, 이전 결혼과 이혼 경험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이혼 과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는 결혼이 아닌 비혼 동거 선택과 유지의 이유가 되었으며, 특히 여성들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혼인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명의 참여자 모두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체감이 될 만큼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부정적 시선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남성들에게는 상대방과 결혼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여성들에게는 더욱 더 혼인 의향을 낮추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거 관계 등록 제도에 대한 생각은 집단별, 성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거 관계 등록 제도의 적정 범위에 대한 의견은 주로 보호자로서의 법적 권한 부여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으며, 특정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엄격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역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시에 악용의 우려와 상관없이 우선은 도입을 해야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출산율 문제도 해결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제도에 대해, 이혼 후 동거 중인 참여자들은 다른 집단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의견이 많았다. 살면서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질병으

로 인해 병원을 함께 방문하였을 때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재산 상속 및 분할, 동거인의 사망 등과 같은 문제도 많이 접하고 있었다.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세금 공제 혜택, 나아가 주거비 지원과 재산 상속 등 다양한 면에서 경제적 혜택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수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등록 처음부터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는 동거 관계를 공동 거주나 경제 공유 등을 근거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동거 경험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집단별로 FGI를 실시하였는데, 동거 생활에서 공통점도 발견되는 반면 상황에 따라 매우 특성이 다른 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결혼으로 곧 이어질 동거는 그 특성과 어려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당장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 경험자에 집중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6장

비혼 동거 관련 제도 현황과 국외 사례

제1절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에 대한 제도적 보호

제2절 주요 국가의 비혼 동거 관련 제도와 이용 경험

제3절 소결



제 6 장

비혼 동거 관련 제도 현황과 국외 사례

제1절 한국 사회의 비혼 동거에 대한 제도적 보호

1.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 현황

현재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혼인이나 혈연에 의한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주로 법률혼(일부 법은 사실혼 포함)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회보장상의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혼과 비혼 동거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비혼 동거 관계는 필요시에 사실혼 증명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비혼 동거와 관련된 법적 보호를 알아봄에 있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실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혼이 아닌 동거 관계가 포함된 법적 내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실혼 법적 보호 현황

1) 사실혼의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 법률혼은 민법에 따른 혼인을 의미하며,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고(형식적 요건),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합치되어

야 한다(실질적 요건). 그리고 혼인에 일정한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한다. 즉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혼인 연령(18세)에 달해야 하고, 혼인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 등의 금혼(禁婚) 사유가 없어야 하며, 중혼(重婚)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통설은 이러한 요건들(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 연령, 금혼 및 중혼 사유 부존재)을 모두 혼인의 실질적 성립 요건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것은 혼인신고 수리 시 고려하는 사유이고,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신고가 수리되면 혼인은 성립하고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문제가 생길 뿐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송덕수, 2022, pp.36-37). 혼인의 성립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치해야 할 ‘혼인의 의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종래 정신적·육체적 결합에 의한 부부 관계를 생기게 할 의사(실질적 혼인 의사)와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형식적 혼인 의사) 두 가지로 나누어 이해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혼인 의사는 실질적 의사이고, 신고는 그 방식에 불과하다는 ‘실질적 의사설’(윤진수, 2023, p.50)과, 혼인 의사는 신고 의사만을 말하고 실질적 의사는 혼인의 유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설’이 주장되어 왔다(윤진수, 2023, p.39). 최근에는 혼인 의사는 혼인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효과 의사라는 ‘법적 의사설’이 주장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혼인은 의사 표시와 신고의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성립된다고 한다(윤진수, 2023, p.39). 이에 대해 판례는 실질적 의사와 형식적 의사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윤진수, 2023, p.39).

한편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법률혼이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혼인 의사의 합치와 형식적 요건으로서 혼인신고를 요하는 것인 데 반해, 혼인 의사의 실질적 합치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결여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혼인신고는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결여한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법적 효

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가 없을 뿐이지, 사실상 두 사람이 부부로서 혼인할 의사가 합치하고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대법원 판례¹⁾) 사실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의 혼인 의사의 실질적 합치가 있고, 혼인신고만 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혼인신고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오늘날 사실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예전처럼 당사자들의 법적 지식(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한다)의 부족,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 등의 원인으로 법률혼을 의욕하면서도 이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혼이 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혼인에 의한 구속을 싫어해서 법률혼 자체를 의욕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혼에서의 혼인의 의사는 다르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즉 주관적인 의사의 면은 제외하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의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윤진수, 2023, pp.157-158). 그러나 판례는 사실혼의 요건으로서 혼인할 의사가 있다는 주관적 요건과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객관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윤진수, 2023, p.158).²⁾ 실제로는 객관적 동거 사실이 있으면 대체로 혼인의 의사도 있다고 보아 사실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데³⁾, 이때 동거 사실의 유무 및 장단,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

1)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등.

2)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등.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판결 등.

렸는지 여부,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윤진수, 2023, p.158).

2) 사실혼의 법적 효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혼인신고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즉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발생하고, 정조 의무도 인정되며, 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 간에는 일상 가사 대리권, 일상 가사에 대한 법률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부부간 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혼은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받아야 하므로, 제3자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거나,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간에는 친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3)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

위와 같은 민법상 효과 외에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다수의 사회보장 법제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연금법」에서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등이 인정된다고 본다.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속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시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

보험법」에서는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범위에 배우자를 규정하면서,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부 준칙으로 사실상 배우자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사실상 관계에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소득인정액 합산 단위인 ‘개별가구’의 구성원에 주민등록을 함께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포함되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은 개별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노인복지법」에서도 부양의무자 규정에서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고,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에 관해 정의하면서 부부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에 관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에 관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있지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1〉 사실혼을 규정한 입법례

법률명	관련 조문
국민 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 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공무원 연금법	<p>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p>1. 사망한 때</p> <p>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 때</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p>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p>
군인 연금법	<p>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p> <p>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p> <p>1. 사망한 경우</p> <p>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p> <p>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 경우</p> <p>4.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p> <p>5.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가 해소된 경우</p>
고용 보험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 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법률명	관련 조문
<p>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p>	<p>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p> <p>제64조(유족보상연금 지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지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 2.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다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던 유족보상연금 지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지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p> <p>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국민 건강 보험법</p>	<p>제5조(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p>
<p>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p>	<p>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p>

202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법률명	관련 조문
	<p>합한다. 이하 같다)</p> <p>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p> <p>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p>
<p>노인 복지법</p>	<p>제1조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모자 보건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p> <p>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p>
<p>주택 임대차 보호법</p>	<p>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p>

자료: 국민연금법, 법률 제19294호 (2023);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9513호 (2023); 군인연금법, 법률 제19521호 (2023);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2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928호 (202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420호 (20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 (2023); 노인복지법, 법률 제19449호 (2023); 모자보건법, 법률 제18612호 (2021);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9356호 (2023).

이와 같이 사회보장 법제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법률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수급자격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에 의해 생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권 승계도 임차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난임시술 지원 혜택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확대한 것은 이들도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고, 인공임신중절 시 동의권 부여에 있어서도 혼인 관계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동거인 규정 입법례

이어서 동거인에게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과하고 있는 입법례에 대해 검토하였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법들에서는 동거인을 친족과 함께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함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거나, 감염병법상 감염 방지 관련 지도 대상 및 건강 검진 및 예방 조치의 대상에 해당 환자 외 동거인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상 송달 상대방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표 6-2〉 동거인을 규정한 입법례

법률명	내용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p>제5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법률명	내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 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2020.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p>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20. 8.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공익 신고자 보호법	<p>제11조(인적사항의 기밀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20.></p> <p>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법률명	내용
	<p>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p> <p>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p>
행정 절차법	<p>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p> <p>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p>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886호 (20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2023);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9267호 (2023); 행정절차법, 법률 제18748호 (2022).

2.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 욕구와 필요성

2020년 비혼 동거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b) 결과에 따르면, 동거로 인해 경험한 불편으로 ‘주택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50.5%, ‘동거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경험한 적이 있다’ 50.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다’ 49.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거 생활 중 경험한 어려움에서는 ‘민간 기관(통신사,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가족 혜택을 사용하지 못

한 적이 있다' 60.4%, '세제 혜택(소득공제 등)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60.0%,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56.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불이익으로 실질적인 가족, 또는 보호자임에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동거 관계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으로 부각된 것은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65.4%)과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동일한 부모 지위 인정'(61.6%)이며,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51.9%), '사망, 장례 시 동거인을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50.2%), '부양자 인적공제 등 세제에서의 동등한 인정'(49.7%), '상속과 유족연금에서 동등한 인정'(43.2%)에 대한 내용이다(여성가족부, 2021b).

앞의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혼 동거 관계는 공적 지원이나 혜택의 측면에서 보호를 받는 것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러한 현실이 비혼 동거 실태조사에서 제도 욕구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공급 등 주거 지원 제도는 신혼부부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어서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는 법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나 돌봄 법제에서는 동의권이나 돌봄에 대한 역할을 보호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법적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어서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수술 시 동의를 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고려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법적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비혼 동거 관계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가. 의료 행위 등에 있어서 보호자 지위 인정

주거 지원이 가족으로서 받는 지원의 측면이라면, 비혼 동거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은 역할의 인정이다. 2020년 비혼 동거 실태조사 결과와 그동안의 여러 논의에서 비혼 동거 당사자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사항으로 제시한 것 중에 수술 동의 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김영정, 기나휘, 2020; 박복순, 박선영, 김영란, 정다운, 류민희, 2019; 여성가족부, 2021b).

「의료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의사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제2항에 열거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고,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 보호자 등에게 별도로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1항 단서에서 설명 및 동의 등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수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자의 법적 가족만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명시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그것을 법적인 가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행위가 누적되어 마치 법적으로 명시된 필수 절차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응급 수술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 현장의 일반적 절차대로 법적 가족의 동의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혼 동거 관계는 보호자로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지위로 남게 되며, 이때 법적 해석을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의 법적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위급한 상황이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행동일 것이다. 이러한 보호자 자격의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비혼 동거 관계의 경우 수술 등의 동의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료 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의료법」 제17조의 2에서는 처방전의 대리 수령도 법적인 가족에게만 인정되고 있어서 역시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처방전 발급 및 수령도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가능한 것이고, 대리 수령이 인정되는 것도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렵거나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비혼 동거와 같이 가족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일정한 방식의 입증을 전제로 인정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표 6-3〉 「의료법」에서 수술 등 동의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 12. 20.]

- 사행령 제10조의 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② 법 제24조의 2 제4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의 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

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령 제10조의 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4의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료: 의료법, 법률 제19421호 (2023);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나. 사망 시 장례 절차 주관

장사(葬事)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로서,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이 조례에 따라 장례 절차를 행하고 일정 기간 매장 또는 화장 후 봉안하여야 하고, 시신을 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르면, 주로 법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연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처리를 거부하여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고인과 장기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함께 생활했던 사람의 경우에도 장례 절차를 주관하지 못함으로써 고인을 애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지침에 따라 생전에 장례 주관자를 지정하게 하거나, 사후 친밀한 사람이 연고자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2조 제16호 아목 등 장례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다.⁴⁾ 이에 따르면,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실질적 친자 관계, 종래 연고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친족 관계,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면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사람, 간병, 돌봄자 등도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제2조 제16호 아목의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 예시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 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한 사람은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연고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밖에 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거나, 사전에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장례 주관자 지정제도를 통해 장례 절차를 주관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지침상의 제도로써 법률상 이들의 권리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2023년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한 사람, 사망 전에 본인이 지정한 사람이 희망한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되었다.⁵⁾ 그리고 이

4) 보건복지부, 2020 장사업무 안내, p. 210.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9호, 2023. 3. 28.]. 일부 개정의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사

내용은 '2023 장사업무 안내의 용어 정의' 부분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 p.206).

이러한 내용 변화에 따라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를 동거 상대방이 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종래 규정에 의하면 이들은 연고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도 주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2020년 이후 장례 절차 지원 제도를 통해 장례 절차를 주관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부터는 유골이나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서 연고자의 권리, 의무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3월에는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들의 애도할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주거 지원

의료 시 보호자 지위 인정이나 장례 절차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혼 동거 관계에 지위를 부여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원 및 혜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럼에도 주거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에서 비혼 동거 관계가 어떻게 포함되거나 배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주택공급

현행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서 청약 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제 적용,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인정으로 인해 비혼 1인 가구 또는 비혼 동

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거 가구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그동안 혼인 또는 유자녀 부부에게 청약이 가능했으나, 최근 규칙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택법상 주택공급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주택공급의 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공급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월납입횟수에 따라 순위 결정,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한해서 가입 기간 및 월납입횟수 외에도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추가하였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도 마찬가지이나, 일부 2주택 이상 소유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그밖에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혼인한 자를 우대하고 있어서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 1인 가구에게는 국민주택 특공이 가능하므로, 비혼 동거 커플의 경우 세대 합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유리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최근 개정⁶⁾을 통해 1인 가구도 청약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세대를 공유하는 비혼 동거 관계인 경우보다 1인 가구가 오히려 주택 청약에 있어서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1. 16.]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2021. 11. 16., 일부 개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퍼센트 이하이거나 16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단,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

〈표 6-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

조문명	내용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 2)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0조)	건설하는 주택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 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18퍼센트 범위 내에서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그렇지 않은 경우 2순위에 해당하고, 동순위에 있는 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수 많은 자, 자녀 수 같으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2)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그렇지 않은 경우 2순위에 해당하고, 동순위에 있는 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 수 많은 자, 자녀 수 같으면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4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퍼센트 범위에서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고,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2)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있어서 건설량의 19퍼센트 범위에서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없어도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추첨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다만, 단독세대주에게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공급 가능

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2) 주거자금 대출

①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대출의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d.).

②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d.).

③ 주택 전세를 위한 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그 대상이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d.).

④ 주택 전세를 위한 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 제도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다. 대출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d.).

3) 주거 지원과 혼인 상태: 결혼 패널티 논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거 지원 내용에서 신혼부부 전용, 부부의 소득 합산 금액 등 제도 이용에 있어 혼인 상태의 조건이 적용된다. 즉 결혼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상황이 제도 이용에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결혼하면 1인 가구일 때보다 각종 지원이나 복지 혜택 등을 적용받는 데 불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마치 결혼이 벌칙 같다는 뜻을 나타내어 ‘결혼 패널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송정

현, 2023.9.19.).

최근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 청년층은 1인 가구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2인 가구보다 다양한데, 주택 구입과 관련해 각자 일을 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2인 가구가 되면 기본 소득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나 청약 자격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가령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조건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혼인신고 시에는 대출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이 5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되면 소득 수준이 조건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이용에 제약이 있게 된다. 주거 마련 비용이 높다 보니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신고 전인 커플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을 가려 보고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혼인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오래가지는 않았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되었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7천만 원에서 8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되고,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6천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국토교통부, 2023.10.5.). 주거 제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6천만 원(디딤돌)/5천만 원(버팀목)으로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혼부부를 위한 소득요건은 그보다는 1천만 원씩 높지만 여전히 부부 합산으로는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과 저출산 대응 정책의 측면에서 그 조건이 상향되었다. 여기에 청약통장의 배우

자 가입 기간 합산(국토교통부, 2023.12.19.) 등의 방안까지 더해져 혼인 여부에 따라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결혼 패널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커플이 함께 생활과 주거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혼인 관계와 비혼 동거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비혼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택청약 또는 주택자금 대출 시 혼인한 부부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대하여 청약 가점제를 적용하거나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를 공유하는 비혼 동거 커플에게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적 결혼이 오히려 주거 지원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를 본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1인 가구 대상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고, 주택자금 대출에 있어서 부부간 소득합산 금액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보다 일정 부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소되고 있고, 비혼 동거 커플은 실제 2인이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커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족의 변화와 시대를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관점에서 시행되는 주거 지원 정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저리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국토교통부, 2023.12.27.)으로, 비혼 동거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결혼과 출산의 연관성과 순서가 중요하게 여겨져 온 한국 사회에서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제도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삶의 방식 선택에 대한 존중과 가족의 다양성 인정의 측면에서라기보다 현재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비중으로 반영된 제도로 볼 수 있다.

제2절 주요 국가의 비혼 동거 관련 제도와 이용 경험

이 절에서는 시민연대계약이나 동반자등록제 등 동거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국외 사례는 기존의 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비혼 동거 관련 제도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국외 사례 검토를 통해 어떠한 보호 수준의 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동거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거나, 결혼과 비교해 매우 유사한 자격을 주거나 결혼보다 더욱 가벼운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도는 프랑스의 ‘연대의무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이다. 이 제도는 결혼과 약간 차이가 있으며 동거 관계 제도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제도이고, 비혼 출산 논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 프랑스 PACS 주요 내용과 이 제도를 사용한 시민의 경험을 파악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본다.

프랑스 PACS 이외에는 결혼에 가까운 제도라고 볼 수 있는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Partnerschapsregistraties)’와 결혼보다는 단순 동

거 관계 증명에 가까운 형태의 제도인 벨기에의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를 살펴본다. 주요 내용은 제도의 도입 배경, 제도의 사용 현황 및 관련 통계, 그리고 제도의 보호 내용 및 범위를 중심으로 한다.

1. 프랑스 연대의무협약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⁷⁾

가. 프랑스 연대의무협약(PACS) 도입 배경

PACS⁸⁾가 제정되기 전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동성 커플(couples homosexuels)에 대한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상 및 보수성으로 인해 동성 커플의 제도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Fulchiron & Mallauris, 2006, p.177).⁹⁾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파기원의 1989년 7월 11일과 1997년 12월 17일의 판결을 통해 변화되었다. 해당 판결에서는 동거(concubinage)¹⁰⁾중인 당사자와 관련하여, 공동 생활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동거인의 자격을 부정하였는데, 문제는 동거나 동거당사자와 관련한 어떠한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원이 동거인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자격을 확정하게 되자, 입법적 흠결이라는

7) 본 소절은 ‘안문희. (2012).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PACS?’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함.

8) PACS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시민연합계약(contrat d’union civile)이나 공동이익협약(pacte d’intérêt commun) 등의 이름으로 불렸으나 최종적으로 연대의무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되었다(안문희, 2012, p.204).

9) 80년대 후반 프랑스 사회에서는 인권 및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운동과 동성 커플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을 결부시키던 시기가 지나면서 평등과 인류애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한 동성 커플에 대한 어떠한 지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Fulchiron & Mallauris, 2006).

10) concubinage는 동거나 사실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사실혼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법률혼과 유사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어 프랑스의 concubinage를 동거로 번역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 제기되었고,¹¹⁾ 해당 판결을 계기로 동성 커플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프랑스 사회에서 시작되었다(Courbe, 2009, p.261).

프랑스의 PACS 제도는 'PACS에 관한 1999년 11월 15일 법'¹²⁾을 통해 제정되었고 다음 날인 1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프랑스에서 PACS가 도입된 이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안문희, 2012, p.203 재인용).

우선 외부적으로 당시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이 동성 커플에게 혼인을 인정하거나 혼인과 유사한 형태의 결합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14개의 유럽 국가가 동성 커플의 결합을 제도화, 입법화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1989년), 노르웨이(1993년), 스웨덴(1994년), 아이슬란드(1996년)는 동성 커플에게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최초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을 허용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2003년), 스페인(2005년), 스웨덴(2009년), 포르투갈(2010년)도 동성혼 제도를 신설하였다(Pintens, 2000, pp.69-74; Nuytinck, 2000, pp.72-73; 안문희, 2012, p.203 재인용). 이와 같은 주변 유럽 국가의 동성 커플에 대한 제도화 또는 동성혼의 신설이 프랑스 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 내부적으로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혼인율 감소와 함께 자유로운 결합(union libre: concubinage)인 동거율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Fulchiron & Mallauris, 2006, p.177; Courbe, 2009, p.261; 안문희, 2012, p.203 재인용).

정리하면 PACS의 도입 배경은 다른 유럽 국가의 동성 커플의 결합에

11)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압력단체를 통한 언론 공세에 굴복한 정부에 의해 제기된 법안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Catala, 1999, p. 63; Fulchiron & Mallauris, 2006, p. 177; 안문희, 2012, p.203 재인용).

12)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대한 제도화 또는 동성혼의 신설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부모 세대를 통해 복잡한 이혼 절차, 이혼의 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직접 본 현세대의 혼인에 대한 기피 경향으로 인해 감소하는 혼인율과 증가하는 동거율이라는 내부적 요인의 결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Grimaldi, 2003, pp.813-824).

나. 프랑스 연대의무협약(PACS) 사용 현황 및 통계

1999년 11월 15일 PACS 제도 제정 당시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Beigner, 1999, p.31; 안문희, 2012, p.224 재인용),¹³⁾ PACS 시행 이후에는 프랑스 사회에서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Molfessis, 2000; 안문희, 2012, p.202 재인용).

아래 <표 6-5> 프랑스의 PACS와 혼인의 추이를 보면 1999년 11월 16일부터 PACS 제도가 시행된 이후, PACS(건)수와 혼인(건)수는 1999년 6,151건과 293,544건, 2000년 22,271건과 305,234건, 2001년 19,629건과 295,720건, 2002년 25,305건과 286,169건, 2003년 31,570건과 282,756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동성혼이 허용된 2013년에도 PACS는 168,693건, 혼인은 238,592건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Insee, n.d. a).

2008년부터 혼인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PACS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혼인은 244,000건 PACS는 192,000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PACS 시행 초기 PACS 수가 전체 혼인 수의 약 10% 정도였으나

13) PACS의 제정 당시의 우려와 논란에 대해 한 법학자는,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공동 생활의 향유와 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인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사회의)쇠퇴나 몰락(décadence)이 아닌 정의(justice)의 표시이다”라고 기술했다(Beigner, 1999, p.31; 안문희, 2012, p.224 재인용).

222 한국의 비혼 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2022년에는 약 90%에 이르고 있다(Insee, n.d. a). 그리고 전체 PACS 커플에서 동성 커플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0년 4.5% 정도에서 2020년은 5.2%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프랑스에서 동성혼이 허용된 이후에도 동성 PACS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동성혼 또한 평균적으로는 매년 약 7천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Insee, n.d. a).

〈표 6-5〉 프랑스 혼인 및 PACS 건수: 1999~2022

(단위: 건)

연도	혼인			PACS		
	전체	이성	동성	전체	이성	동성
1999	293,544			6,151	3,551	2,600
2000	305,234			22,271	16,859	5,412
2001	295,720			19,629	16,306	3,323
2002	286,169			25,305	21,683	3,622
2003	282,756			31,570	27,276	4,294
2004	278,439			40,080	35,057	5,023
2005	283,036			60,462	55,597	4,865
2010	251,654			205,550	196,405	9,145
2011	236,826			152,213	144,714	7,499
2012	245,930			160,690	153,715	6,975
2013	238,592	231,225	7,367	168,692	162,609	6,083
2014	241,292	230,770	10,522	173,731	167,469	6,262
2015	236,316	228,565	7,751	188,947	181,930	7,017
2016	232,725	225,612	7,113	191,537	184,425	7,112
2017	233,915	226,671	7,244	195,633	188,233	7,400
2018	234,735	228,349	6,386	208,871	200,282	8,589
2019	224,740	218,468	6,272	196,370	188,014	8,356
2020	154,581	149,983	4,598	173,894	165,911	7,983
2021	218,819	212,413	6,406	209,461	199,651	9,810
2022	244,000	237,000	7,000	192,000	182,000	10,000

자료: Insee. (n.d. a). 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2,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에서 2023. 1. 17. 인출.

정리하면, PACS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PACS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0년 이후로는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약 20만 미만의 (건)수를 유지하고 있다. PACS 사용에서 동성 커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현재는 전체 PACS 체결 중 약 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 동성혼이 허용된 후부터 동성 혼인은 매년 약 6천 내지 7천 건으로 전체 혼인의 약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 프랑스 연대의무협약(PACS) 주요 내용

프랑스의 PACS 제도는 1999년 11월 15일 법을 통해 제정된 후, 2006년 6월 23일, 2007년 3월 7일, 2009년 5월 12일, 2009년 11월 24일, 2010년 6월 10일, 2016년 11월 18일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 과정에서 혼인과 매우 유사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PACS의 성립 요건, 효과 및 해소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성립 요건

PACS는 공동 생활을 위한 동성 또는 이성인 2인의 성년에 의해 체결된 계약(contrat)이므로(프랑스 민법 제515-1조),¹⁴⁾ PACS를 체결하고자 하는 각 당사자는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로¹⁵⁾ 공동체 또는 생활 공동

14) PACS의 법적 성격의 모순되고(paradoxale) 불확실한(incertaine) 상황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1999년 11월 9일 결정(n° 99-419 DC du 09 novembre 1999)을 통해 PACS가 동일한 성별 또는 다른 성별의 성인 2인의 공동 생활을 위한 특수 계약(contrat spécifique)으로, 준혼인 관계(quasi-conjugalit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Granet-Lambrechts, 1999, p. 99; 안문희, 2012, p. 207 재인용)

15) 헌법재판소는 PACS에 대한 동의는 프랑스 민법 제1109조 및 이하 규정의 동의에 관한

체의 성립 및 영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¹⁶⁾ PACS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PACS는 취소될 수 있으며(프랑스 민법 제515-1조), PACS 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프랑스 민법 제515-2조 제1호)이거나 PACS 당사자 일방의 혼인(프랑스 민법 제515-2조 제2호) 또는 PACS(프랑스 민법 제515-2조 제3호)인 경우에는 성립된 PACS는 무효이다(안문희, 2012, p.209)

PACS를 체결하고자 하는 성년 2인은 공동 거소 관할의 주민센터(동사무소)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공동으로 신고함으로써 PACS가 성립되며, PACS 당사자는 PACS 신고 시에 자신들이 작성한 협의서를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신분등록공무원은 PACS 신고를 등록하고 신고에 대한 공고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3조 제1항 및 제3항).¹⁷⁾ 공동 거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의 거소 관할의 동사무소에 신고한다(프랑스 민법 제515-3조 제2항). PACS를 신고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협의서는 공증인¹⁸⁾을 통해서도 작성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계약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PACS 일방의 착오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PACS에 대해 동의한 경우, PACS는 무효이며, 사기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Paris, 9 novembre 2006, JCP 2007.I.170, n° 7)로도 무효가 가능하다(안문희, 2012, pp. 208-209).

- 16) 이러한 의사나 목적을 결여한 경우에는 PACS가 무효가 된다(안문희, 2012, pp. 208-209).
- 17) 개정 전에는 거소의 관할 법원에 PACS를 신고했으나(안문희, 2012, p.208), 법원 업무의 간이화를 목적으로 하는 ‘21세기 법원의 현대화에 관한 2016년 11월 18일 법(Loi n° 2016-1547 du 18 novembre 2016 de modernisation de la justice du XXI^e siècle)’을 통해(안문희, 2017a, pp.329-330), 기존의 법원 업무가 신분등록공무원이나 공증인에게 위임되었다.
- 18) ‘공증인의 지위에 관한 1945년 11월 2일 법규명령’ 제1조는 “공증인은 문서 및 계약의 당사자들이 공공기관의 문서가 가지는 공증력을 사인 당사자들이 체결한 문서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에 해당 문서를 접수한 후, 작성 및 계약의 체결일을 확인하고 해당 문서나 계약의 보존, 등본의 발급 및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부동산의 매매 및 증여, 저당권 설정, 부부재산계약, 부부간 증여, 사망 시의 소유권변경 등의 법률 업무나 세금과 관련해 공증인의 공증은 의무사항이다(안문희, 2017b, p.239).

PACS 신고도 해당 공증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분등록공무원과 마찬가지로 PACS 신고에 대한 공고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3조 제5항 및 제6항).¹⁹⁾

PACS 신고를 통해서 당사자 각자의 출생증명서에 PACS 사실 및 상대방의 신분 사항이 기재되며, 만약 PACS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다(프랑스 민법 제515-3-1조 제1항). PACS 성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PACS가 신분등록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등록한 날부터이며, 제3자에 대해서는 공고 절차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부터이다(프랑스 민법 제515-3-1조 제2항).

2) 효과

파기원은 PACS의 당사자를 가족 구성원(membre de la famille)으로서 인정하지만,²⁰⁾ 혼인의 효과로 발생하는 배우자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 PACS 당사자를 보지 않으며,²¹⁾ 혼인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상속과 인척 관계는 PACS 당사자에게는 배제되므로 PACS와 혼인은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이다(안문희, 2012, p.207). 따라서 혼인의 결과인 상대방의 성(姓)으로 변경하는 경우나 인척 관계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PACS는 혼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며, PACS의 효과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상호적 의무를 부담한다(안문희, 2012, p.210).

① 비재산적 효과

PACS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 의무를 부

19) 프랑스 공증인의 지위 및 업무에 관해서는 안문희(2017a) 참조.

20) Civ. 2e, 25 mars 2005, Bull. civ. II n° 144 ; RTD civ. 2004.489, obs. Jean HAUSER; 안문희, 2012, p.207.

21) 선거명부의 배우자 등록에 관한 판결: Civ. 2e, 5 mars 2008, n° 08-60230, Droit de la famille, 2008.51, obs LARRIBAU-TERNEYRE; 안문희, 2012, p.207.)

담하게 된다. 동거 의무는 사실상 프랑스 민법 제515-1조 및 제515-4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동 생활을 근거로 하며, 헌법재판소는 PACS의 성립 목적인 공동 생활에 대해서 PACS 당사자의 동거 의무가 내포된 '이익 공동체'로 이해한다고 판시했다(안문희, 2012, p.213). 프랑스 민법 제515-4조가 규정하는 부양 및 협조 의무에 따라서 PACS 각 당사자는 상호적으로 경제적 부양 및 협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며, 협의서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경제적 의무를 부담한다(프랑스 민법 제515-4조 제1항)(안문희, 2012, pp.213-214).

PACS 당사자에게도 정조 의무가 요구되는데, 헌법재판소는 PACS 두 당사자의 결합 및 공동 생활은 육체적 결합도 전제된 것이라고 판시했다.²²⁾

② 재산적 효과

PACS 당사자는 PACS 신고 시에 제출하는 협의서를 통해 일상 가사 비용의 액수, 채무와 관련 사항 및 재산의 공동 부분에 관한 재산과 관련 세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일상 가사에 대한 PACS 당사자의 공동 부담을 제외하고는 채무 또한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안문희, 2012, pp.214-215). PACS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재산제에 관한 어떠한 협약도 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법정 재산제는 별산제가 되므로, PACS 체결

22) 프랑스 민법은 PACS 두 당사자 사이의 정조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2002년 판결을 통해 PACS 당사자에게 프랑스 민법 제1134조가 규정하는 모든 계약의 이행에서 요구되는 선의 또는 연대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시했으며(TGI Lille, Ord. 5 juin 2002, Dalloz, 2003, p. 515), 2006년의 PACS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조 의무를 당사자 서로에 대한 존중, 즉, 신뢰를 협조 의무의 연장으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혼인의 해소로써 요구되는 이혼을 PACS에 있어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PACS 당사자 사이에서 정조 의무의 문제는 사법상의 해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 배상에 있어서도 제한된다. PACS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육체적 관계의 의무(devoir charnel)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육체적 관계에 대한 의무가 한편으로는 프랑스 민법 제515-2조의 PACS 무효 규정을 통해 당사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 민법 제515-1조가 규정하는 공동 생활의 개념은 '공동 거소', 즉 '커플로서의 생활'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포함하는, 전제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안문희, 2012, pp.213-214).

전에 각 당사자가 취득한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서 각자의 소유로 각자가 관리, 처분, 수익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PACS 중에도 마찬가지로 형성, 상속 또는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가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5조 제1항)(안문희, 2012, pp.216-217). PACS 신고 당시 제출한 협의서나 협의서의 변경을 통해서 PACS 체결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두 당사자가 절반의 권리를 가지는 공유제를 선택 및 지정할 수 있으며, 협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PACS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운용 및 관리를 하게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5-1조)(안문희, 2012, p.218). 그리고 PACS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가지며, 당사자들의 생활 수준에서 명백히 지나친 소비인 경우에는 일상 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프랑스 민법 제515-4조 제2항)(안문희, 2012, p.215). PACS 당사자는 PACS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공유로 간주되어 PACS 당사자 각자에게 절반씩의 권리가 인정된다(프랑스 민법 제515-5조 제2항)(안문희, 2012, p.222).

③ 자녀에 대한 효과

PACS 지속 중에 출생한 자녀에게는 혼인에 따른 친생자 추정(프랑스 민법 제312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안문희, 2012, pp.211-212). 따라서 PACS 당사자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임의 인지나 친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신분 점유(possesion d'état)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안문희, 2012, p.212).

PACS 당사자는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통해서 인지가 가능하며, 자녀의 출생 전에도 부(父)는 인지할 수 있는데, 이때 자녀는 부(父)의 성(姓)을 따른다. 이와는 달리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후에 인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모(母)의 성을 따르게 된다.

PACS 제정 당시에는 당사자 2인이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입양 개정에 관한 2022년 2월 22일 법²³⁾을 통해 PACS 당사자 2인에 의한 공동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PACS 당사자를 위해 인공수정(procréation médicale assistée)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적 사항도 규정하지 않았지만, 생명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²⁴⁾을 통해 PACS 당사자에 대해서도 허용되었다.

3) 해소²⁵⁾

① 해소의 원인

PACS의 당사자 일방의 사망 또는 혼인으로 PACS는 자동적으로 해소되며, PACS의 해소 시점은 사망 또는 혼인하는 날이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1항). 이와는 달리 PACS의 당사자는 협의 또는 단독으로 PACS를 해소할 수도 있다(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3항).

먼저 사망이나 혼인을 원인으로 PACS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2016년 11월 18일 개정 전에는 PACS 해소를 법원에 신고해야 했으나, 해당 개정을 통해서 혼인신고 또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PACS 신고를 담당할 공증인 또는 신분등록공무원은 PACS 해소를 위한 공고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2항).

PACS의 당사자는 협의 또는 단독으로도 PACS를 해소할 수 있다. 먼저 PACS 해소에 협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2인이, 일방적 해소인 경우에는 당사자 1인이 PACS 신고지의 신분등록공무원 또는 PACS 신고를 담

23) Loi n° 2022-219 du 21 février 2022 visant à réformer l'adoption.

24)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25) '안문희. (2012).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PACS?' 연구의 pp. 218-223을 중심으로 정리함.

당한 공증인에게 PACS 해소 의사를 전달하고(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4항 및 제5항), PACS 해소를 전달받은 신분등록공무원 또는 공증인은 해당 사실을 등록하고 공고 절차에 착수한다(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6항). 해소의 효과는 PACS 해소 사실이 등록된 날이 기준이 된다(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7항).

② 해소의 효과

PACS 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 1년 동안 남은 상대방의 거주권은 주택 임차계약으로 보호되며, 임대료는 사망한 PACS 당사자의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구 및 일상생활에 사용되던 동산에 대한 권리 또한 가진다. PACS 당사자는 혼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PACS 당사자들 사이의 유언이나 증여는 인정되므로 사망한 PACS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유증을 한 경우, 상대방은 수증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과세에 있어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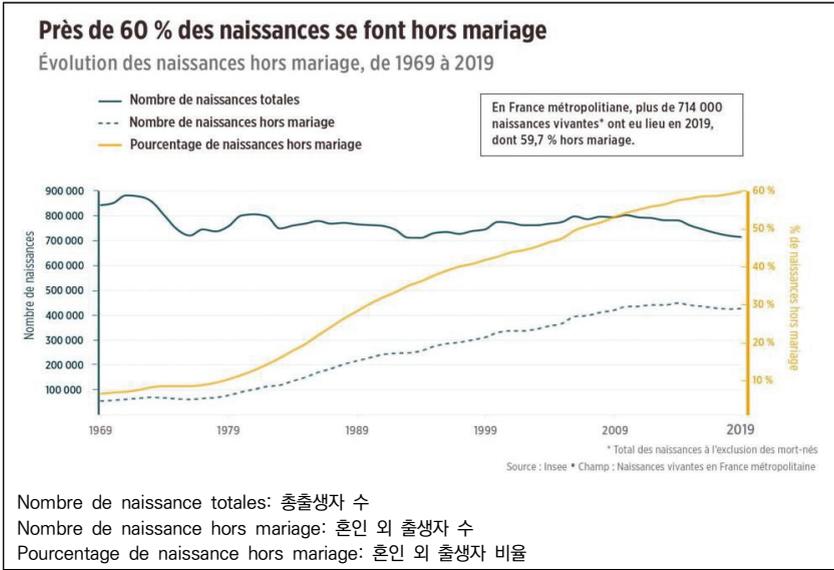
PACS 당사자 대다수에게 별산제가 적용되며, 만약 누구에게 속한 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PACS 각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안문희, 2012, p.222). PACS 당사자 2인은 PACS 체결로 인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청산에 착수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PACS 해소에 따른 재산상의 효과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515-7조 제10항)(안문희, 2012, p.222).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다.

라. 프랑스 연대의무협약(PACS)의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PACS 제도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PACS 건수가 혼인 건수의 약 90%라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PACS 제도 또한 준혼인이나 소혼인 등으로 그 법적 성격이 규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 의사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상속권의 불인정 등과 같은 혼인과 구분되는 몇 가지 큰 특징을 가진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대안으로서 프랑스의 PACS 제도와 같은 자유로운 결합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저출산을 극복 하자는 취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김병규, 2023. 6. 20.) 프랑스에서는 PACS 제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어떠한 견해나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PACS와 출산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에서는 PACS 제도의 시행 이후에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혼인 외 출산율의 증가를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는 PACS 시행 전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PACS 제도 도입으로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아래의 [그림 6-1] 혼인 외 출생자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혼인 외 출생자 수는 PACS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급격한 변화 없이 PACS 시행 이전과 유사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사회의 PACS 제도 도입 이유가 증가하는 동거율과 감소하는 혼인율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프랑스 사회에서 PACS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출산율 제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1] 프랑스 1969년~2019년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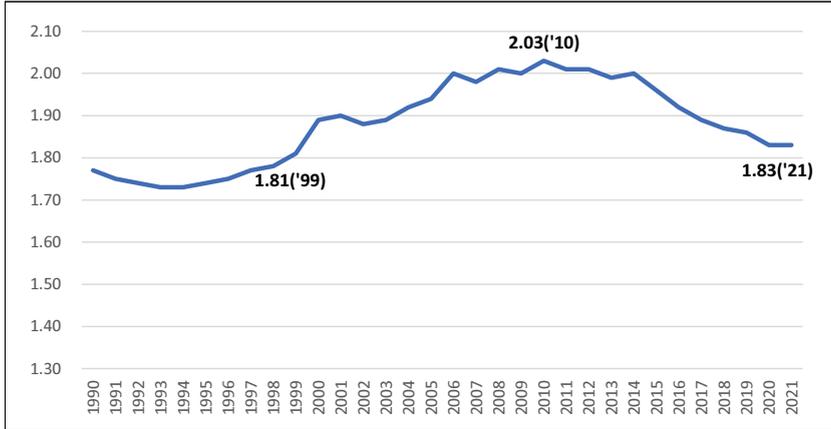


자료: Audrey Freynet. (2020. 10. 1.) "Naissances en France: hors mariage et plus mixtes" Le Point. https://www.lepoint.fr/societe/naissances-en-france-hors-mariage-et-plus-mixtes-01-10-2020-2394527_23.php에서 2023.6.14. 인출

아래 [그림 6-2] 프랑스 전체 출산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PACS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전부터 이미 출산율이 약간 상승하고 있었고, 이후에 더 상승하였지만 다시 하락하여 현재 PACS 시행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8~39세 PACS 커플 중에서는 절반 정도 자녀가 없는 반면, 혼인한 부부 중에는 15%만이 자녀가 없어 혼인 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보다 PACS 체결한 커플 중에 자녀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아서(Insee, n.a. b) PACS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기도 하였다(박준혁, 2022).

[그림 6-2] 프랑스 출산율 추이

(단위: 명)



자료: The World Bank. Fertility Rate, Total.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dsid=2&series=SP.DYN.TFRT.IN>에서 2023.6.14. 인출.

마. 프랑스 연대의무협약(PACS) 이용 경험

프랑스 PACS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 또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알려졌다. 따라서 프랑스 PACS 제도의 내용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주로 알려진 제도 소개 이외에 실제로 프랑스 사회에서 이 제도를 사용해 본 경험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PACS 사용이나 동거 경험이 있는 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의 PACS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인터뷰 방식은 온라인 미팅과 직접 만남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이면서 동거나 PACS 경험이 있는 1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인터뷰 대상은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이지만 국적은 프랑스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례도 포함해 한국과 프랑

스 사회와 문화를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PACS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표 6-6〉 PACS 및 동거 경험 인터뷰 대상

구분	성별	연령	PACS 및 동거 경험	현재
1	여	27	2021년 12월 PACS	PACS
2	여	38	2019년 연애 시작 2020년 7월 PACS	PACS
3	여	30	2017년 연애 시작 2020년 6월 동거 시작 2021년 2월 PACS	PACS
4	여	31	2022년 8월 동거 시작 2022년 12월 PACS	PACS
5	여(6과 PACS)	26	2022년 6월	PACS
6	남(5와 PACS)	31	2022년 6월	PACS
7	여	38	9년간 동거	동거→이별
8	여	40	2017년 7월 PACS 2019년 5월 결혼	PACS→결혼
9	여	48	2018년 5월 PACS	PACS
10	여(11과 PACS)	28	2020년 4월 연애/동거 시작 2021년 4월 PACS	PACS
11	남(10과 PACS)	22	2020년 4월 연애/동거 시작 2021년 4월 PACS	PACS
12	남	27	4년간 동거 후 PACS PACS 후 해지	PACS → 해지

자료: 필자 작성.

1) 프랑스의 동거, PACS, 결혼: 커플 생활 방식 선택의 자유로움과 가족 다양성 인정

프랑스에서는 커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한국보다 다양하다. 동거, PACS, 결혼에 대한 구분이 제도적으로는 분명하겠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았다. 타인이 선택한 커플 생활 방식이나 가족 형태에 편견이 없는 만큼 개인의 선택이 매우 자유로울 수 있다.

“프랑스 사람들 사고방식 자체가 꼭 남녀 관계 종착역이 무조건 결혼이어야 된다는 관점이 많이 없는 사회라서 그런지 저는 차이를 많이 못느꼈어요. 제가 이 친구랑 단순히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단계일 때와 지금 제가 PACS를 했을 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됐을 때도 저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참가자 1)

“결혼을 안 했는데 동거하는 커플이다, 결혼을 안 했는데 여자친구를 집에 들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는 연애를 하고 서로 잘 맞으면 같이 사는 것도 자연스럽고 같이 살지 않는 것도 그 커플의 사정이고, PACS를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합의가 됐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선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참가자 4)

“어떤 가족의 모습이어도 사생활이 존중되는 것 같아요. 혼외 자식이나 어떤 케이스로 태어날지라도 가족이면 가족인 거죠. 만약에 모임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 모여서 재밌게 식사하면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왜 장가를 안 가니, 왜 동거를 하니 이런 것들이 오고 가지 않고 딱 그 시간만 모여서 보내요.”(참가자 8)

“가족 형태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PACS를 하든 다 선입견 없어요. 다른 프랑스 사람들도 선입견이 없는 것 같아요.”(참가자 11)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참가자 사례들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은 가족이나 개인 상황에 대한 관심이 적고, 있더라도 내비치지 않는 특성을 한국과 다르게 보았다. 그만큼 개인의 삶에 집중하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인식적인 특성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고 살 수 있는 프랑스 사회를 만든다고 보았다.

“프랑스에 와서 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은 항상 뭔가 남하고 비교하고 재는 뭐 어떻게 저렇게 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 좀 초라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어떤 특권층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를 크게 느끼지 않아서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 같아요.”(참가자 9)

“프랑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가족 형태가 있고, 미혼모/미혼부 가정도 있고, 동거 커플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게이 커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그래, 그렇구나 이 정도예요. 근데 한국은 조금만 우리가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면 뭐야, 재네 엄마가 둘이래, 아빠가 없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가만히 두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선, 그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참가자 10)

동거는 연애를 시작하면 하는 경우가 흔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연애 과정으로 이해된다.

“동거를 꺼리는 분위기는 거의 0%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좀 진지한 관계로 들어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참가자 3)

“솔직히 동거 자체를 개념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이랑 동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나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구나, 정말 그 정도인 것 같아요.”(참가자 5)

기본적으로 PACS가 개정을 통해 제도 내용 측면에서도 결혼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지면서 PACS와 결혼에 대한 인식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제도적으로 구분해 보면 PACS가 결혼과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PACS를 선택한 이유나 상대와의 관계는 커플마다 편차가 클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체감은 PACS가 동거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고 결혼에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는 제도로 보인다.

“저는 동거에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PACS를 하면 만약에 헤어질 것 같거나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PACS 깰 거다 하고 신고하면 그만이고, 세금 신고를 같이한다는 점이 생기는 하지만 그거 외에는 결혼처럼 법적인 구속력, 법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동거인데 조금 더 틀을 갖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참가자 3)

“PACS랑 결혼을 같은 바운더리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가족들이 대하는 걸 봐도 결혼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요.”(참가자 2)

“동거와 PACS는 차이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동거는 그냥 같이 사는 거고, PACS는 아예 법적으로는 인정을 받으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 PACS는 결혼에 훨씬 가까워요. 프랑스에서는 결혼식을 아직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혼 얘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좀 종교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참가자 5)

“정책적으로는 결혼에 가까운 것 같고, 둘 사이에서는 그냥 연애에 가까운 것 같아요.”(참가자 6)

“PACS 했다가 한참 지나서 결혼하는 친구도 있고, PACS 한 상태로 결혼하지 않고 계속 커플인 친구도 많아서 결혼 전 단계인지 결혼을 대신하는지는 커플마다 다른 것 같아요.”(참가자 7)

“커플마다 다를 텐데 저희는 결혼에 가까워요. 애초에 공부 마치고 결혼 해야겠다 해서 PACS 한 거라 PACS가 약혼의 의미였고, 굳이 따지자면 약속과 약혼의 사이인 느낌이에요. 현재는 프로포즈도 받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 더 가까워요.”(참가자 10)

동거, PACS, 결혼에 대해 차이점은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호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제도상 구분되어 있는 보호의 내용과 다분히 형식적인 측면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그리고 재산 분할의 이유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 보였다.

“프랑스에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결혼은 아직도 약간 로맨틱한 개념이 있기는 한데 PACS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로맨틱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 처리나 재정 처리 같은 부분의 성격이 강해서 약간 결혼으로 가기 전 단계로 취급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요. ... 결혼과 PACS, 동거 차이는 주로 제도적인 면에서의 차이,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거만 할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거일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없고 아이를 낳았을 때 주 양육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전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집을 같이 살 경우에 오랫동안 그냥 동거인 채로 지내다가 집을 같이 사기 위해서 PACS 한 커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또 PACS랑 결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유산 상속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결혼은 이미 제도상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법적 보호가 되는데, PACS를 할 경우에는 더 서류 처리를 해야지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참가자 7)

“PACS 하다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PACS는 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 결혼은 시청에 가서 하는 그 차이가 있긴 하죠.”(참가자 8)

“동거는 그냥 프랑스에서는 커플이라면 거의 같이 살기 때문에 대부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PACS 같은 경우에는 아무하고나 PACS를 하진 않으니깐 거기에 조금 더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고, 결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계를 확실하게 오피셜하게 정립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커플들 보면 보통 아기를 가질 계획이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가족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어떤 자기들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헤어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 커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는 나이가 스물두 살 될 때까지 부모님이 결혼 안 하시고 PACS도 안 하시고 그때까지 그냥 사셨는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자기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냐고 했더니 재산 문제 때문에 결혼하게 됐다고 했어요. 결국 나중에 재산 깔끔하게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참가자 10).

“저희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결혼을 하셨는데 집 때문에 결혼을 하신 거거든요. 당시 어머니가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구입을 하셨는데 아버지한테도 지분을 반 주시고 싶어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참가자 11)

PACS의 법제도적으로는 그 내용이 결혼과 유사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결혼과 동거, PACS 등에 대한 구분을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이 어떠한 형태인지 관심을 갖거나 시선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나 PACS 커플의 출산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프랑스에서는 사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도 또 그런 또 법적 보호를 다 받거든요. 그런 거라서 미혼모가 낳아도 그렇고 다 동일해요. 그래서 PACS를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저 아

이 부모님은 결혼을 안 했는데 태어났대'라는 그런 손가락질도 전혀 없고, 상관 안 해요.”(참가자 4)

“결혼 안 했어도 PACS를 안 했어도 아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차별은 절대 안 해요. 오히려 그냥 좀 자유롭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결혼이나 PACS를 안 했는데 아기 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혼인신고나 PACS 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참가자 5)

“저희 고모 커플이 애가 셋이고,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PACS 하고 살아요. 프랑스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아기 없이 사는 커플보다 동거만 해도 아기를 가지는 커플이 훨씬 더 오피셜하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혼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란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란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거니까요. 둘이 어떤 생명을 새로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공식적이고 더 커플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참가자 11)

“동거나 결혼이 출산이란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상태든 아이 낳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누나 같은 경우에도 남자친구랑 그냥 동거인 상태로 애를 낳았어요. 제 사촌의 경우에는 남자친구랑 아이 낳은 다음에 그 아이 아빠랑은 헤어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지금은 새로운 분이랑 PACS를 하고 둘 사이 또 애가 생겼어요. 개인적인 그런 상황은 애를 낳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참가자 12)

2) 프랑스 결혼(식) 문화와 PACS

프랑스에서도 결혼식을 파티 형식으로 정성들여서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바로 안 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물론 프랑스에서 결

혼한다고 해서 모두 성대한 것은 아니다. 동거나 PACS보다 결혼을 대부분 하는 상류층의 매우 성대한 결혼식도 있고,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돈이 많이 드는 피로연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식의 결혼도 있다. 그러나 대중적인 경우, 결혼을 하게 되어 피로연과 세레모니를 제대로 하려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정말 성대하게 하고 싶은 커플이고, 결혼은 안 하고 왜 같이 사니 이런 물어보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그냥 둘이 살아요. ... 결혼식은 조금 비싸요. PACS는 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결혼은 식이 필요해요. 시청에 가서 그냥 청바지 입고 해도 돼요. 시청 결혼식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 끝나고 오후부터 새벽까지 하는 파티가 있거든요. 대부분 신랑 신부가 손님에게 부담하는 파티라 결혼은 비용 부담감이 좀 크죠. 그래서 다른 친구도 결혼을 성대하게 하고 싶어서 일단 PACS 먼저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화려하게 결혼식을 할 거다라는 친구도 있어요.”(참가자 1)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면 한 3시간 동안 결혼식 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는 정말 크게 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들어요. 엄청 큰 장소를 빌려서 150명 정도 초대해서 밤새 놀고 한 이틀 동안 해요. 그래서 돈이 훨씬 많이 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결혼할 거면 제대로 하자거나 결혼식도 좀 크게 하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참가자 5)

“결혼이라는 게 일단 약간 재정적으로 무서운 게 있어요. 결혼식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1만 유로에서 1만 5천 유로 정도를 써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헤어질 때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할 때는 결혼식 할 때보다 더 비용을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참가자 7)

“상류층도 여러 층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상류층이라고 하면 보수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이라 집안 자체에서 동거 하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건 드물죠. 제 친구가 돈도 있고 보수적인 집안끼리의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시청에서 한 다음에 성에서 피로연하고 결혼식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프랑스 전통적인 결혼식을 한 거죠. 돈이 꽤 많이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계층 간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라기보다 어떤 결혼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한 친구는 결혼을 시청에서만 했어요. 시청에서만 했다는 거는 한국으로 치면 구청 가서 혼인신고서만 낸 거랑 똑같은데, 프랑스가 다른 거는 주례를 시장님이 서주시고 사진도 찍고 손님도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한국보다는 성대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거고 큰돈 들이는, 한국으로 치면 웨딩홀에 가서 피로연을 하거나 이런 건 안 한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해요.”(참가자 10)

“프랑스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같이 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집이 비싸서 못 구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할 거면 세레모니 자체에 드는 돈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그래요.”(참가자 12)

3) 프랑스 거주 외국인과 PACS

프랑스인과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만난 커플인 경우는 PACS 체결에 있어 비자, 체류증 발급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PACS로 인한 체류증(Carte de séjour)은 VPF(vie privée et familiale: 사생활 및 가족 생활)에 따른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프랑스 행정부 홈페이지, n.d.). 단 PACS를 통해 체류증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프랑스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PACS를 해소하면 해소 전에 발급 받은 비자의 기간만큼은 문제 없지만, 그 후는 다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PACS를 이용하는 커플이면 국적으로 인해 떨어
져야 하는 상황을 막는 기능으로 커플에게 중요한 공동 생활을 보호하는
제도의 장점이다.

“비자 문제를 점점 검색해 볼수록 PACS 하면 생각보다 더 간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이유로 PACS 한 커플 많은지 질문) 정말 많아
요. 저랑 같은 신분에 필리핀에서 온 친구도 있거든요. 저랑 똑같이 1년
정도 장거리 하다가 건너와서 한 6개월 전에 PACS 하고 지내는 친구도
있었어요. ...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가장 쉽
게 보호받을 수 있는 비자 선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주변에
꽤나 많아요.”(참가자 1)

“결혼이나 PACS를 딱히 생각하지는 않았고 아무래도 연애를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진지해지면 자연스럽게 같이 살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래서 처음에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동거를 하다가 PACS로 넘어간 결정적
인 이유는 아무래도 체류증 때문이죠. 학생 비자가 끝나면 프랑스에서 석
사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일을 구하라고 주는 체류증이 있어
요. 근데 그 체류증이 끝나면 신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일
을 찾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프랑스 파트너가 있던 저는 가족 비자를
받으면 아무래도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계
속 같이 지낼 거라면 PACS를 하자 했어요. ... 만약에 제가 외국인이 아니
었으면 굳이 PACS나 결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참가자 3)

“PACS를 해서 제가 얻는 이점은 그래도 체류증 갱신이 좀 더 수월해졌
다는 거인 것 같아요.”(참가자 4)

처음에 PACS로 체류증을 신청하면 1년 기간의 단기 체류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이 발급되고, 재발급의 경우에는 2년 내지 4년 기간

의 장기 체류증(carte de séjour pluriannuelle)이 발급된다(프랑스 행정부 홈페이지, n.d.). 결국은 함께 산 기간이나 실질적으로 주거와 경제를 공유하는 것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점차 긴 기간의 체류증을 받는 등 실제 커플 공동의 생활이 중요하다.

“프랑스에서 한 번도 살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랑 PACS를 해서 프랑스에 오고 싶으면 방문 PACS 비자로 1년 동안 비자를 줘요. 대신에 노동에 제한이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이들의 동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면 다시 비자 갱신하고요. 프랑스에 와서 영리는 안 되는데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공동 계좌를 만든다거나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비자 기간이 늘고 일도 할 수 있고요. 공동 생활을 주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참가자 8)

“가족 체류증으로 바꿔야지 이름이 학생에서 가족 체류증으로 바뀌는데, 가족 체류증으로 만들려면 얼마 기간, 1년 이상 같이 동거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프랑스 경시청에서 바라는 건 공식적인 문서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주소가 올라가 있는 전기 요금 고지서라든지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공동 계좌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차피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같이 지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 계좌도 만들었고 모든 거를 다같이 이름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참가자10)

PACS 체결은 국적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는 보호 기능 이외에 커플이 생활하면서 더욱 안정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자라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보호로 인해 실제 삶에서의 안정과 보호가 강화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래 같이 있고 싶다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프랑스에서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게 됐어요. 프랑스 행정 처리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비자 처리 과정 보면서 상대뿐 아니라 저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족 비자 같은 걸로 바꾸면 우리 삶이 조금 편해지겠다 생각해서 PACS 한 것도 있어요.”(참가자 5)

비자 상태나 체류증 등을 생각하면 외국인에게는 PACS와 결혼의 차이가 더 있을 수 있다.

“가족 체류증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도적으로 사실 법 조문을 보면 PACS가 어떤 체류증을 준다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증 받는 게 동거랑 사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거를 해서 계속 증거가 있어도 운이 좋으면 체류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ACS가 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제도적으로도 체류증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애네가 PACS를 했으니까 제대로 신분이 보장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PACS를 하고요. 근데 결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 신분이 확실히 보장이 돼요. 나중에 제가 프랑스인이 되고 싶어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혼도 그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근데 PACS는 들어가지 않아요. PACS는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시민권을 자연스럽게 얻는 거는 확실히 결혼보다 훨씬 어려워요.”(참가자 10)

4) 주거와 PACS

PACS를 사용하면서 한국의 동거와 비슷한 계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연애 중 각자의 거주 공간을 가지고 서로의 주거지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을 반복하다가 한 쪽의 거주지 재계약 등을 해야 할 때 주거지를 합치거나 주거 비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을 합치는 상황들이 한국의

비혼 동거 경험자 FGI에서 발견된 내용과 유사했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집을 샀는데 월세가 나가는 상황이 아니고 집이 넓으니까 너가 들어와서 살면은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참가자 4)

“혼자 살고 있었고 연애 초반에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이사 준비 중이었는데 그러면은 집 구할 때까지만 자기네 집에 잠깐 와 있으라고 해서 가서 살다가 계속 같이 살게 된 거죠.”(참가자 9)

“결정적인 계기는 확실히 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기도 했고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이 어차피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게 싫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참가자 6)

5) 세금 혜택과 PACS

당사자들은 PACS를 신고한 해당 연도에 당사자 2인이 공동으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동 과세의 범위는 PACS 당사자의 소득세, 지방세, 공동 재산세 등이다(Granet-Lambrechts & Hilt, 2010, p.105). PACS 당사자의 공동 소득신고로 인한 혜택은 2005년 1월 1일 전에는 PACS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나 적용될 수 있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제한은 폐지되었다.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PACS 당사자에게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사실상 과세 관련 부분은 2007년 8월 이후부터는 혼인한 배우자가 받는 혜택과 PACS 당사자 사이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Bénabent, 2010, p.310).²⁶⁾

PACS를 체결하지 않고 동거하더라도 가족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나

차별이 없는 상황에서 PACS를 선택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확신이나 애정에 대한 책임감 등이 물론 작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주어진다면 제도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결과 특히 한쪽의 수입이 적거나 없을 때 사용하면 그 이익이 확실하기 때문에 PACS 체결의 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약혼한 친구들 중 한 커플은 PACS를 한 이유가 솔직히 세금 때문이래요.”(참가자 1)

“저는 일을 하지 않아서 세금 혜택이 많이 되는 거지만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ACS를 한다고 해서 세제 혜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동거하는 거죠.”(참가자 2)

“PACS를 하면 한 가구로 집계가 되니까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애가 생겨서 결혼을 하기는 좀 그렇고 PACS 해가지고 서류 정리를 하고 그래요. 보통 같이 집을 사거나 애가 생기거나 하면 서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참가자 3)

“PACS 할 때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었는데, 저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상대가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세금을 거의 안 내거든요. 저희가 월급이 비슷했으면 세금을 그냥 그대로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같이 묶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PACS가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결혼 이랑 아예 똑같아요. 친구도 세금 때문에 PACS 했어요.”(참가자 5)

그러나 만일 개인이 수당 및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PACS를 하지 않고 개인이 공적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방에게 재정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기

26) 과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법이나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유급 휴가의 적용도 혼인한 배우자와 차이가 없다(Bénabent, 2010, p.30).

때문에 결혼이나 PACS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때 기본 수당 같은 걸 받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이나 PACS를 해서 상대방 소득을 합치면 제가 개인으로 그 수당을 못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일을 하다가 대학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기본 수당을 받는 입장이어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동거만 했어요.”(참가자 7)

6) PACS와 재산 공유 및 공동 계좌의 사용

현재는 PACS 신청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인지 별산재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ACS 커플은 대부분 재산을 합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대신 공동 계좌(compte commun 또는 compte joint)²⁷⁾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마다 공동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같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용하는 서류 중의 하나로 활용되어 PACS 커플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PACS로 배우자 비자를 갱신하는 조건 중에 서로 같이 살았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통장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공동 계좌라고 해서 커플끼리 공동 계좌를 여는 그런 것들이 은행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공동 계좌가 서류 목록 중에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게 쓰일 수 있어서 1월달 PACS 하고 나서 1월 2월 그때 공동 계좌를 같이 열었어요.”(참가자 4)

“저희 공동 계좌에서는 대출비랑 부과금 그리고 1년에 두 번 소득세랑 부동산세랑 주민세 내거든요. 그 돈을 공동으로 같이 내고 나머지는 다 따

27) Service-Public.fr. (n.d.). Compete bancaire Join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412>

로 관리하죠. ... PACS 커플이 공동 계좌 개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 해야 돼요.”(참가자 8)

“현재 PACS 상대가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 문제로 골치아픈 일은 피하고자 해서 재산은 각자 관리로 했어요. ... 작년 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새 집 사서 이사를 가면서 그때 공동 통장을 했어요. 뭔가 서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 어떤 커플은 그 공동 통장에 생활비 반반 내서 같이 먹고 살고 하는 데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공동 통장을 좀 여분으로 가지는 돈을 넣어서 어디 여행 갈 때 목돈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해서 제3의 통장으로 만들었어요.”(참가자 9)

7) PACS의 인척 관계 발생의 배제 특징과 가족 관계

PACS를 체결하면 혼인과 달리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이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인식이 큰 한국 사회에서는 PACS 내용 중 이러한 특성이 부각되어 보이기도 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물론 상대 가족과 큰 교류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상대의 가족과 부담없이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이 포착되었고 서로의 가족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을 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장인, 장모가 갑자기 생기는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도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대하는 편이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이런 걸 해야겠지 이런 압박도 느끼지 않죠.”(참가자 1)

“어차피 저희 PACS 하기 전에도 애인이랑 저희 가족이랑 막 휴가 가고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그랬었어요. 저는 외동이라서 형제가 없지만 그

래도 사촌 오빠, 사촌 동생들은 이렇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생기면 PACS 아직 안 했는데도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기도 해요.”(참가자 5)

“크리스마스때 서로 부모님 집을 다 방문해요. 한 해 저희 부모님 집에 12월 24일에 갔으면 그 다음 해에는 12월 24일에 여자친구네 부모님 집에 가고, 저희 부모님 집에 25일에 갔으면 그 다음에는 바꿔서 25일에 여자친구네 부모님 집에 갔어요.”(참가자 12)

8) 프랑스의 이혼과 PACS의 헤어짐 차이

앞서 동거, PACS, 결혼의 차이를 다루었는데 헤어짐의 측면은 결혼과 PACS에서 큰 차이가 부각되어 별도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PACS 제도가 수정을 거쳐 점차 결혼과 유사해짐에 따라 헤어지는 과정에 대한 차이가 일반 시민에게 더 강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사례에서 프랑스의 이혼 과정이 오래 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수반하는 이유로 결혼을 무겁게 느껴 PACS나 동거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PACS의 이용을 돕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일 큰 건 사실 헤어지게 됐을 때인데... 결혼 후 이혼하게 되면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되고 비용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는데 PACS 같은 경우는 그냥 통보식으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이 차이가 크더라고요.”(참가자 2)

“이혼하면 돈도 들고 복잡하고 많은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PACS는 조금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어서. 아니면 이혼한 사람은 이혼이 힘들었으니까 재혼 안 하고 그냥 PACS만 해야겠다 하는 경우도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참가자 5)

“PACS 해소가 쉬운 것이 완전히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프랑스에서 합의이혼이어도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이혼하면 변호사도 써야 하고 법정 싸움이 길어지고 한 것보다 PACS는 훨씬 더 건강하게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참가자 7)

“결혼까지는 너무 무거운 것 같고 결혼을 하면 솔직히 이혼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니까 PACS를 하거나 동거하는 커플이 많거든요.”(참가자 10)

“일단 그냥 동거랑 PACS의 차이는 동거는 그냥 가구를 같이 쓰고 집을 나눠 쓸 수 있고 법적으로 두 사람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전혀 없어요. PACS로 가면 법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동거랑 다르고, PACS랑 결혼의 차이점은 결혼은 이혼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 PACS 해소할 때 인터넷에서 형식 다운받아서 채우고 우편으로 보냈어요.”(참가자 12)

PACS는 어떤 측면에서는 헤어지는 과정이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묶였던 커플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귀거나 동거하다 헤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재산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헤어짐이 쉽지만도 않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PACS 커플은 대부분 재산 관리 선택에서 개인 재산 관리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PACS를 하게 되면 재산 어떻게 할지도 선택해야 하는데, 계약하는 커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저희처럼 반반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거는 가지고 가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해요. 근데 또 어떤 커플들은 결혼하는 것처럼 합치는 거 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헤어지기 쉽다고 해도 마냥 쉽게 헤어지지 않게 되는 점, 헤어짐이 쉽지만 막 쉽지만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참가자 11).

9) PACS의 장점

제도 사용으로 같은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 보이지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느낌과 상대에게 정서적 유대감 및 책임감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 부담스러운 시대인데 그렇다고 전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부담은 덜어주지만 관계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젊은 커플들이 더 선호하는 제도로 생각된다.

“PACS 같은 경우는 이게 헤어지는 게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이혼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냥 PACS 해지하겠더라는 거에 사인만 해서 그 동의를 모아서 둘 중에 한 명만 제출하면 돼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랑 제도적인 그런 부담감은 싫지만 그래도 조금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같이 보호받고 싶더라는 커플, 젊은 커플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거 없이 동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을 때도 급하게 무조건 결혼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PACS 같은 걸로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참가자 1)

PACS가 애초에 동성 커플들의 결혼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인데 결국 이성 커플들에게 더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장점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행정 처리 측면에서도 PACS는 굉장히 쉽게 하고,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참가자 7)

“장점은 결혼에 대한 구속감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PACS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결혼이 아니더라는 인식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전혀 없었어요. 결혼이라고 하면 부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연대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내가 일자리도 잘 찾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의 목표에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참가자 8)

PACS라는 제도의 장점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은 관계를 공식화한다는 것이었다. 제도상 PACS는 결혼보다 헤어지기가 쉬운데 그러한 특성으로 불안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동거보다는 PACS로 둘 사이의 관계를 주변에 알림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특성이 더 컸다. 이러한 특성은 앞서 논의된 장점인 심리적 유대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PACS 장점은 관계를 더 오피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혼보다는 조금 가벼운데, 사실 결혼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동거나 사실혼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더 관계가 오피셜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PACS를 깨야 될 때는 그래도 해소 신청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오피셜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조금 더 오피셜한 느낌을 가지게 돼요.”(참가자 11).

10) 한국에 PACS와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

한국과 같이 여전히 가족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사회에 프랑스 PACS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 어떠할지에 대해 프랑스와 한국 사회를 모두 경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가 뚜렷하고, 당장은 비혼 동거 관계라도 응급시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일단은 동거 제도보다도 동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PACS가 생겼으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탄생하게 된 거죠. 동거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집단이나 어른 세대에도 더 알려야 하고, 그래서 연대의식이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참가자 8)

“프랑스도 결혼하기 싫어서 PACS를 하는 커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국에 이런 제도 있으면 그런 식으로도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혹은 결혼제도는 가족들끼리 너무 얽이니까 간단하게 서류만 하자는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 프랑스의 초기처럼 동성 커플한테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도 차근 차근 동성 커플의 사회적인 제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한국도 저는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물론 정서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런 형태의 가족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제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리고 PACS 같은 제도 만들고 이성 커플만 인정을 해주면 동성 커플은 차별을 받을 거예요. 이제 동성 커플은 동성혼이 인정되어서 결혼하면 되니까 이용 덜하고 이성 커플이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은 경우 PACS를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건데, PACS가 결혼과 비슷해졌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연애에 가까우면서 정말 프랑스 초기 제도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커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랑 비슷하게 가면 사실혼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머물거나 하면 되니까 동거하는 사람들이 안 이용할 것 같아요. ... 그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죠. 한국은 애 키우기 어려워서 안 낳는 경우도 많은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 가족 먼저 돌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프랑스처럼 자연스럽게 국가가 모든 형태의 가족을 다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국민 정서나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참가자 10)

2. 네덜란드 등록동반자관계(Partnerschapsregistraties)²⁸⁾

가. 네덜란드 등록동반자관계(Partnerschapsregistraties) 도입 배경

네덜란드 대법원은 1990년 10월 19일 동성혼 신고를 거부한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여성 2인이 제기한 수리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을 통해서 (당시)네덜란드 민법에 따르면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네덜란드 민법 규정은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김상용, 안문희, 2022, p.31). 그럼에도 입법을 통해 동성 커플이 동거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김상용, 안문희, 2022, p.31). 이러한 대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입법자는 위원회를 구성해 혼인 이외의 결합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7년 7월 5일 법을 통해 등록동반자관계 제도를 신설하였다(Pintens, 2000).²⁹⁾ 이러한 등록동반자관계는 세계 최초로 네덜란드에서 동성혼이 시행된 2001년 4월 1일 이전인 1998년 1월 1일부터 동성 또는 이성 2인에게 허용되었다.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 제도는 혼인을 원하는 동성 커플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성에게만 해당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커플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김상용, 안문희, 2022, pp.30-31).

등록동반자가 되면 혼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므로, 혼인으로 인한

28) 본 소절은 '김상용, 안문희. (2022).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함.

29)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4f; 입법 당시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 커플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 (Nuytinck, Das neue Personen- und Familienrecht in den Niederlanden, StAZ, 2000, 72/73.; 김상용, 안문희. 2022, p.31.)

부부 사이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등록동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상대방의 혈족과는 인척 관계가 발생하며, 상속권 또한 부여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p.31).

나. 네덜란드 등록동반자관계(Partnerschapsregistraties) 사용 현황 및 통계

네덜란드의 혼인율 및 등록동반자관계 건수를 보면, 등록동반자관계 제도가 시행된 1998년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그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동성 커플의 경우 등록동반자관계가 시행된 1998년에는 전체 등록수인 4,626건의 약 64%인 약 3천 건인 데 반해서 다음 해인 1999년 및 2000년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동성혼이 시행된 2001년에는 전체 등록동반자관계인 3,377건의 약 15%인 530건을 기록하였다. 등록동반자관계에서 동성 커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등록동반자관계가 혼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해당 관계의 법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2001년부터는 동성혼이 시행되면서 혼인과 유사한 성격의 등록동반자관계를 어느 정도 대체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등록동반자관계가 처음 시행된 1998년과 다음 해인 1999년을 제외하고는 동성 커플보다는 이성 커플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가장 최근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22년에는 이성 커플이 전체 등록동반자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97%(동성 커플: 약 3%)에 이르고 있다.

혼인의 경우에는 1990년에 9만 5천 건이었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5만 6천 건을 기록하고 있다. 동성혼이 시행된 2001년을 기준으로 전체 혼인 건수는 8만 2천 건이며, 이 중에서 동성혼은 2,414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의 약 3%를 차지하였다. 2022년 혼인 통계에서 동성혼인의 비율은 약 2.4%로 2001년보다는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인다.

〈표 6-7〉 네덜란드 등록동반자관계와 혼인 건수 추이: 1990~2022

(단위: 건수)

연도	등록동반자관계			혼인		
	총 건수	이성	동성	총 건수	이성	동성
1990				95,649		
1995				81,469		
1998	4,626	1,616	3,010	86,956		
1999	3,257	1,500	1,757	89,428		
2000	2,922	1,322	1,600	88,074		
2001	3,377	2,847	530	82,091	79,677	2,414
2002	8,321	7,774	547	85,808	83,970	1,838
2003	10,119	9,577	542	80,427	78,928	1,499
2004	11,156	10,573	583	73,441	72,231	1,210
2005	11,307	10,699	608	72,263	71,113	1,150
2010	9,571	9,084	487	75,399	74,045	1,354
2015	12,772	12,331	441	64,308	62,912	1,396
2020	24,136	23,366	770	50,233	49,119	1,114
2021	26,149	25,321	828	56,419	55,227	1,192
2022	24,128	23,324	804	70,608	68,894	1,714

자료: CBS, Statistics Netherlands, Marriages and partnership registrations(9 June 2022); [https://opendata.cbs.nl/#/CBS/en/dataset/37772eng/table?searchKeywords=number%20of%20partnership;Marriages and partnership registrations; key figures, 2022. 6. 9.](https://opendata.cbs.nl/#/CBS/en/dataset/37772eng/table?searchKeywords=number%20of%20partnership;Marriages%20and%20partnership%20registrations;key%20figures,2022.6.9)(<https://opendata.cbs.nl/statline/#/CBS/en/dataset/37772eng/table?ts=1658713430280>).

다. 네덜란드 등록동반자관계(Partnerschapsregistraties) 주요 내용

이하에서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 요건, 효과 및 해소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성립 요건

등록동반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성 또는 이성 2인은 혼인 또는 등록동반자관계에 있지 않아야 하며(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a 제7

항), 이성 또는 동성 2인이면 가능하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a 제1항)(김상용, 안문희, 2022, pp.32-33). 그러나 일정한 근친 간의 등록 동반자관계의 성립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는 혼인과 동일하다(김상용, 안문희, 2022, pp.32-33). 즉 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41조가 규정하는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로 이들 사이에는 등록동반자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a 제7항)(김상용, 안문희, 2022, p.33).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동반자관계가 허용되나, 원칙적으로는 성년에게만 허용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a 제6항)(김상용, 안문희, 2022, p.33).

등록동반자관계를 신청하면, 해당 신청을 받은 신분등록공무원이 동반자관계등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교부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신청 관청에서 등록동반자관계의 당사자 및 증인(2인~4인)의 참여로 신분등록부에 동반자관계가 기재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a 제3항, 제5항 및 제6항)(김상용, 안문희, 2022, p.33).

2) 효과

① 당사자에 대한 효과

등록동반자관계에는 혼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서 혼인으로 인한 대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어 효력면에서 혼인과 큰 차이점이 없다(김상용, 안문희, 2022, p.34). 등록동반자와 상대방 혈족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발생하며(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3조 제2항), 등록동반자는 상대방의 성(姓)을 사용할 수 있다(네덜란드 민법 제9조).³⁰⁾ 혼인한 부부의 권리

30) 네덜란드에서는 혼인 후 부부 각자가 혼인 전의 성(姓)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성의 변경이 가능하다; 김상용, 안문희,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중앙법학 제24집 제3호(2022), 34면.

및 의무가 준용되므로(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b조) 등록동반자는 서로 간에 부양, 동거, 협조, 정조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하는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b, 제81조 및 제84조)(김상용, 안문희, 2022, p.34). 재산제와 관련해서도 혼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b 및 제93조), 동반자관계를 등록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법정 재산제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재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별도의 재산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부부재산제인 공유제가 적용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p.34). 따라서 등록동반자관계 성립 시에 이미 존재했던 재산(고유 재산)과 등록동반자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공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등록동반자 2인의 공동 재산이 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94조)(김상용, 안문희, 2022, p.34). 예외적으로 각자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나 증여자가 공동 재산에 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수증 재산은 각자의 특유 재산이 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p.34). 등록동반자는 상속에 있어서도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네덜란드 민법 제4장 제8조)(김상용, 안문희, 2022, p.34).

② 자녀에 대한 효과

등록동반자와 상대방 자녀 사이에는 인척 관계가 발생하고(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3조 제2항), 등록동반자는 이들 사이의 모든 미성년 자녀(상대방의 자녀를 포함)에 대한 보호 및 양육 의무와 그 비용을 부담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b, 제82조).³¹⁾ 미성년 자녀의 모가 단독 친권자인 경우에는, 모와 모의 등록동반자는 협의하여 법원에 공동 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친권자가 있거나 등록동반자가 친권을 행사

31) Reinhartz·Vlaardingerbroek, in: 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Niederlande, Rn. 148; 김상용, 안문희, 2022, pp.34-35.

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의 친권등록부에 공동 친권이 기재됨으로써 공동 친권이 성립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252조, 제253조)(김상용, 안문희, 2022, p.35). 혼인한 부부의 친생추정과 유사하게 등록동반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대방 남성 동반자가 자녀의 부가 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199조 a호)(김상용, 안문희, 2022, p.35). 등록동반자 2인이 모두 여성인 경우에, 익명의 정자 제공을 통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등록동반자 2인이 함께 모가 되며(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198조 제1항 b호)(김상용, 안문희, 2022, p.35),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동반자 2인은 자녀에 대해 공동 친권을 가진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253조aa)(김상용, 안문희, 2022, p.35). 등록동반자는 3년의 동거 기간 및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에 대한 1년간의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입양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은 등록동반자의 자녀를 상대방이 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227조 제2항, 제228조 제1항 f호)(김상용, 안문희, 2022, p.35).

3) 해소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 또한 혼인의 해소와 유사하나, 만약 등록동반자가 해소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없이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혼인과 구분된다(김상용, 안문희, 2022, pp.35-36). 등록동반자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 외에도 첫째, 일방의 실종선고 후 다른 일방의 혼인 또는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은 경우, 둘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등록동반자 2인이 해소에 합의한 경우(네덜란드 민법 제80조c 제3항)³²⁾, 셋째, 등록

32) 해당 합의에는 등록동반자관계의 파탄 사실 및 해소를 원하는 등록동반자 2인의 의사가 포함된다(네덜란드 민법 제80조d 제1항). 당사자는 변호사(또는 공증인)가 서명한 합의서를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해당 합의가 신분등록부에 기재되면 등록동반자관계는 해소된다.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 합의 성립 시점부터 3월 이내에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해야만 신분등록부에 기록된다(네덜란드 민법 제80조d 제3항). 그리고 미성년

동반자 일방의 해소 청구에 따른 법원의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 판결 및 신분등록부에 해소 판결의 신청과 기록의 경우(네덜란드 민법 제80조e 제2항),³³⁾ 넷째, 등록동반자관계를 혼인으로 전환한 경우(네덜란드 민법 제80조g 제3항)에 해소된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c)(김상용, 안문희, 2022, p.36). 등록동반자관계 해소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 청구권이 인정되며(네덜란드 민법 제80조e, 제157조), 등록동반자관계의 지속 기간 동안 취득한 연금의 절반에 대한 분할청구권이 허용된다(네덜란드연금청산법 제2조)(김상용, 안문희, 2022, p.36). 등록동반자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 관계의 청산으로서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법정 재산제(공유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의 절반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가진다(네덜란드 민법 제1장 제80조b, 제100조 제1항)(김상용, 안문희, 2022, p.36).

라. 네덜란드 등록동반자관계(Partnerschapsregistraties)의 특징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성별과는 관련 없는 혼인 외의 결합을 제도화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가 혼인과 유사한 준혼인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과도 연결되며, 이러한 특징은 등록동반자관계에 대한 내재적 한계로도 작용하게 된다. 즉 혼인과는 구분되는 프랑스의 PACS제도나 혼인과는 별도로 벨기

자녀가 있는 때에는 자녀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등록동반자관계의 합의를 통한 해소가 가능하다(네덜란드민사소송법 제815조, 제828조). Reinhartz·Vlaardingerbroek, Niederlande, in: Süß·Ring(Hrsg.), Eherecht in Europa, Rn. 149; 김상용, 안문희, 2022, p.36.

33) 등록동반자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해소는 가능하며, 이러한 파탄의 사실도 청구인의 진지하고 일관된 해소 의사의 표시만으로 입증된다(Vinnen, Niederlande, in: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S. 11f; 김상용, 안문희, 2022, p.36.

에의 법정동거의 경우 혼인 건수와 비슷하거나 혼인 건수의 90%를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등록동반자관계가 혼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 혼인 수의 절반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 벨기에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가. 벨기에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도입 배경

1996년에 벨기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 권한으로 동성 2인 또는 이성 2인에 대한 동반자 관계를 등록부에 기록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기록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벨기에 입법자로 하여금 1998년 11월 23일 법³⁵⁾을 신설하게 만들었고, 해당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8년 11월 23일 법은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제도를 벨기에 민법 제1475조 내지 제1479조를 통해 신설하였다. 벨기에의 입법자는 법정동거 제도를 통해 법정동거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관계를 공식화하고자 하였으며,³⁶⁾ 법정동거 규정은 혼인을 참조하여 신설되었다.³⁷⁾ 벨기에 민법은 법정동거를 혼인 외의 결합으로 인정하

34)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0; 김상용, 안문희, 2022, p. 26.

35) 23 NOVEMBRE 1998. - Loi instaurant la cohabitation légale;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36) “T.I. 123 - COHABITATION LEGALE”, 2020. 1. 28., p. 1; https://www.ibz.rn.fgov.be/fileadmin/user_upload/fr/rn/instructions/liste-TI/TI123_Cohabitation_legale_20200128.pdf.

37)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67.

면서, 벨기에에서 함께 거주하고, “공동 생활(la vie commune)”을 원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되므로, 동성 커플이나 이성 커플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자녀 또는 친구 등과 같이 동거하는 모든 자가 대상이 된다. 법정동거 제도는 법정동거인 사이에 어떠한 가족법상의 신분 관계를 창설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혈족 등에 대한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김상용, 안문희, 2022, p.26). 결국 법정동거인은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가 중심이 되므로 경제적 부분, 즉 재산 관계에 관한 결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프랑스의 PACS 제도가 민법전 제1편의 人(personnes)에 속한 것과는 달리 벨기에의 법정동거 제도는 제1편(人: personnes)이 아닌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제3편에 속하게 되었다(김상용, 안문희, 2022, p.26). 이러한 점은 다른 국가들이 생활동반자나 등록동반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하여 법정동거라는 명칭을 채택한 부분에서도 해당 제도의 법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³⁸⁾

나. 벨기에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사용 현황 및 통계

1998년 11월 23일 법을 통해 신설된 법정동거 제도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벨기에 혼인 및 법정동거 통계를 보면, 법정동거가 허용된 2000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이후부터는 약 4만 건의 법정동거가 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정동거는 혼인을 참조하여 신설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커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함께 생활하는 성년 2인의 공동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이므로, 형제나 자매를 비롯하여 친구나 커플에게도 모두 허용되어 있어 동성이나 이성을 구분

38)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s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1; 김상용, 안문희, 2022, p.26.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표에서도 이러한 조사나 통계는 찾을 수 없다.

2000년부터 2021년의 기간 동안 혼인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4만 건 이상의 혼인이 성립되었다. 동성혼이 허용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약 2천 건의 동성혼이 집계되었으나, 2014년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동성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내외이다.

〈표 6-8〉 벨기에 혼인 및 법정동거 건수: 2000~2022

(단위: 건)

연도	법정동거	혼인		
		전체	이성	동성
2000	2,694	45,123		
2001	10,796	42,110		
2002	4,527	40,434		
2003	5,712	41,777		
2004	9,386	43,296	41,131	2,138
2005	15,513	43,141	41,087	2,054
2006	17,343	44,813	42,565	2,248
2007	24,823	45,561	43,261	2,300
2008	32,379	45,613	43,430	2,183
2009	34,632	43,303	41,171	2,132
2010	36,962	42,159	39,995	2,164
2011	40,080	41,001	38,860	2,141
2012	39,970	42,198	40,095	2,103
2013	40,608	37,854		
2014	40,184	44,858	43,769	1,089
2015	40,770	45,005	43,914	1,091
2016	40,054	44,725	43,555	1,170
2017	39,038	44,319	43,197	1,122
2018	38,921	45,059		

연도	법정동거	혼인		
		전체	이성	동성
2019	40,801	44,270		
2020	36,329	32,779	31,870	909
2021	37,768	40,836	39,749	1,087
2022	38,359	48,482	47,100	1,382

자료: 1) STABEL. (n.a. a). La Belgique en chiffres. Cohabitation légale. <https://statbel.fgov.be/fr/themes/population/parteneriat/mariages#panel-12>에서 2023.11.30. 인출.
2) STABEL. (n.a. b). La Belgique en chiffres. Mariages. <https://statbel.fgov.be/fr/themes/population/parteneriat/mariages#panel-12>에서 2023.11.30. 인출.

다. 벨기에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 주요 내용³⁹⁾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1998년 11월 23일 법을 통해 신설되어 1999년 1월 12일에 공포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된 이후 2013년 3월 17일 법, 2018년 12월 21일 법 및 2022년 4월 28일 법을 통해 3차례 개정되었다. 벨기에 법정동거의 성립 요건, 효과 및 해소를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성립 요건

법정동거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동거에 대한 자유로운 동의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한 법정동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3). 법정동거인이 법정동거인의 지위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이익만을 위해 법정동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경우에 법정동거는 성립되지 못한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2).

법정동거는 혼인한 자나 이미 법정동거를 체결한 자(벨기에 민법 제

39) 본 소절은 '안문희. (2023). 벨기에 법정동거제도에 관한 연구'의 pp. 134-139를 중심으로 정리함.

1475조 제2항 제1호),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에 대해서는 제한된다(벨기에 민법 제1475조 제2항 제2호). 제한능력자가 법정동거를 원하는 경우, 제한능력자는 법원에 법정동거를 청구해야 하며, 판사는 해당 청구에 대해서 청구인의 법정동거에 대한 의사 능력을 판단하여 법정동거를 허용할 수 있다(벨기에 민법 제1475조 제2항).

법정동거를 원하는 자는 신분등록공무원에게 법정동거 신고서를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은 위 신고서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법정동거 신고는 법정동거를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도 되며, 많은 동사무소가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⁴⁰⁾

법정동거 신고서에는 ① 신고 날짜(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항 제1호), ② 법정동거 신고인 2인의 성명, 출생일, 출생 장소, 서명(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항 제2호), ③ 공동 거소(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항 제3호),⁴¹⁾ ④ 법정동거의 의사(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항 제4호), ⑤ 벨기에 민법 제1475조 내지 제1479조가 규정하는 법정동거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항 제5호)이 포함된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항). 신분등록공무원은 법정동거를 신청하는 2인의 법정동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1항). 법정동거 신고서의 접수는 이들 신청자 2인이 혼인이나 다른 법정동거에 대한 신고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을 뜻한다.⁴²⁾

40) “Cohabitation légale”, belgium.be, Informations et services officiels, Service Public Fédéral Belge: https://www.belgium.be/fr/famille/couple/cohabitation/cohabitation_legale.

41) 해당 거소는 벨기에 민사소송법 제36조가 가리키는 거소가 아닌 벨기에 민법 제102조가 의미하는 실질적 의미의 거소를 말한다(“T.I. 123 - COHABITATION LEGALE”, 2020. 1. 28., p. 10; https://www.ibz.rrn.fgov.be/fileadmin/user_upload/fr/rn/instructions/liste-TI/TI123_Cohabitation_legale_20200128.pdf).

42) “T.I. 123 - COHABITATION LEGALE”, 2020. 1. 28., p. 1; https://www.ibz.rrn.fgov.be/fileadmin/user_upload/fr/rn/instructions/liste-TI/TI123_Cohabitation_legale_20200128.pdf.

법정동거가 신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3) 및 법정동거를 통한 이익만을 위한 경우(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2), 신분등록공무원은 법정동거 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4). 또한 신분등록공무원이 앞선 2경우(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2 및 제1476조의 3)에 대한 강한 추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법정동거 의사에 대한 관할 검사의 심의 후, 신고인 2인에 대한 추가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 법정동거 신고 접수증이 발급된 날부터 최대 2개월 동안 해당 공무원은 법정동거 신고를 보류할 수 있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4).

법정동거가 신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3) 및 법정동거를 통한 이익만을 위한 경우(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2)에는 법정동거인, 이해관계인, 검사는 법정동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의 5).

2) 효과

① 재산상 효과

법정동거의 재산상의 효과와 관련한 부분은 혼인의 효과와 유사한 부분으로, 법정동거에는 별도의 재산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제1 재산제와 신고인 2인의 재산계약인 제2 재산제로 구분된다.⁴³⁾ 이때 재산계약은 공정증서일 것을 요한다. 다만 혼인과는 달리 남은 법정동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공동 거소 및 가재 도구 등에 대한 용익권은 남은 법정동거인에게 주어진다.⁴⁴⁾

43)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67.

44)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69.

법정재산제인 제1 재산제는 법정동거를 신고할 때 신고인들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재산제로서(벨기에 민법 제1477조), 혼인과 비교해 “mini-제1 재산제(축소된 제1 재산제)”라고 불리기도 한다.⁴⁵⁾ 공동 거소(가족 거소)에 관한 부분은 혼인의 효과로서의 혼인 거소와 동등한 보호를 받으며, 공동 거소의 일방적 처분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벨기에 민법 제1477조 제1항 및 제2항). 법정동거는 동거인 2인의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동거인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벨기에 민법 제1477조 제3항). 일상 가사 및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법정동거인 일방의 채무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일상 가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벨기에 민법 제1477조 제4항). 법정동거인 일방의 사망을 통한 증여, 유언 또는 재산계약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 내에서 사망한 일방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무(벨기에 민법 제203조 제1항)를 남은 법정동거인이 부담한다(벨기에 민법 제1477조 제5항). 이때 사망한 일방의 자녀는 남은 동거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남은 동거인의 해당 의무는 사망한 법정동거인의 자녀가 상속 결격인 경우는 무효가 된다(벨기에 민법 제1477조 제5항).

재산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제2 재산제는 별산제로 재산계약의 내용은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친권, 후견, 상속 관련 규정에 위반해서는 안 되며, 해당 재산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벨기에 민법 제1478조). 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법정동거인은 법정동거 중에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속하는 것인지 입증할 수 없는 재산은 공유로 간주된다(벨기에 민법 제1478조). 남은 법정동거인 일방이 사망한 법

45)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67.

정동거인의 상속인인 경우에, 앞서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은 다른 유류분권자에 대해서는 무상 양여로 이해된다(벨기에 민법 제1478조). 이러한 별도의 재산계약은 법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주민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⁴⁶⁾

② 자녀에 대한 효과

법정동거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도 해당 자녀에 대한 부성 추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친자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가 요구된다. 즉 법정동거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지위를 가진다.

3) 해소

법정동거는 법정동거인 2인 중 일방의 혼인이나 사망으로 해소된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항). 또한 법정동거인 2인 중 일방의 해소 의사 또는 2인의 의사의 합치를 통한 법정동거에 대한 해소 신고로 법정동거는 종료된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항). 이러한 법정동거의 해소 신고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다. 법정동거의 해소 신고서는 ① 신고 날짜(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항 제1호), ② 법정동거 신고인 2인의 성명, 출생일, 출생 장소, 서명⁴⁷⁾(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항 제2호), ③ 법정동거인의 거소(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항 제3호), ④ 법정동거 해소의 의사(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항 제4호)를 포함한다. 법정동거 해소의 신고 양식은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제공하고 있다.⁴⁸⁾

46) “Contrat de vie commune pour cohabitants”, belgium.be, Informations et services officiels, Service Public Fédéral Belge; https://www.belgium.be/fr/famille/couple/cohabitation/contrat_de_vie_commune.

47) 해소 신고를 법정동거인 일방이 하는 경우, 일방의 서명으로 충분하다.

48) “Mettre fin à la cohabitation”, belgium.be, Informations et services officiels, Service Public Fédéral Belge. https://www.belgium.be/fr/famille/couple/cohabitation/mettre_fin_a_la_cohabitation.

법정동거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동거의 해소는 법원에 대한 청구로 가능하며, 판사는 청구인의 법정동거 해소에 대한 의사 능력을 판단하게 된다(벨기에 민법 제1476조 제2항). 혼인과 달리 법정동거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⁴⁹⁾

라. 벨기에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의 특징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나 프랑스의 PACS에 비해 가장 느슨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⁵⁰⁾ 혼인과의 유사점은 2인의 결합이라는 점과 해당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의 재산 관계나 생활비의 분담 등의 현실적인 생활 공동체의 운용 규정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법정동거인 2인은 동성, 이성의 구분을 떠나 친구나 친족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4. 일본 파트너십 증명 제도(파트너십 증명 제도)

가. 일본 파트너십 증명 제도(파트너십 증명 제도) 도입 배경과 현황

일본은 시부야구(渋谷区)에서 처음으로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본의 국가 단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15년 3월 31일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시작되었다. 시부야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구(区)의 두 동성 간의 생활 공동체에 대해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파트너십으로 인정하였다(백시우, 진재훈, 2017).

49)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72.

50) '가벼운 결합' 또는 '무거운 결합'이라고 표현됨(김상용, 안문희, 2022, p.38).

시부야구의 파트너십 증명 제도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동성 커플은 결혼할 수 없는 불평등 상황에서 도입된 만큼, '시부야구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渋谷区男女平等及び多様性を尊重する社会を推進する条例)'에 그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다.

도쿄도 시부야구에 이어 도쿄도 세타가야구,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미에현 이가시, 오키나와현 나하시, 지바시 등이 파트너십 증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백시우, 진재훈, 2017). 이 중 2019년 제도 도입을 한 지바현 지바시는 성소수자 커플뿐 아니라 이성 커플도 이용할 수 있는 파트너 공적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첫 사례이다(김진우, 2019.1.29.).

도쿄도에서 가장 먼저 이성 커플을 파트너십 증명 제도에 포함하기 시작한 곳은 구니타치시(国立市)이다(東京新聞, 2023.6.4.). '시부야구·니지로 다이버시티(무지개 다양성) 전국 파트너십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니타치시는 파트너십 제도를 이용한 커플의 누적 수가 2021년 15건, 2022년 21건, 그리고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23건이었다(시부야구 홈페이지, 2023.7.14.). 구니타치시의 파트너십 증명 제도를 이용한 총 23커플 중 약 절반이 이성 커플이었다(東京新聞, 2023.6.4.).

〈표 6-9〉 파트너십 증명 제도를 이성도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수도권 기초지자체

도도부현(都道府県)	시구정촌(市区町村)
도쿄(東京)	스미다구(墨田区), 구니타치시(国立市), 무사시노시(武蔵野市)
가나가와(神奈川)	요코하마시(横浜市), 요코스카시(横須賀市), 즈시시(逗子市), 가마쿠라시(鎌倉市), 히라즈카시(平塚市), 후지사와시(藤沢市) 등
지바(千葉)	지바시(千葉市), 이치카와시(市川市), 후나바시시(船橋市), 기사라즈시(木更津市), 마츠도시(松戸市), 가시와시(柏市) 등
사이타마(埼玉)	기타모토시(北本市), 교다시(行田市) 등

자료: 東京新聞(2023년 6월 4일), 異性の事実婚にも「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対象拡大の動き 背景に選択的夫婦別姓 東京都内は遅れ気味? (<https://www.tokyo-np.co.jp/article/254464>)로부터 2023.11.24. 인용).

나. 일본 파트너십 증명 제도(파트너십 증명 제도) 주요 내용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쿄 파트너십 증명 제도를 예로 자격과 권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제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도쿄에서 살거나 일하거나 학업 중이며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시민권이나 비자 상태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커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들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청하려는 각각이 혼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 증명서, 도쿄에서 일하거나 학교에 등록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다(Danuco, 2023. 4. 25.).

도쿄의 파트너십 증명 제도에 등록된 커플은 일정 수준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등록은 관계를 증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록 커플은 공공주거에 지원할 수 있거나 구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파트너십 증명 제도가 등록된 둘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혼과는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한 커플과 동일한 법적 혜택은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비자 신청이나 세금 감면, 동일 가족/주민등록(family register) 부에 오르는 것, 주민표(a residence certificate)에 커플로 명시되는 것, 병원 방문 권리(hospital visitation rights), 일방이 사망 시에 자동적인 상속이나 자녀에 대한 법적 후견인 자격 등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다(Danuco, 2023. 4. 25.).

일본에서 파트너십의 시작은 동성을 위한 제도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입하였는데,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지바현 지바(千葉)시에서 2019년에 이성 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성별 구분 없는 파트너 인증서 발

급 제도를 처음 마련하였다(千葉市 홈페이지). 지바시 파트너십 선서 제도(千葉市パートナーシップ宣誓制度) 안내에 따르면, 시영 주택 신청, 시립 묘지 신청, 지바시 신혼 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과 시립 병원에서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의 방문 등이 가능하다(千葉市 홈페이지). 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음에 있어 선서의 주요 내용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두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상호 협력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다’, ‘공동 생활에서 서로 책임을 갖고 협력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평등과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진우, 2019.1.29.).

다. 일본 파트너십 증명 제도(パートナーシップ証明制度)의 특징

일본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증명으로 증명서를 보유하고 혼인 가구가 받는 혜택의 일부를 받기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하였다는 특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이 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동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성과 동성을 모두 제도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대상의 다양성도 나타나고 있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한국에서 비혼 동거 방식의 삶을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해보았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동거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에는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비혼 동거 생활을 하면서 연금, 국민건강보험, 모자보건법 등에서 ‘사실상 혼인 관계’까지 대상을 포함하는 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는 동거인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들이 비혼 동거 커플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는 흔히 쓰이거나 생활에서의 지원이나 혜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내용들이다. 여러 조사에서의 제도적 욕구나 이 연구에서 확인한 여러 불편과 차별, 그리고 다양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시급한 의료 현장에서의 보호자 지위나 돌봄 및 장사에 있어서 권한 등 지원 및 권한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의 측면에서는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이 결혼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결혼이나 출산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장애가 되는 부분으로 주로 지적되는 주거 환경 마련에 대한 내용이 비혼 동거 생활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택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평등한 구조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또는 불이익인지 고민과 판단을 할 필요가 없게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살펴본 국외의 동거 관련 제도에서는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 프랑스의 연대의무협약(PACS) 및 벨기에의 법정동거, 일본의 파트너십 등록제는 각 국가의 제도의 필요성, 사회적 분위기 및 정책적 의도 등에 따라서 유사점과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도의 공통점은 혼인 외의 “별도의 결합”에 대한 제도화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언급된 다른 국가와 달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앞서 현재 제도 검토에서 살펴본 대로 민법상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판례를 통해 확립된 사실혼이라는 혼인 외의 결합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사실혼의 당사자(배우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에게도 혼인의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

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권이나 친생추정이나 인척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방적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혼인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금이나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에서는 유족의 범위나 수급 대상으로 사실혼의 당사자(배우자)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제도는 결혼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 및 지원에서부터 동거 당사자들 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지위 인정을 위한 등록 등 제도에서 인정하는 권한과 지원 수준이 다층적이어서 한국에 제도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수위의 검토와 한국의 수용 수준에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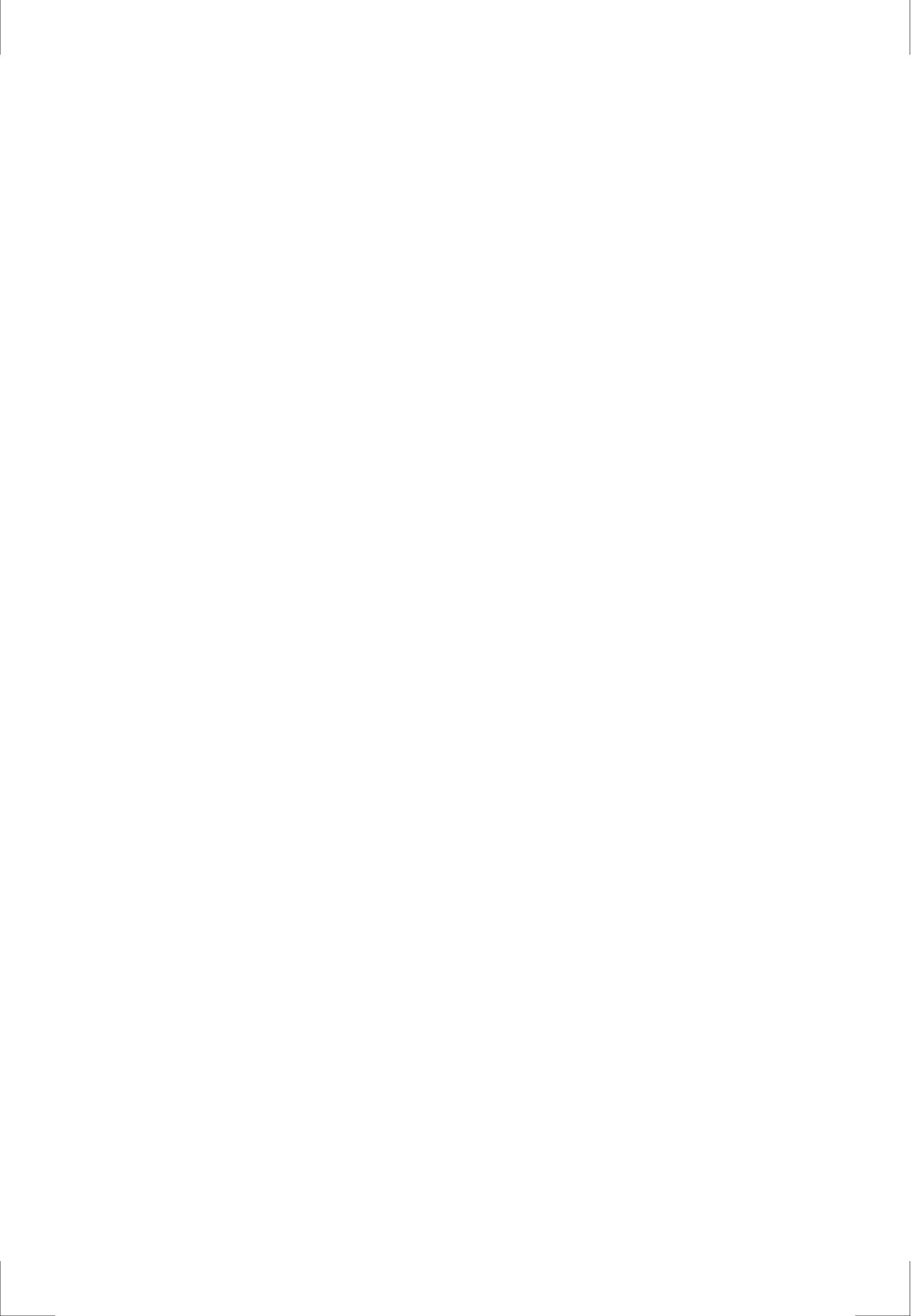
이 중 일본의 파트너십 등록 제도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비혼 동거는 주거 문제나 주거 계약 시점, 일하는 곳과 가까운 주거지 이동 및 선택 등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주거 관련된 이슈가 많은 곳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한 일본의 사례에서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대안으로 혼인 외의 결합 제도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경우 출산율 제고에 대한 대안으로 동거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들 국가의 혼인 외의 결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혼인 외의 결합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결합의 정도는 어떠한지 하느냐와 관련한 부분은 별도의 심층적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혼인 외 결합의 형태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된 프랑스의 PACS는 동성 결합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이성 커플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제도가 되었다.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리고 이혼이 어

려운 사회라는 특징이 겹치면서 결혼보다는 헤어짐이 복잡하지 않고 동거보다는 세금 혜택 등이 있는 PACS가 널리 사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 사이 외국인의 제도 사용 비율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제도의 효과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부모의 혼인 상태가 동거이든 PACS이든 결혼이든 아동의 양육을 위한 지원이 동일하고 인식적 차별이 없는 프랑스 사회에서 PACS로 인해 출산이 증가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PACS 도입 전부터 출산율은 약간의 상승 경향이 있었고, PACS 도입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하였지만 이 결과를 PACS의 도입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동안 투입해 온 다른 정책적 노력이나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 유입 등 다각적인 변화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정책적 함의



제 7 장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결혼 및 가족 형성 경향이 급격하게 변하는 속에서 관련 정보나 자료의 부족으로 단편적 논의에 그치거나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의 비혼 동거에 관한 연구이다. 당연했던 결혼이 선택 사항이 되고, 결혼 감소가 저출산 현상과 연결되면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비혼 동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대한민국, 2016). 그러면서 비혼 동거 형태가 과거보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젊은 층에서는 더욱 유행하고 있다는 점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부각되었다. 또한 동거 관계에 대한 법제도 보호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비혼 동거 커플의 불편함과 제도의 필요성 등 우리 사회의 비혼 동거에 대한 인정과 이해 수준이 과거와 비교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여러 전통과 전형성에 기반하는 가족주의가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혼 동거의 확산 파악 및 인정, 특성 이해, 또는 관련 법제도 마련에 대한 노력이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었다.

동거 관련 연구나 정책적 발전이 없다고 해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비혼 동거를 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실제 결혼 건수와 혼인율이 감소한 것은 통계적으로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친밀한 상대와 함께 사는 경우가 행정 서류나 통계로 나타난 그만큼 동일하게 감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가구 구성 통계에서 비친족 가구와 그 안에 속한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KOSIS. 각연도c), 법적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삶을 공유하는 관계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 감소가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동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다 동거가 널리 퍼져있는 프랑스도 결혼이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프랑스 동거 등록 제도인 PACS 이용 비율과 결혼하지 않고 PACS 제도에도 등록하지 않은 단순 동거 비율로 대부분 대체되었다(Ferrari & Toulemon, 2018). 또한 다수의 유럽 국가와 달리 혼인율은 감소하지만 동거가 사회에 만연하지는 않는 현상을 경험한 일본에서도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이 반드시 연애와 애인 관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Iwasawa, 2004). 여성의 파트타임 변화를 분석으로 친밀한 파트너가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파트너가 있어도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파트너십 유형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이다(Iwasawa, 2004). 이 연구 결과는 단순히 결혼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혼인율의 감소 이면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최근 결혼이나 동거, 가족 구성 등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변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혼인율 감소 속에서도 이러한 이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의 생각과 실천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던 틀을 벗어난 형태의 삶을 인정하고 현실을 반영해 법제도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계승현, 2022.9.24.; 오세진, 2022.9.25.; 최민지, 2022.9.23.). 그러나 심각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출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고조되어 결혼 상태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국토교통부, 2023.10.5.).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는 여전히 제도적 보호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고, 출산하면 아동과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제도적·인식적 측면의 문제 환경은

변함없이 그대로 두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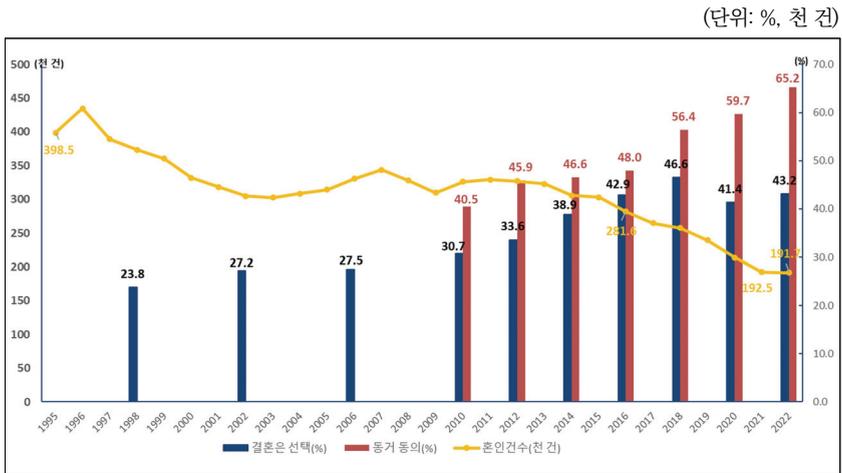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한국 비혼 동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찾아보고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현 단계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 비혼 동거의 특성을 정리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축적하는 것에 학술적 의의를 두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비혼 동거 규모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인가와 같이 근본적인 질문, 비혼 동거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찾아보는 특성, 비혼 동거와 출산과의 관계, 그리고 비혼 동거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때, 비혼 동거는 사실혼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친밀성을 기반으로 함께 생활하는 이성 관계를 비혼 동거로 모두 포함하였다.

1.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 및 혼인 건수 변화

실제 혼인이 크게 감소한 만큼 결혼에 대한 태도나 동거에 대한 태도 등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조사(통계청, 각 연도a)에서 시계열을 확인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한 태도와 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견해가 2010년 이전에는 30% 미만에 그치고 있었으나 2012년에 30%를 넘어섰고, 2016년에 40%를 넘어선 이후 지금까지 4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최근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동거에 대한 태도도 조사 초기인 2010년에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40%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과반 수준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약 65%까지 동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부터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일어났고, 2016년을 넘어서면서 확

실한 태도 변화와 함께 결혼 실천에서도 더 뚜렷하게 변화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1] 결혼 및 동거에 대한 태도와 혼인 건수 추이



자료: 1)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2) KOSIS. (각연도b). 혼인 건수, 조혼인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3에서 2023.6.16. 인출.

2. 비혼 동거의 규모

결혼과 동거에 대한 태도나 결혼 이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비혼 동거 실천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비혼 동거 규모 파악을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경향성을 예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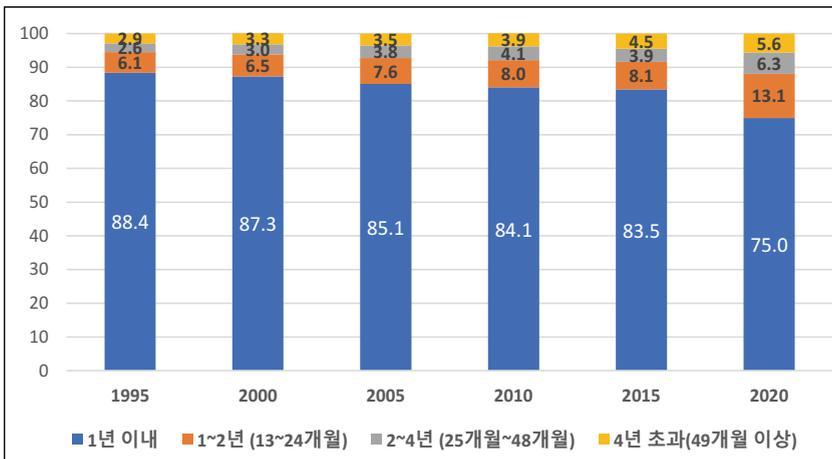
먼저 활용한 자료는 혼인신고 자료이다. 혼인신고 건수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보다 빠른 경우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즉 현재는 모두 법률혼 관계로 결혼 전에 동거를 경험한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1995년 혼인신고 건수 중 동거를 경험한 경우는 약 80%였다. 2000년에는 70% 수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6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년 이상 동거 경험을 한 비율은 약간 상승하였다. 전체 혼인 건수 중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는 1995년 9.2%에서 2020년에는 11.2%로 증가하였다.

혼인신고 전 동거를 경험한 부부의 동거 기간을 보면, 평균 기간이 1995년에는 8.4개월에서 2020년에는 14.6개월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년 이내의 동거만 감소하고, 그 이상의 동거 기간에서는 그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7-2] 혼인신고 건 중 동거 경험이 있는 부부의 동거 기간

(단위: %)



주: 1) N은 해당 연도의 혼인신고 건수 중 실제 결혼 생활 시작 '월(month)'이 혼인신고 '월'보다 빠른 사례의 수를 의미함.

2) 혼인신고 일 자료에는 년/월/ 일 정보가 제공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의 자료에는 년과 월만 제공되고 일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 월과 실제 결혼 월이 같은 달에 이루어진 경우는 혼인신고 일과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의 선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연도b). 인구동향조사 혼인자료.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8&itmDiv=1&nPage=1&itemId=&itemName=undefined>

종합해 보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의 절반 수준은 '결혼 전 동거'의 기간을 경험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전 동거'의 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결혼 전 동거' 기간을 갖는 경우라면 과거보다 장기간의 동거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증가한다. 이 혼인신고 자료는 동거에서 결혼으로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서 동거 기간이 점차 길어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기간의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동거 기간이 일반적으로 짧고 결혼으로 빠르게 이행한다면 동거가 그 사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하지만 점차 동거 기간이 길어진다면, 동거가 그 사회의 규범적인 가족 형성 행동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Maslauskaite, Baublyte, 2018) 결혼 전 동거 기간이 길어지는 한국의 현상은 매우 중요한 변화로 이해된다.

혼인신고 자료 분석에서 결혼 전 1년 내외의 동거 생활은 그 비율이 높은 만큼 단기간의 혼전 동거는 한국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1년 내외 기간의 동거 비율 변동은 종종 정부의 결혼 관련 정책에 반응할 수도 있다. 그 정책의 혜택이 주거 지원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확실한 것일수록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결혼하면 각각 1인 가구일 때보다 오히려 주택 마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결혼 패널티'의 작동 내용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했다. 집 마련이 마치 결혼 자격의 전제 조건처럼 설정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공유는 매우 빠르고 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결혼을 해도,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커플은 혼인 상태에 따른 지원 혜택이 우선하기 때문에 지원 내용에 따라 혼인신고의 지연이나, 반대로 실제 결혼에 선행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대이다.

비혼 동거의 규모를 보기 위해 그다음 활용한 자료는 전국 조사 자료들이다. 사회조사는 2006년부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혼인신고 여부를 후속 질문하였다. 2018년도에만 혼인신고 여부 후속 질문 대신 선택지에 ‘동거’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가구주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2.4% 수준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2018년도의 결과이다. 이 해는 선택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연도처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의 비율이 아니라 전체 중의 비율을 구하였고, 0.3%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 내외 수준을 유지한 것과 매우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2020년에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질문 형식을 바꾸자, 과거와 유사한 수준인 2.4%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 전체 가구 중 현재 약 2.4% 내외의 사실혼을 포함한 동거 가구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동거’ 카테고리로 나타난 다른 결과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념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다. ‘배우자 있음’에 응답을 한 경우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상대와 결혼한 배우자로 인식하는 사실혼 관계만 응답했을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다른 해와 같이 ‘배우자 있음’의 후속으로 혼인신고 여부를 질문했다면 그 안에 2% 내외의 비율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동거’라는 단어가 갖는 인식이다. ‘사실혼’ 관계는 이미 배우자 있음에 응답했기 때문에 ‘동거’에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배우자 있음’과 ‘동거’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굳이 ‘동거’를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실제 동거하더라도 법적 혼인 상태는 ‘미혼’이기 때문에 ‘동거’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면 실제 그대로를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7-1〉 사회조사 응답 가구 중 유배우자의 혼인신고 여부 비율

구분	2006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배우자 있음	75.5	71.8	68.2	66.6	65.3	63.7	61.2	60.5
혼인신고 함	97.6	98.1	98.0	98.0	97.8	-	97.6	97.7
혼인신고 안 함	2.4	1.9	2.0	2.0	2.2	-	2.4	2.4
동거	-	-	-	-	-	0.3	-	-

주: 1) 가중치 적용하였음.

2) '배우자 있음'의 수치는 전체 100% 중의 비율을 의미하며, 혼인신고 여부는 '배우자 있음'을 100%로 하였을 때의 비율을 의미함.

3) 2018년 '동거' 비율은 조사에 '동거'라는 선택지가 개별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에서의 비율을 구함.

자료: 통계청, (가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전국 단위 조사 중 가족과 관련된 조사에서 동거의 비율을 볼 수 있는 ‘가족과 출산조사’와 ‘가족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가족과 출산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가구의 2.9%가 비혼 동거 가구에 해당했고, ‘가족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2.6%가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 가구에 해당했다. ‘가족실태조사’는 ‘사회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2.5%가 혼인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렇게 보면 전체 중 2.9%로 나타난 ‘가족과 출산조사’의 비혼 동거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또한 질문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가족과 출산조사’의 경우는 ‘현재 함께 사는 배우자/파트너/애인이 있습니까?’, ‘혼인신고를 하였습니까?’의 질문이고, ‘가족실태조사’는 ‘가족과 출산조사’와 유사하게 혼인 상태 중 ‘배우자 있음(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에 응답한 경우, ‘혼인신고 하였습니까?’로 질문하였다. ‘사회조사’는 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있음’을 선택하면 ‘혼인신고 하였습니까?’로 후속 질문이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 ‘사회조사’에서는 질문 자체에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배우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는 미혼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족과 출산조사’는 조사 대상 연령이 만 19세~49세로 ‘가족실태조사’(만 12세 이상)나 ‘사회조사’(만 13세 이상)의 경우보다 젊은 층에 한정되어 있어 동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7-2〉 전국 단위 조사에서 나타난 가구 및 혼인 상태 분포

(단위: %)

구분		비율
가족과 출산조사	전체	100.0
	비혼 동거 가구	2.9
	법률혼 가구	37.2
	이혼/별거/사별 1인 가구	8.6
	미혼 1인 가구	51.2

구분		비율
가족실태조사 (응답 가구 대표의 혼인 상태)	전체	100.0
	미혼	13.9
	유배우	61.9
	혼인신고 함	97.4
	혼인신고 안 함	2.6
	이혼/별거	10.5
사별	13.6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2) 여성가족부. (2021c).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1003086&itmDiv=2&nPage=3&itemId=2002&itemNm=%EC%82%AC%ED%9A%8C%EC%9D%BC%EB%B0%98>

그렇다면 비혼 동거를 경험하는 경우는 앞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의향을 확인해 보았다. 동거 후에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은 48.5%,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은 51.5%로 매우 유사한 수준에서 바로 법적 결혼을 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교제 상대가 있는 경우, 남성, 20대와 40대는 결혼 전 동거를 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동거에 대한 태도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비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40대가 20대와 비슷하게 동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이혼/별거/사별 카테고리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40대가 다수 포함되었을 가능성과,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40대 미혼의 경우는 결혼에 더욱 신중하거나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실제 생활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 등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표 7-3〉 향후 결혼할 의향 있는 경우의 결혼 전 동거 의향

(단위: %, 명)

구분		동거 후 결혼할 생각	바로 법적으로 결혼할 생각	전체 (명)
전체		48.5	51.5	100.0 (3,229)
현재 교제 상대 $\chi^2=20.59^{***}$	있음	53.4	46.6	100.0 (1,309)
	없음	45.2	54.8	100.0 (1,990)
현재 혼인 상태 $\chi^2=2.65$	미혼	48.3	51.7	100.0 (3,234)
	이혼/별거/사별	58.5	41.5	100.0 (66)
성별 $\chi^2=22.99^{***}$	남자	52.0	48.0	100.0 (2,123)
	여자	42.1	57.9	100.0 (1,176)
연령 $\chi^2=30.06^{***}$	19~29세	51.0	49.0	100.0 (2,340)
	30~39세	39.5	60.5	100.0 (718)
	40~49세	50.1	49.6	100.0 (241)

주: 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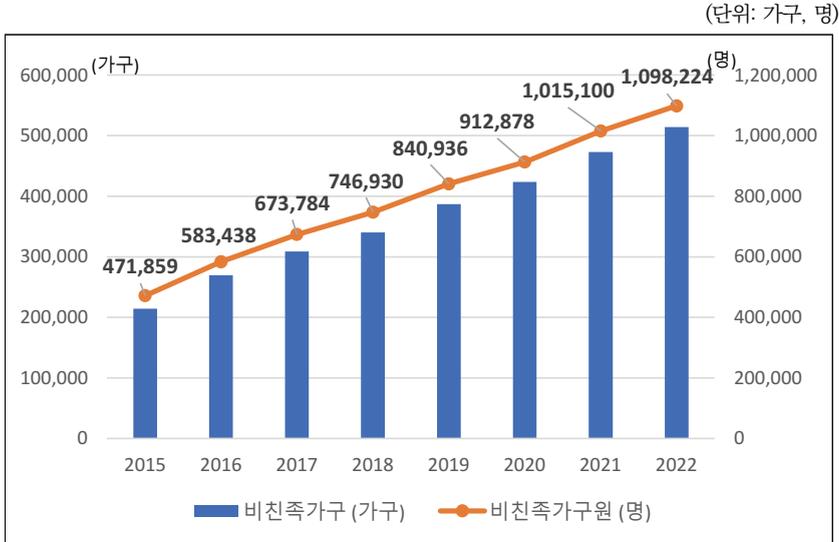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사회조사’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동거에 대한 태도는 수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물론 이 태도가 변한 만큼 동거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편견이 감소할 것이고 동거 생활의 선택에 대한 부담 감소 등 인식 변화에 따른 삶에서의 변화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동거의 증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는 비친족 가구이다(KOSIS, 각연도c). 비혼 동거 커플은 현재 한국의 통계 수집 체계상 미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가구 구성에서는 1인 가구나 비친족 가구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이와 함께 비친족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친족 가구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친족 가구원 수 또한 증가해 2021년에는 10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KOSIS, 각연도c).

[그림 7-3] 비친족 가구와 가구원 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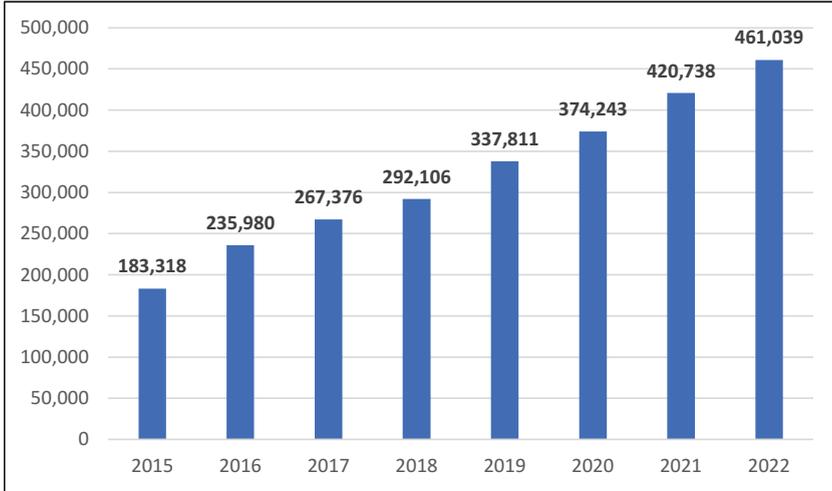
자료: KOSIS. (각연도c). 인구총조사,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비친족 가구 중 특히 2인 비친족 가구는 비혼 동거 커플이 포함되었을 확률이 더 높다. 이 수를 확인해 보면, 위의 비친족 가구, 가구원 수의 증가 그래프의 모양과 유사하게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2022년 46만 가구를 넘어선 수준이다(KOSIS, 각연도c).

이 비친족 가구와 비친족 가구원 수, 2인 비친족 가구는 지금까지의 증가에 더해 장래 가구 추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KOSIS, 각연도d), 비혼 동거 수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림 7-4] 2인 비친족 가구 증가 추이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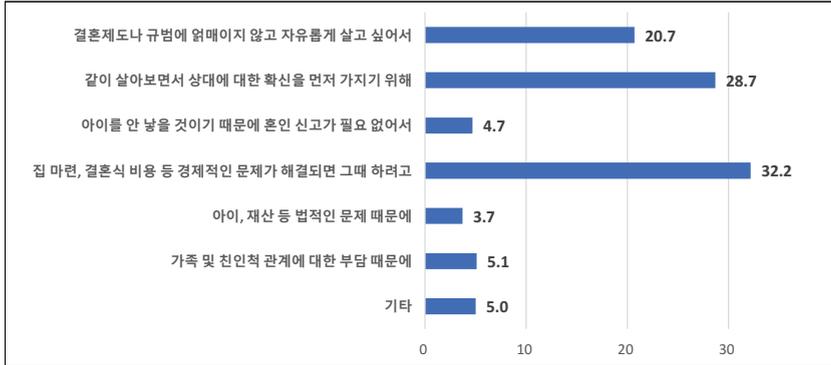
자료: KOSIS. (각연도c). 인구총조사,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일반가구) - 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vw_cd=MT_ZTITLE&list_id=A12_2015_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3. 비혼 동거의 이유와 성격

현재 동거 생활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 연기 중인 경우가 32.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동거를 통해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것이 28.7%,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20.7%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7-5]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주: 1) 기타: '결혼식 먼저 하려고',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부모의 반대', '나이가 어려서' 등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전국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비혼 동거 커플은 다수가 혼인신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혼인신고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혼인신고 연기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한 과정이나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와 같은 동거 이유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자녀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거를 택했다는 응답도 혼인신고 계획이 있는 집단과 비교되는 점이였다.

<표 7-4> 혼인신고 계획에 따른 현재 혼인신고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가장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자유	② 상대 확신	③ 무 자녀	④ 경제 문제	⑤ 법적 문제	⑥ 가족 부담	⑦ 기타	전체 (명)	
전체	20.7	28.7	4.7	32.2	3.7	5.1	5.0	100.0 (336)	
혼인신고 계획	있음	20.2	28.7	3.2	34.3	3.7	4.4	5.5	100.0 (306)
	없음/모름	26.4	28.2	19.4	10.6	3.6	11.8	0.0	100.0 (30)

주: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비혼 동거의 이유에서 단독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주거 등이 확보된 이후 결혼을 하기 위해서로 결국 '결혼 전 단계로'의 동거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테스트' 성격의 동거도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아래 동거 성격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동거의 이유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인 것은 '제도와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의 동거이다. 이는 아래 동거 성격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두 번째 성격을 가진 동거도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표 7-5〉 동거 유형과 성격

구분	동거 특성
1	결혼에 앞서 일정 기간 이루어지는 동거(결혼의 서막: prelude to marriage) 또는 시험적 결혼(trial marriage)
2	짧은 기간 동거 후 헤어져 일시적인 결합(temporary union)이 되는 강한 약속/책무가 없는 동거
3	자녀가 없거나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약속/책무 없이 오랫동안 함께 사는 안정적인 결합(stable union without commitment)으로의 동거
4	자녀도 있고 마치 결혼한 커플처럼 행동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자유로운 결합(free union)으로의 동거

자료: 'Villeneuve-Gokalp, C. (1991). From marriage to informal union: Recent changes in the behaviour of French couples.' 연구의 p.85를 중심으로 정리함.

앞서 살펴본 동거의 기간과 함께 동거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거의 기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합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결합의 성격을 가진 동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거의 이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알아가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유롭기 위해 동거를 택하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해 자발성을 가진 동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4. 비혼 동거 경험

1) 비혼 동거 이유와 계기

일부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동거의 이유이고, 다른 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유를 굳이 응답하자면 경제적인 이유나 자유롭고 싶은 이유 등이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계기로 본다면 주로 연애 과정에서 서로의 주거 공간에 방문하다가 한쪽이 집계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주거를 합치는 경우가 매우 흔했고,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였다.

2차 자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많은 부분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의 경우가 이 이유를 택한다.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커플은 동거를 미리 계획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서로의 필요 조건이 부합하여 연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FGI를 통해 확인하였다. 직장으로부터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자 직장장과 보다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상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마침 집을 계약할 시점에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의 이유로 함께 주거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원가정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혹은 직장생활로부터 도피하고자 상대방의 거주지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경제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 모두에서 편리하다는 것이 비혼 동거의 큰 이유가 되었다.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이유를 꼽자면 경제적인 이유가 그 외의 이유를 선택하지만 실제에서는 데이트 과정의 일부로 서로의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을 도모한 결과로 이해된다.

2) 비혼 동거의 장단점

현재 동거 중인 남녀는 모두 법적·도의적 책임감으로부터의 자유, 경제적 부담 해소, 정서적 안정감 등을 비혼 동거의 큰 장점으로 여겼다. 특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과, 상대방의 가족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공평한 관계로 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의 경우 상대방과 함께 살면서 안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일부는 이별 시 이혼에 비해 절차상 복잡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혼 후 현재 비혼 동거 중인 경우의 이전 결혼과의 비교를 통해 비혼 동거의 장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전 결혼에서 겪었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현재의 비혼 동거 관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나타났다. 동거 관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로를 배려하는 조심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해 갈등이 잦지 않다는 점을 장점이라 하였다. 반면 정말 헤어져야 한다면 이혼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이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비혼 동거의 단점으로는 주로 사회적 시선이나 관계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동거 사실을 숨겨야 한다는 점이 있었다. 동거는 당연히 결혼의 전 단계라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주는 주변인들과, 남녀 개인에게 부족함이 있어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불편함을 큰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아서 관계 자체에서 느껴지는 불안정함도 있어보였다.

사회적 인식 이외에 보험이나 주거비와 같은 영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이혼하였다면 동거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전 결혼을 통해 남

은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전 배우자가 친모이며 법적으로는 자신이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 또한 동거의 장점이지만, 그런만큼 관계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게 되는 점은 단점이 되기도 했다.

3) 결혼 경험이 동거에 미친 영향과 동거가 결혼 이행에 미친 영향

현재 이혼 상태인 경우 과거의 결혼 생활 경험은 동거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현재 비혼 동거를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전 결혼 생활에서 경험한 상대방 가족과의 갈등 측면에서 비혼 동거의 장점이 더 부각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자녀가 있는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보다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과정으로 동거가 편리한 삶의 방식이기도 했다.

비혼 동거 경험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동거 후 혼인으로 이어진 사례의 공통점은 비혼 동거의 경험이 결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동거 기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의지하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결혼보다 동거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서 먼저 살아보게 되었는데 뒤돌아보니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결혼의 허들을 넘는 과정이 되어 결혼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4) 결혼과 동거의 차이

이혼 후 비혼 동거 중인 경우는 결혼에 비해 동거 중일 때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차이로 꼽았다.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내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아내’, ‘며느리’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혼인 관계에 비해 ‘남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동거가 결혼에 비해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만큼 외도나 헤어짐 또한 쉽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외도나 헤어짐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비해 관계가 가벼울 것을 장점으로 여기거나 이것을 조심스럽게 여기는 두 측면이 모두 있었다. 후자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며, 결혼에 비해 관계 자체에 대한 책임감은 더 커졌다는 것이다.

5) 가족 내 가사 분담

서로를 존중하고 당연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 가사일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둘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 동거 생활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해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고 같이 기여하는 방식의 삶이 기본값이 되면서 가사일에 있어서도 남녀의 부담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혼 동거 커플 중 양육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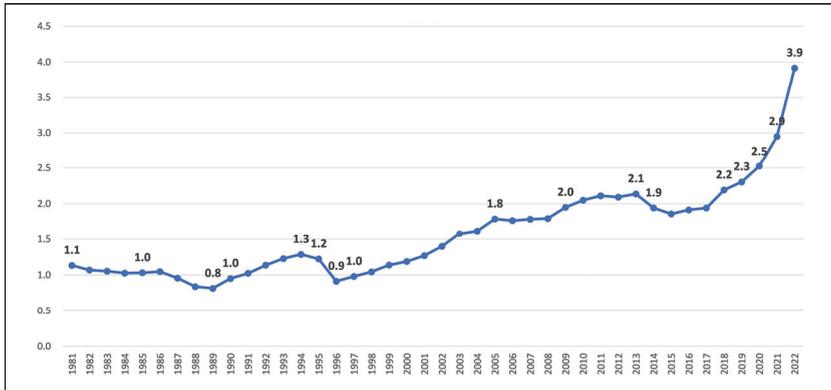
2차 자료를 활용한 가족 내의 가사 분담 비율 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혼인 집단과 비혼 동거 집단 중 평등하게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6점에 비혼 동거 집단이 더 가까워 혼인 집단보다 더 동등한 가사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사 분담의 결과는 만족 정도에서도 나타났다. 가사 분담에 만족하는 비율에서 비혼 동거 집단이 혼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 FGI 결과와도 맥을 함께했다.

5. 비혼 동거와 출산

한국에서 출산이라는 것은 혼인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흔하다. 혼인 상태에 따른 출생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오랫동안 1~2% 수준을 유지하였다. 최근 출생아 수 자체가 매우 작아지면서 비율이 약간 증가하여, 2022년의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 중 3.9%이다(KOSIS, 각연도a). 절반에 가까운 출생아가 결혼 관계가 아닌 커플 사이에서 태어나는 다른 국가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6] 혼인 외 출생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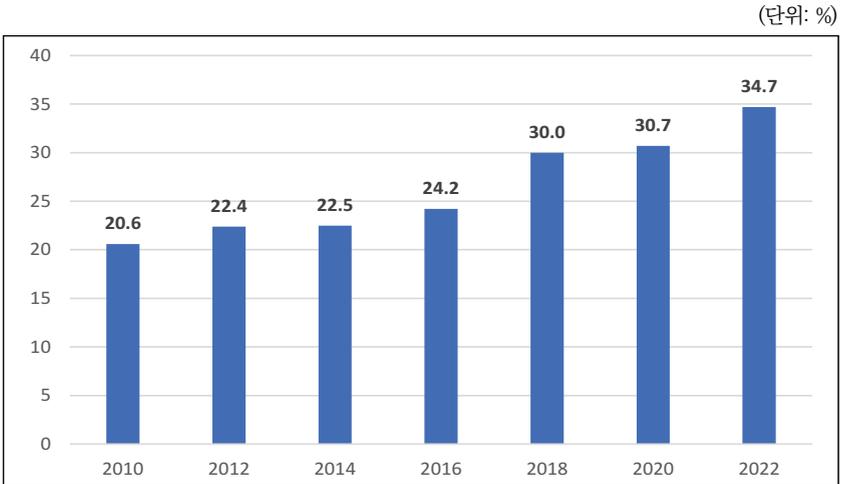
(단위: %)



자료: KOSIS. (각연도a). 인구동향조사,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 10. 12 인출.

인식의 측면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10년 전보다 10%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지만,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30%대의 동의 수준에 머문다. 결혼이나 동거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면 가장 변하지 않는 지표인 것이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동거를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7-7]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견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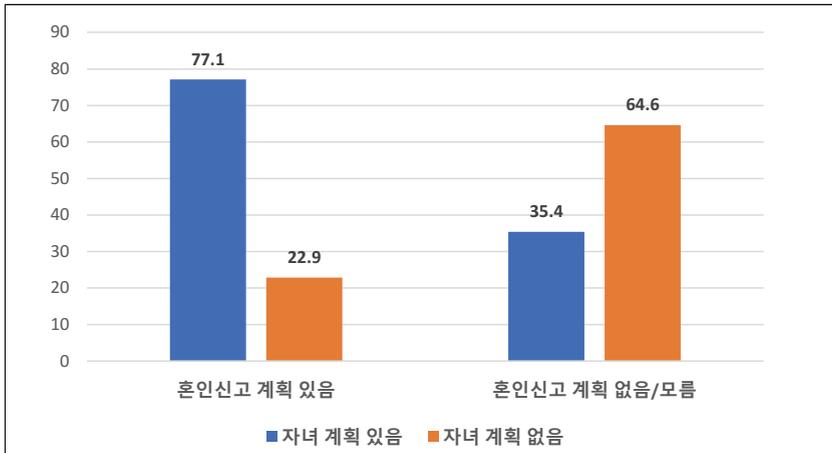
주: 제시한 수치는 '동의'(전적으로 동의 + 약간 동의)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동거하고 있지만 앞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집단에서의 자녀 계획 또한 높다.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비혼 동거 집단은 자녀 계획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현재 동거 선택의 이유에서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어서라는 응답을 생각해 본다면 출산 계획은 단순히 결혼 전 단계로의 동거가 아닌 비혼 동거의 전제 조건과

같은 역할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 계획된 기간이나 해결해야 할 조건을 정해 놓고 하는 결혼 전 동거가 아니라 삶의 한 형태로 동거 방식을 유지하는 이들에게는 비출산을 선택한 생각이 주변 환경에 의해 출산이라는 선택으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7-8] 혼인신고 계획에 따른 자녀 계획

(단위: %, 명)



주: 1) 혼인신고 계획 있음 306명, 없음/모름 30명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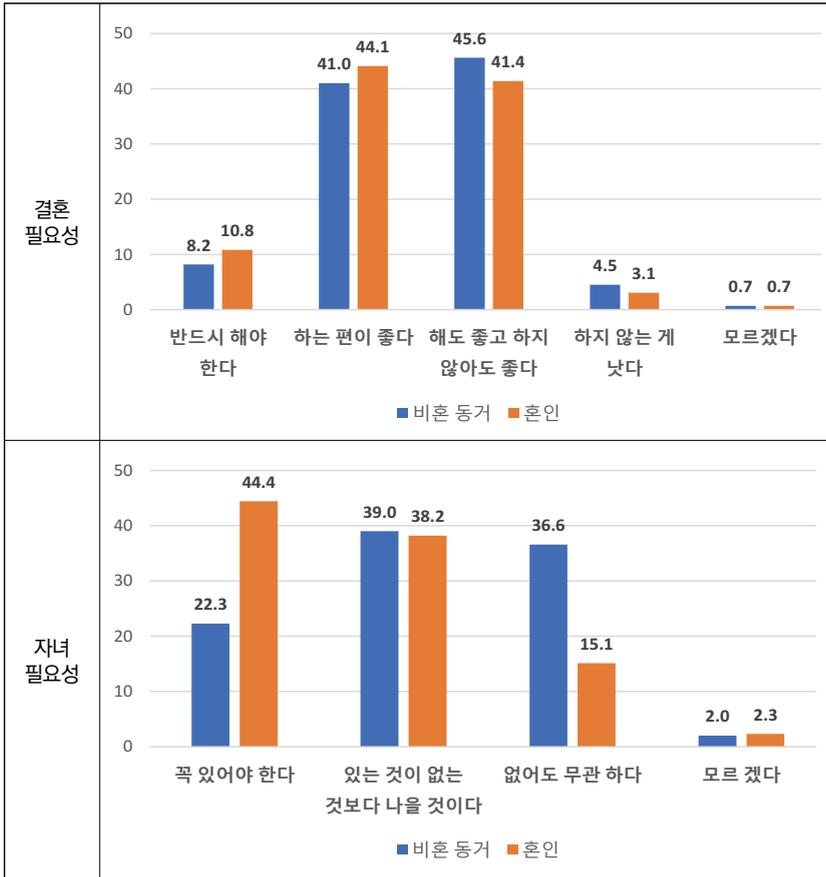
동거 집단과 혼인 집단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 보면, 결혼에 대해서는 두 집단 사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동거 집단이 혼인 집단보다 자녀는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혼인 집단에서는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동거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 자료는 현재 동거하고 있지만 향후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경우보다는 혼인신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혼인 집단과 다른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7-9]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비혼 동거와 혼인 집단의 차이

(단위: %)



주: 1) 동거 336명, 혼인 7,322명
 2) 가중치 적용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현재 비혼 동거 집단의 FGI 결과에서도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출산을 하겠다는 타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자신 스스로는 비혼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다. 일부 참여자는 나아가 동거 커플 사이에서 출산을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비혼 동거 커플 사이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자녀가 받게 될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받지 못하게 될 경제적 혜택 등이 비혼 출산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기존 조사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FGI 참여자 대부분이 출산에 대한 의향 자체가 높지 않았다. 비혼 동거 경험은 비출산 생각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거나, 오히려 동거를 통해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렵겠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그것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을 때라는 견해로 집약되었다. 즉 현재 비혼 동거 관계를 유지하면서 출산을 하는 결혼 밖 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하며, 향후 출산을 하게 된다면 법률혼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앞서 동거의 이유와 동거의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를 종합해 한국 사회의 동거 확대 단계를 가늠해 본다면, 아래 표에서 두 번째 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동거가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수준은 아니지만 동거 경험이 흔해지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유가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거 선택 이유와 성격에서 결혼 전 단계의 동거, 또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으로서의 동거를 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여전히 출산과는 거리가 있는 동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동거 확산 수준은 두 번째 단계까지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세 번째 단계의 동거와 같이 결혼과 큰 관계없이 비혼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고 출산의 측면에서 보더

라도 세 번째 단계에는 이르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 가장 가깝다고 판단된다.

〈표 7-6〉 한 사회의 동거 확대 과정

단계	동거 특성
1단계	결혼하는 것이 더 흔한 사회 소수의 일탈적인(deviant) 현상으로 이해
2단계	관계를 테스트하는 결혼 전의 서막/전주곡(prelude)이나 수습 기간 (probationary period)으로 동거가 가능 대부분 아이가 없음
3단계	동거가 결혼의 대안(alternative to marriage)으로 사회에 용인 결혼한 부부만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님
4단계	동거와 결혼의 구분이 어려움 동거 관계와 결혼한 부부 사이 모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회

자료: 'Kiernan, K. (2001). The rise of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outside marriage in Western Europe.' 연구의 p.3을 중심으로 정리함.

6. 비혼 동거 제도와 국제 사회로부터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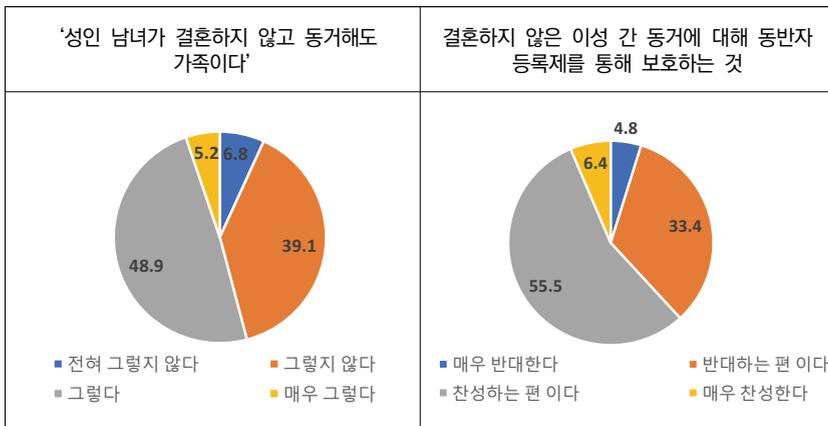
최근 한국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관념적인 이해보다 가족 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강해 보인다. 비혼 동거 관계를 가족이라고 명명하거나 인정하는 것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태도는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성인 남녀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응답은 54.1%이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61.9%로 가족의 개념 안에 수용하는 정도보다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더 긍정적인 양상이다.

최근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법적인 관계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친밀성을 가지고 가족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을 다른 조사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c).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약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앞

으로 새롭게 가족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대 연령층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확대가 분명하다. 나아가 제도에 대한 생각은 훨씬 더 현실적이다.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 다른 삶의 형태를 가족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규범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서 그 수용 범위는 더욱 높아진다.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도보다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더 많이 찬성한다.

[그림 7-10]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가족 인정과 제도적 보호 관련 태도

(단위: %)



주: 19세 이상 국민 총 8,000명에 대한 응답 결과이며, 가중치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법제도는 많은 부분이 법적으로 묶이지 않은 관계에 대해 보호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 현장에서의 보호자 지위 인정, 돌봄 관계에 대한 휴가 권리 인정 등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서로에 대해 가질 수 없는 권리이고, 지원 혜택 측면에서는 주로 주거 지원 정책에서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대상이 되지 않은 경

우가 흔히 지적된다.

이러한 제도 측면에서 비혼 동거의 단점은 이들의 정책적 욕구로 연결되었는데, 특히 결혼 대신 비혼 동거를 택한 젊은 층에서는 주거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혼 동거 커플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한 부여나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더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책적 대상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프랑스 PACS와 같은 파트너십 등록 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는 제도가 포괄하는 범위가 중요해 보였다. 제도를 통해 비혼 동거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측면까지는 대부분 동의하였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 및 혜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견해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되었다. 그리고 비혼 동거는 제도나 법적 구속이 없는 관계로 이별 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는 것과 관계 자체가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징이 동거 선택의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생겨도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보였다. 결국 제도를 이용할 것이면 결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사회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제도 변화로 크게 이끌 수 있다는 지점이 있었다. 한국과 같이 가족과 관련해 강한 고정관념이 있는 사회는 강한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인식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인식의 개선을 위해 제도는 무조건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제도화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동거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의 자율성을 높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사회 발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혼 동거 관련 제도의 논의에서 시민연대계약제도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PACS 제도를 종종 마주한다. 이 제도는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현재 이성 사이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프랑스 다수의 아동이 동거 관계에서 출생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때도 이 제도를 검토하곤 한다. 그러나 PACS 체결이 혼인만큼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의 출생은 혼인 관계에서의 출생보다 많지 않고(Insee, n.d. b) 동거 관계의 출생이 높다(OECD family data, n.d.).

이에 더해 PACS가 외국인의 이용이 자유롭고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데 이점이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동거를 유지하는 관계가 한쪽이 외국인이라면 PACS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법률혼 이외에 사실혼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결혼과 유사한 제도보다 오히려 벨기에 법정동거와 같은 비교적 느슨한 관계에 대한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적 함의

그동안은 한국 사회에서 동거 문화가 흔하지 않았고, 설령 실제 동거를 택한 사람이 많았더라도 그 개인이 스스로의 생활 방식을 드러내기보다는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제도적 욕구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드물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혼 인구의

증가, 개인 삶의 방식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변화된 사회 속에서 비혼 동거 관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이 절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비혼 동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과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꾸려나가야 할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논의로 이 절을 구성한다.

1. 비혼 동거 통계 및 자료 생성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통계와 조사 자료 등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이다. 논의해야 할 주제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은 논의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하거나 풍부하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인구에 대해 인구총조사에서 조사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 조사에서도 동거 관계를 구분하는 조사는 많지 않다. 앞서 연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몇몇 가족과 관련된 대규모 조사에서 그 관계에 대한 구분을 지어 조사한 결과들이 최근에 자료화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비혼 동거 논의를 이어 나가기 위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비혼 동거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가족이 다양해지면서 가구 통계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족 모습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가구 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가구원 간의 관계 파악에서 ‘결혼한 배우자’,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

인구총조사 가구원 관계 항목은 현재 ‘배우자’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혼인신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7-11] 2020년 US Census의 가구 대표자와의 관계 선택지

3. How is this person related to Person 1? Mark ONE box.

<input type="checkbox"/> Opposite-sex husband/wife/spouse	<input type="checkbox"/> Father or mother
<input type="checkbox"/> Opposite-sex unmarried partner	<input type="checkbox"/> Grandchild
<input type="checkbox"/> Same-sex husband/wife/spouse	<input type="checkbox"/> Parent-in-law
<input type="checkbox"/> Same-sex unmarried partner	<input type="checkbox"/> Son-in-law or daughter-in-law
<input type="checkbox"/> Biological son or daughter	<input type="checkbox"/> Other relative
<input type="checkbox"/> Adopted son or daughter	<input type="checkbox"/> Roommate or housemate
<input type="checkbox"/> Stepson or stepdaughter	<input type="checkbox"/> Foster child
<input type="checkbox"/> Brother or sister	<input type="checkbox"/> Other nonrelative

자료: U.S. Census Bureau 홈페이지. (n.d.). United States Census.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decennial/2020/technical-documentation/questionnaires-and-instructions/questionnaires/2020-informational-questionnaire-english_DI-Q1.pdf에서 2023. 10. 4. 인출

동거 관계에 대한 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혼인 상태는 ‘현재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이 적절하며 ‘동거’라는 항목을 선택지에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과거 한 차례 시도 후 다시 제외되긴 했지만, 만일 혼인 상태 파악에 있어 ‘동거’를 선택지로 구성한다면, 한국에서는 동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동거’라는 선택지를 국가 인구총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포함했다면 한국 사회의 동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방식은 여전히 혼인 상태 질

문에 대한 선택지 구성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 사회의 낙인이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비혼 동거 관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편한 상황에서는 실제의 규모보다 과소 평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처음부터 정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의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 단위에서 조사가 반복된다면 과소 평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가구 내 관계에서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의 선택지를 추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그 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출산 장려를 위한 비혼 출산 지원 정책 방향 재검토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논의에서 또 필요한 것은 비혼 동거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 관계에서 당장 출산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즉 제도의 목적을 저출생 현상을 직접, 단기에 해결하는 것에 두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 저출생 현상 대응의 관점에서 비혼 동거,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저출생 현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책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이슈들까지 다루어지기도 한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등 전통적 가족에 대한 강한 기준을 가진 사회에서 비혼 동거와 관련된 정책이 논의된다는 사실은 한국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변화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 논의의 배경과 목적이 출산을 늘리는 것에 직접 향해 있다면 한국 가족 정책의 발전 측면에서 한계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 관련 정책을 논함에 있어 가족 변화의 측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나아

가 차별 제거나 평등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에 있어서 결혼 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부터의 원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졌다. 한국은 결혼 안에서의 출산을 기본값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출산 비율은 극도로 낮다(KOSIS, 각연도a; OECD Family Database, n.d.). 즉 혼인율과 출산율이 비교적 분리되어 움직이는 다른 유럽 및 서구 국가들과 달리 혼외 출산율이 낮은 국가인 한국이나 일본은 혼인과 출산이 너무나 밀접하게 움직인다.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지다 보니, 돌봄 관계를 보호하려는 원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출산 증가를 목적으로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 마련을 고려한다거나, 혼인 여부에 관계없는 출산에 따른 주거 지원 정책이 등장한다(국토교통부, 2023.12.27.).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주거 지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적 목적에서 출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혼인한 커플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결혼하기 전에 출산해서 이 지원을 받는 경우의 대다수는 오래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혼인한 커플 외에는 미혼모/부 가족이 이 정책에서 혼인하지 않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혼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아 혼인 신고하지 않고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면 그 가족은 법적으로 미혼모/부 가족에 해당된다. 즉 이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미혼모/부 가족을 포괄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가족 다양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시민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길러도 괜찮다는 판단을 할 만큼의 법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을 출산의 목적으로 논의하거나

비혼 동거가 아닌 비혼 출산부터 포괄하려는 정책적 접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에서 비혼 동거 방식을 택한 많은 경우는 출산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출산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 환경과 분위기상 동거 커플이 출산을 계획하거나 비출산에서 출산으로 생각이 바뀐다면 법률혼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입장이 다수이다. 따라서 제도가 생기고 안정되어 그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게 인식된다면 몰라도, 적어도 당분간은 동거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출산을 제고에 도움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혼외 출산율이 높고 출산율도 높아 출산 정책과 관련해 빈번하게 언급되는 국가인 프랑스는 동거나 PACS, 결혼 등을 선택한 결과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회이다. 그리고 결혼과 유사한 수준으로 PACS 이용이 많지만, PACS 커플의 출산이 매우 높지는 않다. 동거 커플의 출산도 많고 커플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자녀를 낳아도 편견이나 어려움이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양육 환경 또한 개인이 고군분투하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서 출산을 원한다면 그 이행에 있어 장애나 고민거리가 적어 그만큼 주저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최근에는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미혼으로 남거나 비혼 동거 방식을 택하는 이유로 결혼의 장애도 작동하지만, 출산의 장애도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출산을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 태어난 아이는 가족 상황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지(김지혜, 2023), 사회적 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은 채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의 출산을 지원한다는 약속은 자유로운 출산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혼 동거를 하기도 힘든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하면 지원한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힘을 쏟는 것이다. 비혼 동거 사이에서의 출산 이행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먼저 개인이 맺는 관계와 그 형태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결혼하고 함께 사는 것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수준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출산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동거가 사회에 확산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출산에 대해서는 비혼 출산이든 혼인 출산이든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출산율이 이토록 낮은 경우에는 모든 출생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혼외 출생이 많은 국가의 출산율이 높다는 현재의 상태를 예로 들어서 한국의 비혼 출산을 논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국외의 해당 국가들이 어떠한 조건과 배경에서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한국에 필요한 부분을 현명하게 적용하는 면밀한 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의 혼인율이 낮아지는 이유나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국제적인 이유와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만의 특성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혼 동거 역시 동거 선택의 이유나 확산 과정 및 단계 등에 있어서 한국형 비혼 동거의 특성이 있으며, 비혼 동거와 혼인 사이의 차이나 관계 또한 국제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비혼 동거에 대한 정책을 저출생 현상과 관련해 고민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른 국가의 사례와는 차별된다. 비혼 동거 관계

에 관한 정책은 개인 및 관계에 대한 보호를 일차 기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결혼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는 부수적인 역할을 정책적 접근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고민보다는 비혼 동거든 결혼이든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다른 국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한국 사회가 고민하는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목적은 부수적 효과(side effects)를 통해 달성되는 단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제도 검토 방향

앞서 한국 사회가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비혼 동거 관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 생명·건강·돌봄 및 보호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 부여

의료 현장이나 장사, 돌봄 등에 있어서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러 번 논의가 되어 왔다(김순남, 성정숙, 김소형, 이종걸, 류민희, 장서연, 2019; 김영정, 기나휘, 2020).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이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비혼 동거 경험에 대한 FGI 결과, 이혼 후 현재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른 집단보다 연령이 약간 높은 특성이 있었는데, 이 집단에서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보호자 인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앞서 연구 내용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료법」에서 보호자의 범위가 반드시 법적 가족으로만 제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관행처럼 법적인 관계인 사람이 수술 동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하다. 장사와 관련해서는 법개정이 되기도 하는 등 변화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리고 돌봄의 측면에서도 돌봄 휴가 적용은 법적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 법적인 대상자 내에 속하지 않으면 공동 생활의 실체가 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다. 비혼 동거 관계는 위기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면 긴급한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연구의 FGI 주요 대상은 결혼과의 연장선상에서 동거를 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자를 증명해야 하는 경험이 다수에게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연령이 약간 높은 집단의 동거 경험에서는 병원에서의 보호자 확인 절차로 인해 결국 법적 가족이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 동거인으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경험이 공유되었다. 비혼 동거의 기간이 증가하고 동거 집단의 연령도 증가한다면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비혼 동거 커플은 더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노년의 비혼 동거 집단에는 더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동거 관계를 가족 관계와 같이 권한을 주고 가족 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그 범위의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일반 시민도 동거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수준보다는 관계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혼 동거 경험자 내에서도 지원이나 혜택에 대한 동의 수준은 다양했으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부여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 생명과 직결된 보호자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이를 통해 개인이 택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나아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개인을 친밀한 관계를 가진 서로가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많지 않다.

나. 정책 영역별 지원 대상 확장 방식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요구가 많거나 이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몇 개의 정책 영역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식에 대한 논의는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논의로 시작된다.

기본적인 권리 부여 내용 이외에 비혼 동거 커플에게 다른 가족과 같은 지원이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혼 동거 경험자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나뉘었다. 특히 FGI 주요 대상자들의 연령대에서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이벤트를 경험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혜택인데, 비혼 동거 경험자들은 이러한 지원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동거라는 생활 방식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권리나 혜택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비혼 동거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법적인 권리나 혜택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니다.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그 혜택을 받

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즉 과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비혼 동거 생활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생활 방식을 유지할 생각이어도 국가의 지원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다.

그러나 결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서 대상 범위를 비혼 동거 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일부 비혼 동거 커플의 결혼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 생각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국 결혼으로 이행한 비혼 동거의 경험자들이 처음에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게 만든 것은 결혼에 대한 막연함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장애이다. 이 집단은 동거 생활에서 상대와 삶을 공유하는 것에서 장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하려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 경제적 조건을 큰 허들(hurdle)로 인식하고 결혼을 막연히 멀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둘이 살다 보니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갖추어져 나가고 전에 생각한 것보다 거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비혼 동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막연함과 두려운 감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동거 생활을 통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고 결국 결혼으로 이행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동거 커플이 아니라면, 커플의 동거 경험이 결혼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지원이나 혜택을 정확히 혼인신고 이후로 두기보다는 동거 생활이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같이 필요한 정책별 영역에서 대상을 확대해 동거 커플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영역은 예상할 수 있듯이 주거 지원일 것이다.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함께 지낼 장소이다. 결혼

에 있어서 가장 큰 준비 또한 주거인데 매우 무겁고 어려운 준비물로 인식되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서울이나 수도권과 같이 그 준비를 위한 비용이 매우 고비용인 지역에서는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위 결혼이나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인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 준비가 더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 출산한 경우에 대한 주거 정책 등 어찌 보면 그 대상을 점점 다양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대상에 비혼 동거 커플을 고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출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돌이 생활할 공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생활하면서 결혼의 장애 크기를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다. 이는 친밀한 관계가 공유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마련에 대한 장애도 일부 극복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이미 극복해 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과정은 FGI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막연했던 결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작동함으로써 결혼 이행에 긍정적 경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어떤 정책 영역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동거 커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10.8). 법률혼을 하지 않은 커플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주민등록상 동거기록 등 공문서와 함께 아래의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실혼 확인보증서'의 내용은 난임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 두 명이 신청 시까지 1년 이상의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인 보증인 두 명에게 확인받는 것이며, 보증인은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9.10.8.).

를 증명하는 절차로 비교적 쉽게 제도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사용한 커플 중 법률혼 외 커플은 2020년과 2021년 2년 사이 6,379쌍(민서영, 2022.10.6.)으로 나타나 이용률 변화도 지속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정책에서 동거 커플까지 대상을 확대한 정책의 예를 바탕으로 주거 정책이나 다른 지원 정책에서도 동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동거 관계 등록 방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필요에 따라 정책 영역마다 개별로 지원 대상을 동거 커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커플의 관계를 매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지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작업이 추가되는 방식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사용자와 제공자의 불편을 줄임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은 동거 관계 등록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국외 동거 관련 제도 검토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국가마다 지원 범위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고,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필요에 따라 수정을 거쳐 결혼과 더 비슷해지기도 하는 등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 합의 수준이나 문화적 수용 수준 등을 고려해 동거 관계 등록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거 관계 등록 제도가 마련되면 이 증명을 활용해 다양한 적용 분야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 관계 등록을 한 커플에게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논의한 정책 영역별 대상 확장을 이 관계 등록제와 연동해서, 등록을 한 커플은 자동으로 동거 관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 영역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사실혼에 적용되는 범위를 이 동거 관계 등록 제도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

제는 정확하게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상 범위도 보수적이며 정책적 대안으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황두영, 2020) 제도를 통해 등록된 관계에 대해 현재 사실혼 당사자가 갖는 권리의 범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책 영역별 대상 확장과 달리 이 방식은 일단 동거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원할 정책 영역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 영역에 대한 논의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제도가 결혼과 차이가 크지 않게 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이용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동거 관계 등록 제도 마련을 고려함에 있어 현재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적 지원 확대

동거 관계 등록제를 마련해 제도에 등록하면 권리 부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후 공동 계좌, 공동 주소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면 정책적 지원까지 혜택을 넓히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해 보호자나 위급시 돌봄 자격 부여 등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높다. 따라서 관계 등록 초기에는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해 동거 관계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후에 몇 가지 공문서를 통해 동거 기간, 공동 경제, 거주지 공유 등을 근거로 실질적 부양과 돌봄을 실천하는 관계에 대해 대상이 되는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도 적용할 수 있다.

2) 가법지도 무겁지도 않은 제도

연구 내용에서 각 국가의 동거 등록 제도는 그 국가의 사회·문화·역사적 환경에 따라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유럽 국가라 하더라도 동거 등록 제도 중 비교적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PACS 같은 경우보다 벨기

에 법정동거가 더욱 가벼운 결합 방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법적 가족·법률훈이 오랜 시간 동안 가족과 혼인의 중심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결혼에 가까운 제도에 대한 수용도가 쉽게 높아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정동거나 일본의 파트너십 등록제와 같이 결혼과는 차이가 있는 형태의 제도가 한국에 더 적절할 수 있다.

동거 생활 경험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연구 결과, 결혼과 가까운 제도라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생활면에서 직접적인 혜택이 뚜렷하지 않다면 제도로부터 자유로움을 택한 비혼 동거 커플은 굳이 어설픈 제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거 관련 제도는 다양한 삶만큼 섬세하고 민감성과 구체성을 띤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제도보다 동거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타깃 층의 성향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제도 이용 수요 높은 지역에서의 시작

한국의 어느 지역에 비혼 동거 커플이 더 많이 생활하고 있는지 절대적인 수나 그 비율을 알 수는 없다. 다만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혼자 가구를 형성한 청년이 많은 곳은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비친족 가구 수나 청년 1인 가구 수가 함께 높은 지역, 주거 비용이 높은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해 본다면 수도권에 비혼 동거 커플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는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의 면모를 갖춘 만큼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 다양성 수준이 한국 안에서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비혼 동거 커플이 많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도시나 지역에서는 그만큼 제도 사용 가능 대상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동거 등록 제도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다른 국가의 관련 제도 검토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 파트너십 등록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은 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도를 만드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틀은 유사하지만, 각 지역별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 여건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동거 관련 제도가 국가 단위의 제도로 마련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요구된다면 필요도가 높은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여 퍼져나가는 것도 제도가 자리잡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가 이성 간의 동거 커플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성 간의 비혼 동거 관계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향을 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한 보호가 반드시 이성 관계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21)의 추진 과제인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추진에서와 같이 ‘서로를 돌보는 친밀한 관계’를 제도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대한민국정부, 2021)이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차별을 줄일 수 있다. 자발적인 돌봄 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필요한 권한 부여(지위 인정)와 그들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를 구상하는 것은 서로 돌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의 고독이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할 만한 일이다. 한국 사회는 가족이나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방향성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설정한 방향에서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가는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세계 시민으로 평등성과 다양성을 갖춘 개개인이 이 변화한 생각과 태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4) 결혼에 대한 부담과 압박 제거,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다양성 및 자율성 확대와 보장

동거를 경험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동거 안에서도 연애에 가까운 경우와 결혼에 가까운 경우로 그 범위가 넓다. 그리고 선행연구(Kiernan, 2001)에 따르면 동거가 한 사회에 퍼지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사회에는 더 다양한 수준의 동거를 포괄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경우 아직 출산을 자유롭게 하는 수준의 동거보다는 결혼 전 단계의 동거가 많은 수준이고, 결혼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동거를 택하는 차원의 동거 등 이미 다양하다. 동거 방식을 택한 삶 안에서도 다양성이 크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친밀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나 가족 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법안의 가족 구성의 방식이 결혼으로만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전형적인 모습의 가족만을 인정하는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처럼 제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결혼이라는 것은 최근 청년들에게는 부담과 압박을 주는 이벤트로 인식되기도 한다. 부모 세대가 결혼하기를 기대하는 30대에는 결혼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결혼도 싫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 부모의 기대가 줄자 동거도 결혼도 자유롭게 상대만 있으면 선택해서 하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인터뷰 참가자의 말은 우리 사회가 청년층에 주는 결혼의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가 어떠한 제도로 인해 출산율이 증가했는지 관심이 많다. 앞서 청년의 이야기와 프랑스의 문화를 연결해 생각해 보면, 프랑스 사회는 가족 형성과 구성에 대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의 사용이 자유로우며, 그에 따라 여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 될수록 선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부담과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다른 단계로의 이행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무언가 선택할 사고와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주어지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로 작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변화와 흐름을 고려한다면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의 속성을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큰 시각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 연구는 동거를 택한 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해 결혼과 관련된 비혼 동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지만, 연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제도가 있는 국제 사회 중 이성 중심의 제도를 택한 사회는 없다. 게다가 한국은 노후의 돌봄 관계 등에서도 동거의 이슈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대한민국정부, 2021)에서 서로 돌보는 친밀한 관계 보호를 위한 ‘(가칭)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을 추진 과제로 담고 있다. 결혼과 관계없이 자신이 구성한 가족과 이들에 대한 서로 돌봄을 이미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만 보더라도(허민숙, 2022) 앞으로 어떠한 방향의 정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실마리는 충분히 제공되어 있다.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키기보다 다양한 관계를 아우르는 방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발전된 법제도를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문헌〉

- 강승묵. (2015). 사실혼과 비혼동거에 관한 연구: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과 비혼 동거 해소시의 청산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6-3(51), 3-31.
- 계승현. (2022.9.24.). 여가부 “가족은 혼인·혈연·입양 단위”…사실혼·동거 배제.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4023500530>에서 2023. 9. 1. 인출.
- 국토교통부. (2023.10.5.). 신흰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876에서 2023.10.10. 인출.
- 국토교통부. (2023.12.19.).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9169에서 2023.12.20. 인출.
- 국토교통부. (2023.12.27.).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재출지원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10에서 2023.12.29. 인출.
- 김병규. (2023. 6. 20.). OECD 41.5%는 비혼출산, 한국은 2.2%…동반가족등록제 고려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133000530>에서 2023.8.17. 인출.
- 김상용, 안문희. (2022).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중앙법학*, 24(3), 7-52.
- 김순남, 성정숙, 김소형, 이종걸, 류민희, 장서연. (2019).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가족구성권연구소, 서울특별시의회.
- 김영정, 기나휘. (2020).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비혈연 가족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원정, 김순남. (2018). 동거 가구의 변화와 한국의 결혼·가족제도: 1995-2016

- 혼인신고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4), 61-90.
- 김지혜. (2023). 가족각본. (주)창비.
- 김진우. (2019.1.29.). 동성도, 사실혼도 '파트너;...일본 지바시 인증 제도 첫 실시.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01291701001#c2b>에서 2023.8.17. 인출.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0.8.).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는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5426>에서 2023.11.27. 인출.
- 민서영. (2022.10.6.). 난임시술 가능해진 뒤 '사실혼 부부' 6000여 쌍 지원 받았다.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10061334001#c2b>에서 2023.11.27. 인출.
- 박경재. (2013). 자발적 사실혼의 법리: 황혼동거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7(3), 167-197.
- 박복순, 박선영, 김영란, 정다운, 류민희. (2019).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박준혁. (2022). 프랑스 PACS에 관한 연구-2006, 2016년 개정을 반영하여. 법학논총, 70, 115-1473.
- 백시우, 진재훈. (2017). 비혼인 생활 공동체의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결합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해외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2017인권논문수상집, 189-216.
- 변수정, 김혜영, 백승흠, 오정아, 기재량. (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10.8.). 2019년 난임 관련 신청서 등 서식.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351103에서 2023.11.27. 인출
- 보건복지부. (2022). 2022년 장사업무안내.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2.5.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bid=0026&act=view&list_no=371399에서 2023.9.10. 인출.
- 보건복지부. (2023).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3~'27)」 수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467에서 2023.9.10. 인출.
- 송덕수. (2022). 친족상속법. 박영사.
- 송정현. (2023.9.19.). [인구 절벽 시대] “집도 못 사는데, 결혼은 무슨”...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숙제”, 디지털조선일보. https://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3/09/18/2023091880267.html에서 2023.9.18. 인출.
- 안문희. (2012).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PACS? 법과 사회, 42, 201-226.
- 안문희. (2017a). 프랑스의 판사 없는 이혼에 관한 연구—2016년 11월 18일 법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31(1), 329-354.
- 안문희. (2017b). 프랑스증거법의 특징과 서증우선의 원칙—2016년 2월 10일 법규명령을 중심으로—. 民事訴訟, 21(1), 229-260.
- 안문희. (2023). 벨기에 법정동거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760, 120-144.
- 여성가족부. (2021a).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b).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부가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c). 2020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오세진. (2022.9.25.). 말 바꾼 여가부...사실혼·동거 가족 인정 안 한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0055.html>에서 2023. 9. 1. 인출.
- 윤진수. (2023).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 이연주. (2008). 동거와 한국가족: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동거자의 특성. 한국인구학, 31(2), 77-100.

- 임영수. (2010). 인적결합에 있어 사실혼과 연대적 결합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24(3), 119-152.
- 조은희. (2009).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대안에 관한 검토. *젠더법학*, 1-2(2), 1-38.
- 준 카르본, 나오미 칸. (2019). 결혼 시장: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 *시대의 창*.
- 최민지. (2022.9.23.). 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946#home>에서 2023. 9. 1. 인출.
- 통계청. (2022).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 환경). *통계청 보도자료*(2022. 11. 16.).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21772에서 2023. 5. 29. 인출.
- 통계청. (2022). 사회조사 결과. 원자료. MDIS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 통계청. (각연도a). 사회조사. 원자료. MDIS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4&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 통계청. (각연도b). 인구동향조사 혼인자료. 원자료. MDIS 홈페이지. <https://mdis.kostat.go.kr/ofrData/selectOfrDataDetail.do?survId=38&itmDiv=1&nPage=1&itemId=&itemNm=undefined>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html>

- 황두영. (2020).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서울: 사사 IN북.
- 허민숙. (2022). 가족 다양성의 현실과 정책 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NARS 현안분석, 제251호. 국회입법조사처.

〈국외 문헌〉

- Audrey Freynet. (2020. 10. 1.). Naissances en France: hors mariage et plus mixtes. Le Point. https://www.lepoint.fr/societe/naissances-en-france-hors-mariage-et-plus-mixtes-01-10-2020-2394527_23.php에서 2023.6.14. 인출.
- Bailey, E., & Rault, W.(2013). Are heterosexual couples in civil partnerships different from married couples? *Population & Societies*, 497(2), 1-4.
- Beigner, B. (1999). PACS: l'heure du droit. Proposition pour un statut unitaire du concubinage. *Droit de la famille*.
- Bénabent, A. (2010). *Droit civil: Droit de la famille*. Paris, France: Montchrestien: Lextenso.
- Catala, P. (1999). *Le PACS. Droit de la famille. Hors série*. Paris, France. CBS Statistics Netherlands. (2022). Marriages and partnership registration. <https://opendata.cbs.nl/statline/#/CBS/en/dataset/37772eng/table?ts=1658713430280>에서 2022.6.9. 인출.
- Cheng, Y. A. (2014). Changing partner choice and marriage propensities by education in post-industrial Taiwan, 2000-2010. *Demographic Research*, 31(33), 1007-1042.
- Courbe, P. (2009). *Droit de la famille*. Paris, France: Dalloz-Sirey.
- Danuco, M. (2023. 4. 25.). The Tokyo partnership oath system explained. <https://tokyocheapo.com/living/the-tokyo-partnership-oath-system-explained/>에서 2023. 10. 25. 인출.
- Di Giulio, P., Impicciatore, R., & Sironi, M. (2019). The changing pattern

- of cohabitation: A sequence analysis approach. *Demographic Research*, 40, 1211-1248.
- Donati, P. (2006). *Manuale di sociologia della famiglia*. 2nd ed. Toma-Bari: Laterza.
- Ferrari, G., & Toulemon, L. (2018. 4.). Is the Franch PACS similar to cohabitation or marriage? Recently merged census and tax data on partnership situations and transitions. Paper presented at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18, sessopm 156 Family Complexity and Diversity Outside the United States. Denver, Colorado: USA.
- Fulchiron, H., & Mallauris, P. (2006). *Droit de la famille*. Paris, France: L.G.D.J.
- Gassen, N. S. (2023). Global trends in cohabitation. In M. Daly, B. Pfau-Effinger, N. Gilbert, & D. J. Besharov (Eds.), *The Oxford handbook of family policy over the life course*(pp.349-366). Oxford University Press.
- Granet-Lambrechts, F. & Hilt, P. (2010). *Droit de la famille*. PUG: Fontaine, France.
- Granet-Lambrechts, F. (1999). *L'enregistrement des couples non mariés en Europe*, *Droit de la famille*. Hors série.
- Grimaldi, M. (2003). Réflexions sur le pacte civil de solidarité du droit français. *Répertoire du notariat*. Defrénois, 12, 813-824.
- Hertog, E., & Iwasawa, M. (2011). Marriage, abortion, or unwed motherhood? How women evalyate alternative solutions to premarital pregnancies in Japan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32(12), 1674-1699.
- Hiekel, N., Liefbroer, A. C., & Poortman, A-R. (2014). Understanding deiversity in the meaning of cohabitation across Europe.

-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 113-133.
- Iwasawa, M. (2004). Partnership transition in contemporary Japan: Prevalence of childless non-cohabiting coupl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12(1), 76-92.
- Jones, G. (2018). What is driving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low fertility countries? In D. L. Poston Jr. (Eds.), *Low Fertility Regimes and Demographic and Societal Change* (pp. 149-166). Springer.
- Kiernan, K. (2001). The rise of cohabitation and childbearing outside marriage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5, 1-21.
- Kim, J. H., Oliver, S. A., & Ryznar, M. (2017). The rise of PACS: A new type of commitment from the city of love. *Washburn Law Journal*. 56(1), 69-92.
- Klüsener, S. (2018). Spatial variation in non-marital fertility across Europe in the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ies: recent trends, persistence of the past, and potential future pathways. In Lithuania. In D. Leinarte & J. Kok (Eds.). *Cohabitation in Europe: A revenge of history?* (pp.105-133). Routledge.
- Lesthaeghe, R. (2020).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Cohabitation. In W. K. Halford & F. van de Vijver(Eds.), *Cross-cultural family research and practice*, 103-141. London: Elsevier.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n K. O. Mason & A.-M.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pp.17-62). Oxford: Clarendon Press.
- Lesthaeghe, R. (1991).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Interuniversity Programmes in*

- Demography IPD Working Paper No. 1991-2. Vrije Universiteit Brussel, Brussels. <http://interfacedemography.be/wp-content/uploads/2016/02/WP-IPD-1991-2.pdf>에서 2023.5.12. 인출.
- Martignani, L. (2011). ‘All together now!’ Couples and the ontological problem of cohabitation as a form of lif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21(3), 565-581.
- Maslauskaite, A., & Baublyte, M. (2018). Education and transition from cohabitation to marriage. In Lithuania. In D. Leinarte & J. Kok (Eds.). *Cohabitation in Europe: A revenge of history?* (pp.75-90). Routledge.
- Mogi, R., Raymo, H., Iwasawa, M., & Yoda, S. (2023). An alternative version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Changing pathways to first marriage in Japan. *Demographic Research*, 49(16), 423-464.
- Molfessis, N. (2000). La réécriture de la loi relative au PAC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a Semaine Juridique, Edition générale* n° 10, 399-407.
-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2020).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 Nuytinck, A. J. (2000). Das neue Personen-und Familienrecht in den Niederlanden. *StAZ*, 72/73.
- OECD Family Database. (n.d.). Cohabitation rate and prevalence of other forms of partnership. https://www.oecd.org/els/family/SF_3-3-Cohabitation-forms-partnership.pdf 2023.10.6. 인출.
- Perelli-Harri, B., & Bernardi, L. (2015). Exploring social norms around cohabitation: The life course, individualization, and culture. Introduction to Special Collection: ‘Focus on partnerships: Discourses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throughout Europe and

- Australia.' *Demographic Research*, 33(25), 701-732.
- Perelli-Harris, B. (2014). How similar are cohabiting and married parents? Second onception risks by union type in the United States and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0(4), 437-464.
- Pintens, W. (2000).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Ehe und Familie im privaten und öffentlichen Recht*, 47(2), 69/74f.
- Prinz, C. (1995). Cohabiting, married, or single: Portraying, analyzing and modeling new living arrangements in the changing societies of Europe. Aldershot: Avebury.
- Raymo, J. M. (2022). The second demographipc transition in Japan: a review of the evidence.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6, 267-287.
- Raymo, J. M., Iwasawa, M., & Bumpass, L. (2009). Cohabitation and family formation in Japan. *Demography*, 46(4), 785-803.
- Rindfuss, R. R., & VandenHeuvel, A. (1990). Cohabitation: A precursor to marriage or an alternative to being signle?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16(4), 703-726.
- Sassler, S., & Lichter, D. T. (2020). Cohabitation and marriage: Complexity and diversity in union-formation patter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 35-61.
- Syltevik, L. J. (2018). Cohabitation from illegal to institutionalized practice: the case of Norway 1972-2010. In D. Leinarte & J. Kok (Eds.). *Cohabitation in Europe: A revenge of history?* (pp.27-41). Routledge.
- Villeneuve-Gokalp, C. (1991). From marriage to informal union: Recent changes in the behaviour of French couples. *Population*, 3, 81-111.

東京新聞. (2023. 6. 4.). 異性の事?婚にも「パ?トナ?シップ制度」?象?大の動き・背景に選?的夫婦別姓・東京都?は?れ?味? <https://www.tokyo-np.co.jp/article/254464>에서 2023.9.16. 인출.

〈홈페이지〉

KOSIS. (각연도a). 인구동향조사.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vw_cd=MT_ZTITLE&list_id=A2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10.12 인출.

KOSIS. (각연도b). 혼인건수, 조혼인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3에서 2023.6.16. 인출.

KOSIS. (각연도c).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6&conn_path=I3에서 2023.11.10. 인출.

KOSIS. (각연도d). 인구총조사.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6&conn_path=I3에서 2023.11.10. 인출.

정부24 홈페이지. (n.d.). 민원안내 및 신청>혼인신고>혼인신고서. URL: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700000050>에서 2023.5.29. 인출.

주택도시시기금 홈페이지. (n.d.). 주택구입자금대출. URL: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에서 2023.9.26. 인출.

통계청 홈페이지. (n.d.). 사회조사 질문지 각연도. 통계설명자료>연도별 사회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01018>에서 2023.10.2. 인출.

belgium.be. (2022). Cohabitation légale. https://www.belgium.be/fr/famille/couple/cohabitation/cohabitation_legale에서 2023. 7. 29. 인출.

- belgium.be. (2022). Contrat de vie commune pour cohabitants. https://www.belgium.be/fr/famille/couple/cohabitation/contrat_de_vie_commune에서 2023. 8.2. 인출.
- belgium.be. (2022). Mettre fin à la cohabitation. https://www.belgium.be/fr/famille/couple/cohabitation/mettre_fin_a_la_cohabitation에서 2023. 8.2. 인출.
- Insee. (n.d. a). 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1.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에서 2023. 10.2. 인출.
- Insee. (n.d. b). One million civil-union(PACS) partners in January 201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1281137>에서 2023. 11.1. 인출.
- Service-Public.fr. (n.d.). Compete bancaire Joint.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412>에서 2023. 5.2. 인출.
- STABEL. (n.d. a). La Belgique en chiffres. Cohabitation légale. <https://statbel.fgov.be/fr/themes/population/partenariat/mariages#panel-12>에서 2023.11.30. 인출.
- STABEL. (n.d. b). La Belgique en chiffres. Mariages. <https://statbel.fgov.be/fr/themes/population/partenariat/mariages#panel-12>에서 2023. 11.30. 인출.
- T.I. 123 - COHABITATION LEGALE, (2020. 1. 28). https://www.ibz.rrn.fgov.be/fileadmin/user_upload/fr/rn/instructions/liste-TI/TI123_Cohabitation_legale_20200128.pdf에서 2023. 8.2. 인출.
- The World Bank. (n.d.). Fertility Rate, Total.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dsid=2&series=SP.DYN.TFRT.IN>에서 2023. 10. 6. 인출.
- U.S. Census Bureau 홈페이지. (n.d.). United States Census 2020. <https://www2.census.gov/programs-surveys/decennial/2020/technical-documentation/questionnaires-and-instructions/questionnaires>

/2020-informational-questionnaire-english_DI-Q1.pdf에서 2023. 10. 4. 인출.

시부야구 홈페이지. (2023.7.14.). 全国パートナーシップ制度共同調査. (전국 파트너십 공동 조사) <https://www.city.shibuya.tokyo.jp/kusei/shisaku/lgbt/kyodochosa.html>에서 2023.11.27. 인출.

프랑스 행정부 홈페이지. (n.d.) (Carte de séjour “vie privée et familiale” d'un étranger en France.(프랑스 외국인의 '개인 및 가족 생활' 거주 허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09#:~:text=de%20court%20s%C3%A9jour-,La%20carte%20de%20s%C3%A9jour%20%22vie%20priv%C3%A9e%20et%20familiale%22%20peut%20vous,de%206%20mois%20en%20France>에서 2023.10.27. 인출.

〈법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886호 2021. 1. 5. 일부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 개정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 개정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9267호 2023. 3. 21.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58 2023. 11. 16. 타법개정
국민연금법. 법률 제19294호 2023. 3. 28. 일부 개정
군인연금법. 법률 제19521호 2023. 7. 11. 일부 개정
노인복지법.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 개정
모자보건법.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 개정
의료법.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 개정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99호. 2023.3.28. 일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 11. 10. 일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 개정
행정절차법.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 개정